



이론에서 실무까지 알기 쉽게 풀이한

대한민국 조달제도 기본서

- 해당 교재(대한민국 조달제도 기본서)는 조달전문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재배포, 2차 변형, 상업적 이용 등)하는 것을 금지 합니다.
- 또한, 이 책자를 저작권자[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허가 없이 불법복제·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교육 등의 이용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위반 시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아울러, 해당 책자는 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조달청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상기 책자가 민원 및 소송 등의 자료로는 활용될 수 없고, 교육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 례

I . 용역계약 1

II . 협상계약 175

III . 다수공급자계약(MAS) 237



이론에서 실무까지 알기 쉽게 풀이한

대한민국 조달제도 기본서

용역계약



- 해당 교재(대한민국 조달제도 기본서)는 조달전문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재배포, 2차 변형, 상업적 이용 등)하는 것을 금지 합니다.
- 또한, 이 책자를 저작권자[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허가 없이 불법복제·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교육 등의 이용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위반 시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아울러, 해당 책자는 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조달청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상기 책자가 민원 및 소송 등의 자료로는 활용될 수 없고, 교육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NFORMATION

1. 용역계약 일반	5
2. 일반용역 공고서 작성	51
3. 일반용역 적격심사	83
4. 제안서 평가	123
5. 용역원가계산	145

1

용역계약 일반

| 담당교수 | 박수천

Public Procurement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공공조달역량개발원

INFORMATION

1. 개요	9
2. 용역계약의 방법 및 입찰·낙찰제도	11
3. 일반용역 세부 내용	28
4. 용역 이행 및 관리	44

1. 개요

□ 용역(用役)의 의미

- 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 ②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이외에서 기능하는 노동
- ③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서비스

- * **경제학자**는 재화 생산 이외의 모든 영역 즉, 토지, 자본, 노동이라는 각 생산요소 및 정부 등이 재(財)를 생산하거나 직접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봉사활동도 용역이라고 정의
- * **OECD**에서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새로운 기술 및 인적자본 투입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을 용역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 계약법령상의 용역 구분

- (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사업 이에 준하는 용역
- (일반용역)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는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구분

○ 기술용역 종류

건설기술용역(설계, 감리)	엔지니어링사업
①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small>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small> 조사, 설계, 설계감리 ② 시설물의 유지, 보수, 철거 ③ 건설공사의 감리 ④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평가, 자문 및 지도 ⑤ 건설장비의 시운전 ⑥ 건설사업관리 ⑦ 공사원가계산 등	①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 <small>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small> 하여 수행하는 사업 ②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안전 성검토, 관리, 매뉴얼작성, 자문, 지도, 유지, 보수 등 ③ 이에 준하는 활동

※ 기타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설계, 감리와 주택법에 의한 감리,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량 등도 포함

○ 일반용역 종류

- 기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을 총칭하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학술연구, 시설분야 용역 등이 있음



□ 용역계약 관련법령

용역계약을 규율하는 법령		
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이하 법, 영, 규칙이라 함)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이하 지방법, 지방령, 지방규칙이라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행정안전부
특별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 예규 등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지방기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기획재정부 조달청

※ 기본적으로 물품 및 공사와 같은 법령이 적용되며 법 원리도 같음

2. 용역계약의 방법 및 입찰·낙찰제도

(1) 용역계약(입찰) 방법

- * (일반경쟁) 계약대상물품의 규격, 시방서, 계약조건 등 계약내용을 널리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모두 입찰에 참여시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법 제7조, 지방법 제9조)
- * (제한경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
(영 제21조, 지방령 제 20조)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실적 또는 기술보유)
 - 고시금액 미만 지역제한(특별시·광역시·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중소기업자간 경쟁(중기부장관 지정용역 또는 지정용역 이외의 고시금액 미만 용역)
- * (지명경쟁) 특정 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한 후 입찰방식에 의해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방식(영 제23~24조, 지방령 제22~23조)
 - 특수한 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5인 이상 지명 및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중소기업(협)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등
- * (수의계약)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다만, 소액수의(1억원 이하) 안내공고 대상은 경쟁계약에 준하여 계약상대방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영 제26조 ~ 30조, 지방령 제25 ~ 31조)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조사설계삼리특수측량훈련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관련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되는 설계용역계약) 등

- 일반용역계약의 계약의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은 물품구매계약과 유사한 방식이 적용됨

*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공사계약과 유사한 제도가 많음

⇒ 본 과정에서는 일반용역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입찰)방식에 대해 설명

1 용역 일반경쟁

- 계약대상물품의 규격, 시방서, 계약조건 등 계약내용을 널리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모두 입찰에 참여시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법 제7조, 지방법 제9조)

⇒ 용역계약의 기본원칙

법 제7조
(지방법 제9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 입찰참가자격 (영 제12조, 지방령 제13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입찰참가 결격사유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
 -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용역 제한경쟁

- 일반경쟁계약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쟁에 따른 장점을 취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식**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 또는 **실적제한**



일정금액 미만 **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한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국가기관)

□ 용역 실적제한경쟁

(영 제21조 제1항 5호, 규칙 제25조 제2항, 집행기준 5조, 지방규칙 제25조 제2항)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실적제한 가능**
 -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용역 이행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
 - * 특정 명칭, 특정기관 등의 실적으로 제한 금지
 -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 요구 가능**
 - * (지방계약법) 1배 이내
 - *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미만(2.2억원) 실적제한 금지

□ 용역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용역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 용역
	고시금액(2.2억원) 미만의 용역계약

① 중소기업부장관 고시 용역

⇒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용역은 금액 불문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영 제21조 제1항 8호, 지방령 제20조 제8호)

○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 용역(예시)

- 건물 및 시설물 건설유지보수 서비스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전시부스설치서비스)
- 산업위생관련서비스 : 건물청소서비스
- 경영관련서비스 :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추정가 10억원 미만)
-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측량용역 등
- 여행,음식,숙박 및 오락관련 서비스 :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추정가 1억원 이상 제외)
- 국방 및 치안관련 서비스 : 시설물 경비서비스(특수경비업 제외) 등

② 고시금액 미만의 용역계약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국제입찰 기준)한 금액(2.2억원) 미만의 용역은 용역의 종류를 불문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집행

(영 제21조 제1항 10호, 지방령 제20조 제12호)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 용역 지역제한경쟁

- 추정가격이 일정한 금액 미만의 용역계약은 지역제한경쟁으로 집행 가능
(영 제21조 제1항 6호 규칙 제25조 제3항, 지방령 제20조 제1항6호, 지방규칙 제24조~25조)

지역제한경쟁 대상 고시금액(추정가격)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 (물품)	2억2천만원 미만	(광역) 3억3천만원 미만
		(세종시, 기초 시·군·구) 5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2억2천만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1억5천만원 미만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

③ 용역 지명경쟁

⇒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명경쟁입찰 가능

(영 제26조, 지방령 제25조)

-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5인 이상을 지명하여 2인 이상 참가시 성립

④ 용역 수의계약

- ⇒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 가능 (영 제26조, 지방령 제25조)
 -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긴급한 행사, 긴급 수해복구 등
 -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비밀 필요성 등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단체** 등과의 용역계약
 -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소액수의**)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계약
 -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용역계약
- ⇒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 징구
*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조합), 마을 기업은 1인 가능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대상자결정

*** 88% 이상 투찰자 중 가장 낮게 투찰한 자**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 단순노무용역은 90% 이상 최저

- (**재공고 수의**)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 용역 낙찰자 결정 방법

방법별	적용대상	관련 법령
최저가 낙찰제	○ 2단계 경쟁 등 일부에 적용	영 제42조 제3항
적격심사제	○ 모든 용역계약	영 제42조, 지방령 제42조
2단계 경쟁 (규격 가격 동시)	○ 미리 적절한 규격작성 곤란시 ○ 계약의 특성상 필요시 * 노무비 위주의 단순용역 제외	영 제18조, 지방령 제18조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 ○ 지식기반 산업	영 제43조, 43조의2 지방령 제43조, 제44조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	○ 전문성, 기술성 등 ○ 지식기반 산업	영 제43조의3 지방령 제44조의2
제한적 최저가	○ 소액수의 대상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 제한적최저가는 소액수의 견적공고 계약상대자 선정시 적용

□ 일반용역 적격심사 제도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영 제42조, 지방령 제42조)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함
 - 대부분의 중앙관서에서는 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없으므로 **조달청 기준을 준용**하여 적격심사 실시 가능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학술연구용역 등 정형화된 용역 규정
 - * 세부기준이 없을 경우 유사한 용역 적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학술연구용역만 규정
 - *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심사기준 제정 가능

□ 용역 2단계경쟁, 규격가격 동시입찰 (영 제18조, 지방령 제18조)

○ 2단계 경쟁입찰

-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

입찰공고 ⇒ 규격입찰서 제출 ⇒ 규격 평가 ⇒ 규격적격자 가격입찰 ⇒ 낙찰(최저가)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규격적격자 1인인 경우 **재공고입찰**

○ 규격가격 동시입찰

-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

입찰공고 ⇒ 규격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규격 평가 ⇒ 규격적격자 가격개찰 ⇒ 낙찰(최저가)

*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하여 **예정가격 이내면 낙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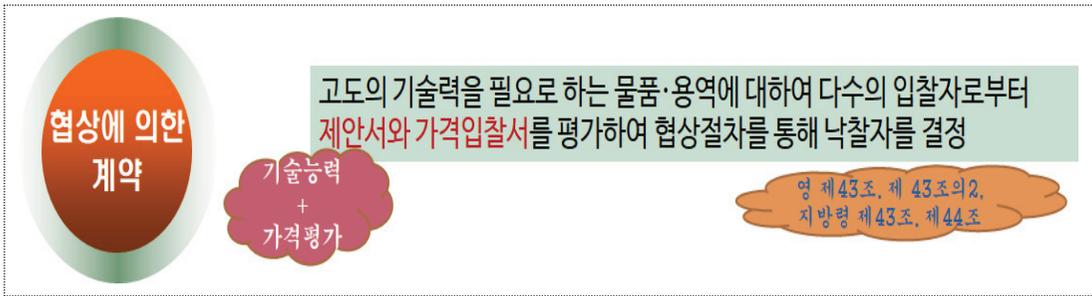
- 2단계 경쟁입찰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규격(기술)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 (규격(기술)평가도 동일 ⇒ 추천)

- 다음의 경우는 2단계 경쟁입찰 및 규격 가격 동시입찰 **적용 불가**

- ① 청소용역
- ② 검침(檢針)용역
- ③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 ④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용역

□ 협상에 의한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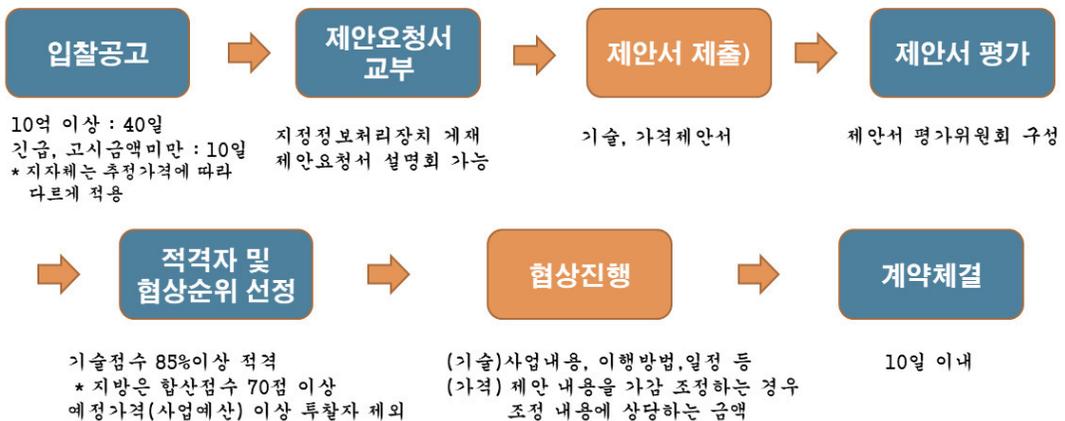
-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협상적격자를 선정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



○ 적용대상

-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및 기타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식기반 사업에 우선적용(엔지니어링 사업, 고난도·고기술의 건설기술용역, 정보통신, 디자인,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학술 등)
- * 지방계약법은 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은 적용 불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 협상순위

- 기술능력 평가점수 85% (지자체는 70점) 이상으로서 합산점수가 높은 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국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 지식능력 · 인력 · 조직 · 관리기술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 · 사후관리 · 수행실적 · 재무구조 · 경영상태 · 상호협력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70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30	

※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 내에서 가 · 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지방)

구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까지 가능
	정성적 평가 분야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cdot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cdot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left[2 \times \left(\frac{\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해당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right)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경찰·해양경찰·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2) 기술능력 평가방법

-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 (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 다) 제7조제6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 점수제를 적용한다.

3)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 가) 적정성 평가 대상: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영 제43조의 3, 지방령 제44조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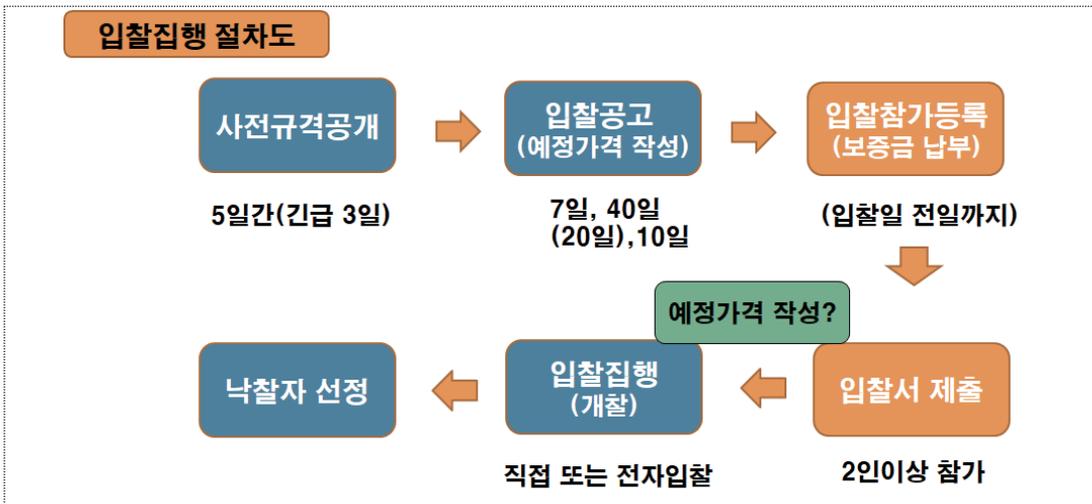
- 기본제안서를 접수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최종제안서를 제출 받고 이를 평가하여 계약대상자 선정
- **적용대상**
 - 기술적 요구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 물품·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
- (**평가방법**)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 준용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등	90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50점을 초과 하지 못함 ·지원기술·사후관리는 1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10	※ 평점산식: 아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낙찰자 결정**
 - － 최종제안서 제출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
 - － 입찰금액이 총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

(3) 일반용역 입찰 집행



① 사전규격공개

- 물품 및 용역을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 입찰공고 전에 규격서를 미리 공개 열람하도록 하는 제도
- (규격공개 대상)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
- 규격공개 방법
 -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 ⇒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 가능
 - 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
 -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에 자문 요청 가능

<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 생략가능 >

- ㉠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 (지자체)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로 해야 하는 물품 및 용역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② 입찰공고

입찰에 관한 정보 공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원칙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전**(긴급 5일) 까지 공고
- * 협상계약은 40일

③ 입찰참가신청 (규칙 제40조, 지방규칙 제38조)

○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칙 및 지방규칙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음
- ②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된 것으로 간주

※ 당해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능

④ 입찰보증금

[영 제37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지방령 제37조, 지방기준(입찰유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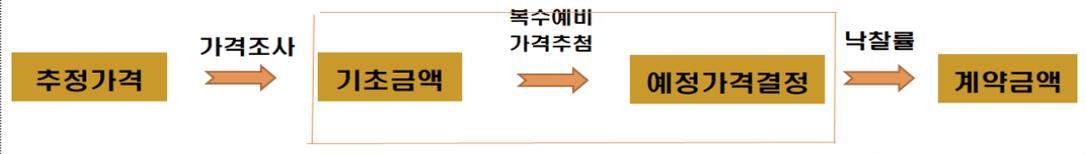
-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납부
 -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입찰에 참가**

5] 예정가격

○ 예정가격 정의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성, 계약 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 금액

<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절차 >



6] 입찰집행 (영 제40조, 지방령 제40조)

○ 입찰집행 방법

① 전자입찰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
- *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② 직접입찰

- 입찰 장소에 직접 모여서 집행
-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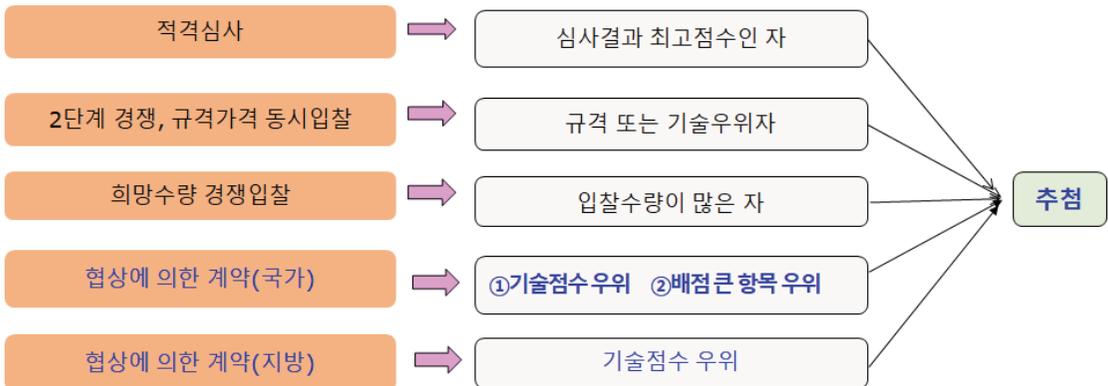
◇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하였을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무효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있어 유효입찰이 1인인 경우에는 경쟁 불성립

⇒ 입찰집행자는 무효사유(규칙 제44조, 지방규칙 제42조) 여부를 확인

7]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방법 및 기준에 따라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영 제40조, 규칙 제48조, 지방령 제40조, 지방규칙 제46조)
- 낙찰 선언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
 - ⇒ 적격심사, 협상계약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
- (동일가격(점수) 입찰인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점수)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영 제47조, 지방령 제48조)



3. 일반용역 세부 내용

(1) 용역계약(입찰) 집행시 고려사항

□ 확정계약시 고려사항

- 확정계약은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계약으로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정산 없이 그대로 지급
- 인건비 투입이 높은 용역계약에서는 **확정계약이라 하더라도 정산 필요성 존재**
- 확정계약 정산 시 고려사항
 - ☞ 인건비 투입량이 상당한 용역계약 시 실 투입비용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와 같은 법정경비는 정산하겠다는 내용을 반영**
 - * 무리하게 정산할 경우 분쟁 소지, 확정계약의 취지상 무리한 정산 금지
 - ☞ 정산 절차 및 세부내용은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참조

※ 개산계약 (영 제70조)

- * 개산계약은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개산액으로 계약을 체결**(예정가격 미작성) 확정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
- (대상)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 (절차) ①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
- ②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입찰 설명서에 반영
- ③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정산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 (질의회신) 개산가격에 대한 정산처리는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하며, 개산가격은 견적가격 등을 참고할 수 없음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영 제73조, 지방령 제89조)

-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미작성하는 개산계약과 달리 일부 비목에 대하여 사후에 금액을 확정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확정계약의 일종
- (적용대상)
 - ① 수입자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품목
 - ② 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품목
 - ③ 가격자료 미비로 예정가격 기초조사가 미흡한 품목
 - ④ 기타 사후원가 검토가 필요한 품목
- (계약 시 규정사항) 사후원가검토 대상 비목 또는 품목의 범위,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 검토할 부분의 금액, 사후원가검토 기준, 계약금액 지급유보 비율 및 유보한다는 내용, 계약 후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 장기계속계약 시 고려사항

- * 계약의 이행에 수년이 요구되는 계약을 장기계속계약이라 하고 이행이 단년도에 완료되는 것을 단년도(일반) 계약이라고 함, 대부분의 계약은 단년도 계약임
- 입찰공고시 당해 입찰건이 장기계속계약에 해당한다는 것과 총용역부기금액(예정), 당해 연도 계약예정금액 등을 반드시 명시
- 총용역부기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확보된 당해연도 예산액에 대하여 계약
- 계약보증금은 **총용역부기금액 기준**
- 관련 법령에 따른 인지세 등도 총용역부기금액 기준
- * (계속비계약) 장기계속계약과 유사한 개념으로 계속비 계약은 총 용역금액으로 계약하고 연부액(연도별 지출액)으로 계약이행

□ 공동계약 시 고려사항

-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 허용(영 제72조, 지방령 제88조)

유형	공동이행 방식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이행
	분담이행 방식
	해당 분담부분에 대해 계약이행
	주계약자 관리 방식
	주계약자 책임하에 시공
	* (지방)혼합방식(1+2) (혼합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목적물 달성이 곤한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공동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각각
- 공동계약 운영요령(계약예규)

□ 구성원 상호 협의 하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	
□ 공동수급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이하, 최소 지분을 10%이상 (지방 5%) ※ 분담이행방식 제외
□ 보증금의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별 분할 납부 (공동이행 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인 경우 일괄 납부 가능)
□ 선금, 대가 등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구분기재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 →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

※ 다만, 선금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면세사업자 부가세 문제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면제이므로 일반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동시에 참가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 예정가격 결정시 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공지
 -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후 계약체결

업무처리

- 예정가격 결정시 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공지
 - 부가가치세 공제후 계약체결

- **(공고예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고 예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품목 자체가 면세일 경우는 예외
 - * 부가세가 예정가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 공고

(2) 주요 일반용역 집행방법

①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 및 응용과학이 심도 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정책 및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유형

- ①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
- ② 조직설계·제도도입 등의 타당성 조사연구
- ③ 산업 또는 사업의 입지 분석
- ④ 경영분석, 경영진단, 경영평가
- ⑤ 수요·공급의 예측과 분석
- ⑥ □□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연구 등

□ 입찰참가자격

-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
- 학술용역의 특성상 특별한 면허, 자격은 불필요한 경우가 대부분
 - * 환경영향평가용역은 환경영향평가용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 필요

□ 예정가격(원가계산)

- (노무비)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등
- (일반관리비)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6%를 초과할 수 없음
- (이윤) 영업이익(기술료, 외주가공비 등은 제외), 1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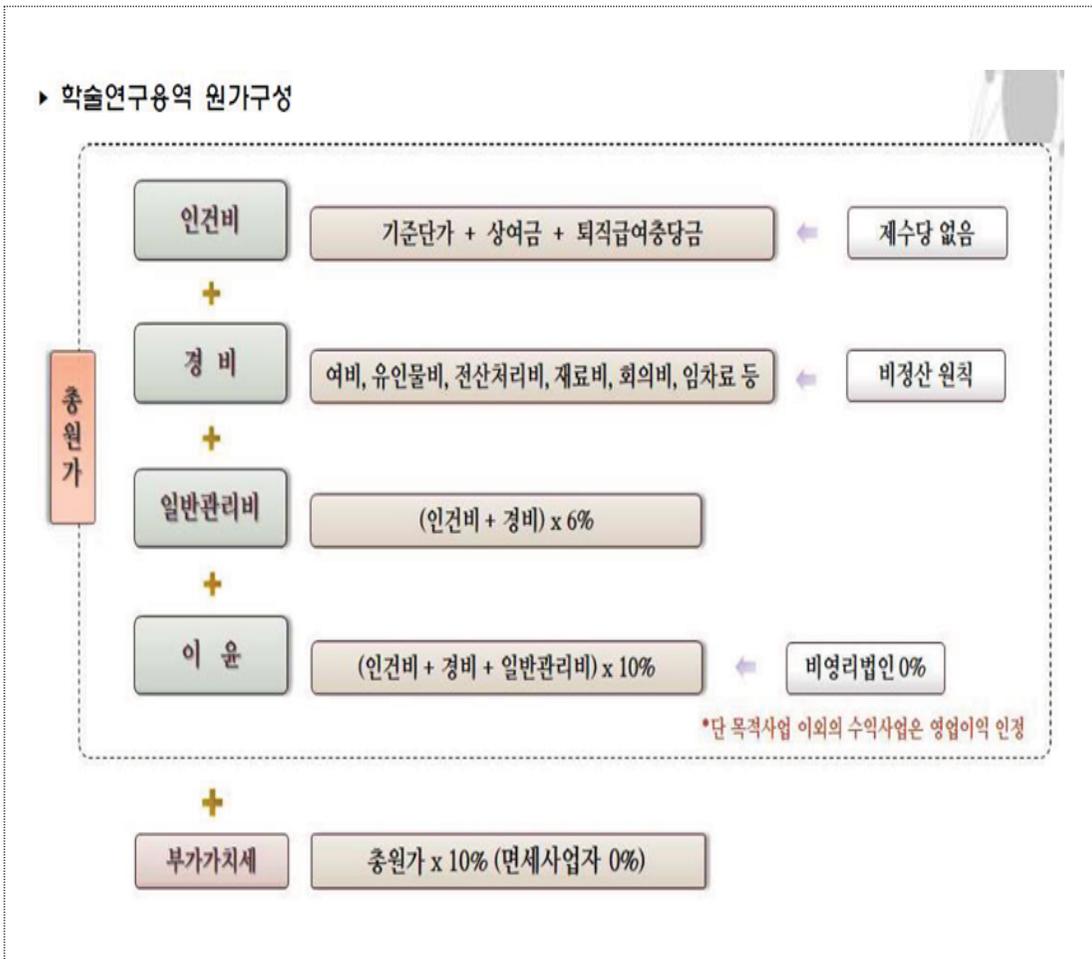
□ 계약(입찰) 방법

- 적격심사제, 2단계 경쟁(규격 가격 동시),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이 가능

※ 원가계산 구성표

○ 원가계산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제9조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제30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제9조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② 시설분야용역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

□ 종류 및 내용 : 시설물관리 용역, 위생관리 용역, 경비용역 등

- ① (시설물관리)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부속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 정밀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

< 유형 >

- I.B.S 설비관리, 보일러 등 열원 설비
- 수배전 등 전기설비
- 화재방지기·경보기램프 등 소방 설비
- 엘리베이터 등 승강 설비

- ② (위생관리) 건축물 또는 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용역
- ③ (경비용역) 국가중요시설, 공공시설 등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

- 유형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분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 입찰참가자격

- ① 시설물관리용역

-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면허, 자격 등이 있을 경우 자격을 갖춘 자
 - 소방시설관리 유지.점검, 승강기 유지 보수 등

※ 등록 업종코드 -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② 시설물 청소용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자

※ 등록 업종코드 - 위생관리용역업(1162)

③ 시설물경비용역

- 「경비업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을 허가받은 법인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

※ 등록 업종코드 - 시설경비업(1164)

□ 예정가격(원가계산)

-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거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용역원가 계산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9.9,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 관련협회(한국위생관리협회, 한국경비협회, 한국시설물관리협회) 공표자료 참고
 -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 적용

□ 계약(입찰)방법

- 적격심사제, 2단계 경쟁(규격 가격 동시),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 가능

* 단순 노무에 의한 용역은 2단계경쟁 집행불가(지자체는 협상계약도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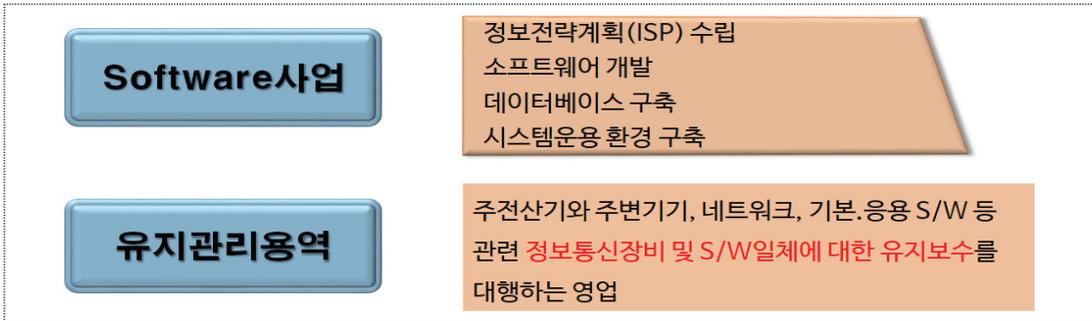
⇒ 적격심사 방법에 의한 집행이 무난

※ (참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연혁)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11.11.28)
 - 19. 9.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개정
- (적용대상)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적용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입찰공고) 입찰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협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
 - 특히,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
- (예정가격) 예정가격 산정시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
 - *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용역업체 선정)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을 포함, 근로조건 보호 관련 협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 ④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 (계약체결) 고용승계, 고용유지, 근로조건 보호 등 내용 계약서 명시

③ 소프트웨어 용역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 기술, 역무 등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



□ 입찰참가자격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

② 정보통신공사사업자(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사업자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위 법 시행령 제17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설계, 각 시스템 요소의 개발 및 조달,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 전체를 일괄 책임하에 수행 하는 사업
-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를 패키지 형태로 유통·공급하는 사업
- ㉢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교육, 생활 문화 등의 콘텐츠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하여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사업
- ㉣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유료로 정보자료를 제공키 위해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해 두고 그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 제공하는 사업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일정금액 이하 공공기관 입찰 참가 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예외)

-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 ②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계약(입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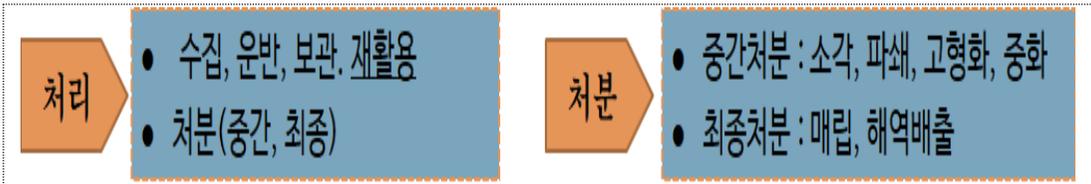
- 적격심사제, 2단계 경쟁(규격 가격 동시),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 가능
- ⇒ 정보화 산업 등 지식기반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단순한 유지보수용역 등은 ‘적격심사’ 적절

□ 예정가격(원가계산)

- 정보통신용역은 대부분이 소프트웨어(SW)이고 일부 정보통신공사 포함
- * 정보통신공사 분야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기준 적용
-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참조
- * 과기정통부에서 고시하는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기준은 2012.2. 폐지
- 원가계산은 투입공수(MM) 방식 및 기능점수(FP) 방식이 있음

4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 * 방사성폐기물, 해양폐기물 등은 별도 법령 적용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
 - * 100톤 이상 공사 분리발주

□ 입찰참가자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해당업종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 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분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 처분하는 영업
 - 폐기물최종처리업 : 폐기물 최종처분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 제외)의 방법으로 처분업

- 폐기물종합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분과 최종 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 * 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 허가없이도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가능

□ 예정가격(원가계산)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2.1,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
 - 기본급 산정 :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 단가
 - (사)한국건설자원협회-건설폐기물 성상별 톤당 처리 단가
 - (사)한국건설 폐기물 수집운반협회-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 환경부고시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 ⇒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계산 산정

□ 계약(입찰)방법

- 적격심사제, 2단계 경쟁(규격 가격 동시),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이 가능
- ⇒ 비교적 정형화된 용역이므로 적격심사 방법이 무난

※ 적격심사 관련 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는 환경부 고시 적용
-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시·도별)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 가능

㉔ 육상운송용역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 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송,배송,여행,연수요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 입찰참가자격

-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받은 자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자
-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 계약(입찰)방법

- 적격심사제, 2단계 경쟁(규격 가격 동시),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 가능

⇒ 비교적 정형화된 용역이므로 **적격심사 방법이 무난**

* 적격심사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자체 기준 등

□ 예정가격(원가계산)

- 원가계산 작성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제9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제9조)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제30조(지방,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 ⇒ 육상운송용역 등은 원가계산 방법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 결정**

⑥ 행사용역

국제회의, 전시, 기념식, 축제, 박람회, 홍보 등 각종 행사. 운영 등을 대행하는 용역

□ 입찰참가자격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9015180201)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 행사용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집행할 경우가 많으므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추정가 1억원 이상은 제외)

□ 계약(입찰)방법

- 적격심사제, 2단계 경쟁(규격 가격 동시),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 가능
 - ⇒ 행사용역의 경우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하는 것이 무난

□ 예정가격(원가계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제9조 및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제30조
- ※ 원가검토시 고려사항(조달청)

- ① 일반관리비율 8%, 이윤 10%
 - ② 인건비 대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유사 용역단가 적용
 - ③ 사후정산을 요구하거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원칙적 금지
- *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비항목(항공료, 숙박료 등)이 있을 경우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

7] 보험용역

보험업법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

□ 입찰참가자격

-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등
- 보험회사 본사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 부여(금융위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가능)

□ 계약(입찰)방법

- 일반용역에서 적용하는 적격심사,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이 가능
- ⇒ 단순한 계약이므로 **적격심사 방법이 무난**
-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보험용역 기준 설정

□ 예정가격(원가계산)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 ⇒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적용

4. 용역 이행 및 관리

(1) 용역이행

□ 용역착수보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아래 서류 첨부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 필요

○ (착수계)

① 산출내역서

* 산출내역서는 계약단가, 계약금액 조정 등의 기준이 됨

② 용역공정 예정표

③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④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⑤ 서약서

⑥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지방)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지방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5절)

○ (승인)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
-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 용역이행감독

- **계약이행상황감독**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
 -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감독
 -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 기능
 - * 전문기관이 감독하도록 할 경우에는 감독조서의 작성 및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
- **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 감독**(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14조)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 준수
 -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용역수행에 적당하지 않으면 교체요구 가능, 교체된 근로자는 승인없이 다시 채용 불가능
 - 계약상대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준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 가능
- **과업내용의 변경**(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 가능,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
 -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용역 공정계획 변경, 특정항목 삭제 또는 감소
 - 과업내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이행전에 완료
 - * 긴급 필요성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제안 가능**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 통지
 -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계약금액조정,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도 **정당한 대가 지급**

(2) 용역계약관리

□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영 제64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령 제73조)

○ 조정요건

-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 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한 날로부터 90일이상 경과(조정기준일)하고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한 품목조정을 또는 지수조정이 3/100이상 증감될 때

※ 단순노무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은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 조정

○ 조정방법

- 품목조정을 또는 지수조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영 제65조, 일반조건 제16조, 지방령 제74조)

○ (조정요건) 용역의 과업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경우,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

○ (적용기준)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준용
- 계약단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단가 적용,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을 경우는 예정가격 단가 적용

- 신규 비목의 단가는 계약내용 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 정부에서 변경 요청한 경우는 계약내용 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

⇒ 계약금액 조정요건 해당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영 제66조, 일반조건 제17조, 지방령 제75조)

○ 조정대상

-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물가변동 조정 규정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적용

○ 적용기준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
-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초과 불가

□ 계약기간의 연장

-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
 -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
 - 발주기관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 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하거나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을 할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신청 가능

⇒ 위 사유 외에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하거나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징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연장 가능

(3) 대가지급

□ 검사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재난 등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시한 경우 7일)에 검사 실시

□ 용역대가 지급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

- (대가지급)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
 - 지체상금 : 용역 1.25/1000 (지방 1.3/1000)
 - * 기한 내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 미 산입
 - * 기한을 경과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4)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 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
 - 계약담당공무원은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 대금지급내역을 확인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 용역의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계상
-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공고 시 반영하고, **대금지급시 정산**

(4) 계약불이행시 조치**□ 계약의 해제·해지****○ 해제·해지 대상(계약상대자 귀책 사유)****<영 제75조>**

- 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고 계약수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유지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보증금 징수 후 유지가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 해제·해지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일반조건 제30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가능

○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일반조건 제31조)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

(법 제27조, 영 제75조, 일반조건 제26조, 지방법 제30조의2, 지방령 제91조)

-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입찰자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의 하도급에 관한 제한기준을 위반한 자
-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 제한 요청이 있는 자
-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그밖에 아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회**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시효기간 : 5년(담합 뇌물 제공 관련은 7년)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법제27조의2, 영 제76조의 2~76조의 5, 지방법 제31조의2, 지방령 제92조의 2~92조의13)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일반용역 공고서 작성

| 담당교수 | 조 용 만

Public Procurement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공공조달역량개발원

INFORMATION

1. 입찰공고 개요	55
2. 입찰집행	64

1. 입찰공고 개요

〔국가계약법 제8조, 지방계약법 제10조
국가계약령 및 지방계약령 제33조, 제35조, 제36조
구매업무처리규정 제32조제1항, 지방계약규칙 제36조〕

□ 의의

- 구매(계약)대상 목적물에 대한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입찰예정자들에게 알리는 행위. 이를 통해 자격이 있는 다수의 입찰자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경쟁성을 제고하고 경제적인 구매 실현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1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있어 입찰공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계약법규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계약법규들은 대부분이 강행법규가 아닌 내부 절차법적인 임의규정으로서 그 규정들 자체로 입찰자나 계약자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공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비로써 입찰자(낙찰후에는 계약자)들을 규율하고 효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관계 계약법규정과 조항들을 모두 반영하여 입찰공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법규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낙찰자선정방법 및 기준, 계약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필요시) 등 중요사항을 입찰공고서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입찰자나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들은 모두 입찰공고서에 첨부하여 이를 숙지하고 동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입찰 공고 방법

[국가계약령 제33조, 지방계약령 제33조]

-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지방계약령 제33조 제1항 단서]
- 국가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입찰공고하지 않고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입찰공고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국가계약령 제34조]

□ 입찰 공고 시기

[국가계약령 제35조, 지방계약령 제35조]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공고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단축 공고¹⁾할 수 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령 제35조제5항]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① 긴급을 요하는 경우
 - ②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지방계약령 제35조제5항 및 6항

- 2단계 경쟁입찰(규격 또는 기술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령 제35조 제5항]
 - ①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10일
 - ②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20일
 - ③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40일
- 위 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지방계약령 제35조 제6항]

1) 단축공고 사유(국가계약령 제35조제4항) : 재공고 입찰의 경우,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입찰공고시기 계산 예시>

-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5월 30일인 경우, 동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공휴일 여부와 무관)인 5월 29일을 기산일로 역으로 계산하여 7일째가 되는 날인 5월 23일이 말일이 되고 그날의 오전 0시를 기하여 기간이 만료되므로 늦어도 5월 22일 24:00까지는 공고되어야 한다.
- ② 긴급 또는 재공고의 경우는 5월 24일 24:00까지는 공고되어야 한다.

○ 입찰공고시에는 다음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고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시기 결정시 고려사항>

- ① 상기 입찰공고 기간
- ② 나라장터 게재에 소요되는 기간
- ③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금액 조사에 필요한 기간
- ④ 규격입찰서 작성에 필요한 기간(2단계, 규격·가격분리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시)
- ⑤ 적격심사기준 열람기간(적격심사입찰시)
- ⑥ 기타 납기 등 입찰공고시기 결정에 관련되는 사항

○ 정정(변경)공고의 경우

-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령 제33조제2항]

-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령 제33조제2항]

○ 위 공고 시기는 국가보안유지를 위하여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입찰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국가계약령 및 지방계약령 제34조]

□ 입찰공고

[국가계약령 및 지방계약령 제36조]

-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별로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일부분이 다르게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입찰공고 시에 공통 사항에 대하여는 다 명시하되, 낙찰자 결정방식이나 계약대상 목적물의 특성이나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의 규정들을 참고하여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 [구매업무처리규정 제32조제3항]>

-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②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③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④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⑤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
- ⑥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⑦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⑧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⑨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이행방식
- ⑩ 청렴계약제 시행에 관한 사항
- ⑪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⑫ 중소기업자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련된 사항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 [국가계약령 제36조]>

-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②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③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 ④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⑤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 ⑥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⑦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
- ⑧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⑨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⑩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⑪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⑫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⑬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⑭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전자입찰)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 ⑮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⑯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⑰ 적절한 거래실례가격이 없이 원가계산 예정가격 결정시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 ⑱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 [지방계약령 제36조]>

-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②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③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④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 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⑥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
- ⑦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 ⑧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⑨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⑩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⑪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⑫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⑬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전자입찰)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⑭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⑮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 ⑯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⑰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 ⑱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⑲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 ⑳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입찰공고문과 첨부문서의 내용 상이 시 해석기준>

입찰공고 내용과 첨부된 당해 물품시방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기준한다. [질의회신, 회계 125-3685, '83.12.20]

- 상기 사항이외에도 각 낙찰자 결정방법의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에 추가 반영(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2조]

- ① 낙찰자 결정방법
- ②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사항(열람장소 및 안내 전화번호 등)
- ③ 심사에 필요한 서류(적격심사세부심사기준 참조)
- ④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2) 2단계 경쟁(규격·가격동시) 입찰시

- ① 낙찰자 결정방법
- ② 규격(기술)입찰서 적격자 선정방법 및 기준
- ③ 규격(기술)입찰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종합낙찰제 입찰시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5조]

- ① 해당제품의 구매 또는 제조계약을 종합낙찰제에 따라 집행한다는 내용
- ②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제품의 경우
 - 가) 해당제품의 에너지 소모비 산정에 필요한 이자율 및 내용연수
 - 나) 상기 “마. 조달요청서 검토”항에서 물품별 에너지 소모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동 운용기준 [별표 1])
- ③ 환경우월성기준 적용제품의 경우
 - 가) 종합평가 점수 산정방법
 - 나) 동 운용기준 [별표 2]의 사항
- ④ 환경우월성기준 확대적용제품의 경우
 - 가) 종합평가 점수 산정방법
 - 나) 동 운용기준 [별표 3]의 사항
-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희망수량경쟁 입찰시 [국가계약규칙 제20조]

- ①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이라는 사항
- ②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입찰수량 및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시 [국가계약령 제43조제2항, 협상계약체결기준 제4조]

- ① 제안요청서를 첨부
- ②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 ③ 해당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
- ④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 ⑤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화상 방식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일시에 관한 사항
- 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 ⑦ 제안서의 제출기간
- ⑧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
- ⑨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평가점수 부여기준
- ⑩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적정성 평가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
- ⑪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의 경우 해당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일시에 관한 사항
- ⑫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입찰 변경 공고

[국가계약령 및 지방계약령 제33조]

-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정정(변경) 공고할 수 있다.
[국가계약령 및 지방 계약령 제33조제2항]
-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입찰 연기 공고(또는 입찰참가 연기통지) 할 수 있다. [물품입찰유의서 제14조]
 -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설명을 요구하고 그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입찰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 입찰변경(정정) 공고나 연기공고시에는 그 사유와 함께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입찰 관련 서류작성·비치·열람**

[국가계약령 제16조제1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 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입찰에 관한 서류 예시 [물품(제조)입찰유의서 제4조]>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입찰에 관한 서류 예시 [국가계약규칙 제41조]>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입찰서(소정서식) 및 계약서(소정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5.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 기준을 포함한다)
6.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7.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 지시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적격심사 낙찰제인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를 비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기 관련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3조]
 - ① 세부심사기준
 - ②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③ 기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
-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입찰에 관한 서류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2. 입찰집행

□ 의의

- 정부계약도 정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민법상의 계약'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법상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의 합치로 이루어 진다.
- 따라서, 입찰은 계약성립의 요건 중 '청약(Offer)', 즉 계약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을 희망하는 자가 입찰공고 조건에 동의하고 그 내용대로 계약이행하는 경우 입찰금액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있다.(계약의 성립요건인 승낙의 의사표시는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 다만, 정부계약은 통상의 사인간의 계약과는 달리 계약당사자 일방이 국가(정부)이고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집행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입찰 공고서에 규정(명시)된 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입찰참가 신청 (국가계약규칙 제40조 물품입찰유의서 제3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까지 다음 각호의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하여 다음 각호의 입찰참가신청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 다만, 사전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써 경쟁 입찰참가신청에 갈음한다.
- 입찰참가 신청기한
 -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국가계약규칙 제40조제4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국가계약규칙 제40조제2항]

□ 입찰보증금 납부 (국가계약령 제37조 국가계약규칙 제43조 물품입찰유의서 제6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조달청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 각서로 대체하고 있다.

□ 입찰 절차 }

 국가계약령 제37조
 국가계약규칙 제43조
 물품입찰유의서 제6조

가. 입찰참가 [물품입찰유의서 제7조]

-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나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대리인의 자격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하여 임직원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 직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계약법규에 특별한 제한이나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시나 입찰참가신청시에 대리인으로 등록하였으면 그 대리인이 입찰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민법상 대리권의 법리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입찰에 대리 참가가 가능하다.
- 위임장(또는 입찰참가등록증이나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대리인이 참석하였는지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 ※ 위임장에는 위임범위(해당 입찰공고명이나 공고번호 등)가 명시되어야 하고 날인한 인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을 확인한다.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나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물품입찰유의서 제7조제4항,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물품입찰유의서 제3조의2]

- 국가계약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한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실적제한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과 같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적을 인정(지방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는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 작성 [물품입찰유의서 제8조]

(1) 작성서식

-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찰금액표시

-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사용언어 및 통화

-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4) 기명날인

-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 포함)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사용인감 변경은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사용인감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회계통칙, 회계 45101-1303, '95.8.9.]
-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5)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물품입찰유의서 제10조]

라. 입찰서 제출 } 국가계약령 제39조 제1항부터 3항
물품입찰유의서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35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4조

(1) 일반입찰(직접 입찰 및 우편 입찰)

- 입찰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이 원칙이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① 국제입찰 대상 계약인 경우
 - ②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입찰서는 봉합하여 입찰자 1인이 1통만 제출토록 한다.
 - 입찰집행 시 규격설명이 필요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규격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공고서에서 지정한 우편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 있다.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우편으로 접수된 입찰서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입찰집행관은 입찰집행에 앞서 운영지원과(서무)에 우편입찰서 접수(입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여부를 확인하고
 - 우편입찰서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응찰자에게 발표하고 입찰함에 먼저 투합한 후 응찰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입찰함에 투합하게 한다.
 - 이 경우 규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은 규격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전자입찰이 원칙). [국가계약령 제39조제1항]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외에 각종양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전자입찰 참가방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 전자입찰자는 지문보안토크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전자입찰자는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천하여야 한다.
 -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지문인증 후에는 일정시간 동안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입찰은 제외한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증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폐지될 예정으로 2024년 1월 1일 부터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전자입찰을 허용하고 있음.

* 입찰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전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면 예외적용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전자입찰에 참가 가능
(예외적용 신청 후 사업자용인증서 + 개인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마. 입찰서 취소 등 { 국가계약령 제39조 제3항
물품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

-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능하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류를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로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 취소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입찰자의 전자입찰을 취소하고, 해당 전자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개찰 { 국가계약령 제40조
국가계약규칙 제48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

-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입찰집행관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우편입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접수현황도 함께 발표한다)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가할 수 있다.
 -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사. 경쟁입찰의 성립

[국가계약령 제11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1조]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 따라서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하였을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자 또는 무효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있어 유효입찰이 1인인 경우에는 경쟁은 성립되지 않는다.

□ 입찰 무효 } 국가계약령 제39조 제4항
국가계약규칙 제44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

가. 입찰 무효 사유 [국가계약규칙 제44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의 무효사유>

-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①의2. 영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 ②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③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④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1인이 수개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
- 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 ⑥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⑦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제안요청서 설명"이라 함)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입찰
- ⑧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⑨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⑩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⑪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 담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및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행위

- ⑫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
- ⑬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⑭ 종합낙찰제로 집행하는 입찰인 경우에 품질 등의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 ⑮ 입찰유의서 제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리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 ⑯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 입찰자가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것은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회신, 회제 45107-870, '93.8.17]

나. 입찰무효 이유 표시 [국가계약규칙 제45조]

-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 입찰서의 유·무효에 대한 회계질의 회신(발췌)

- 입찰무효사유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 질의하여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물품구매와 관련되거나 공사일지라도 물품구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를 요약하였음.

① 낙찰자가 부정당업자인 경우 [회계 45101 417, '96.3.7]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중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이 되어 무효가 되는 것임.

② 대표자가 변경된 후에 종전 대표자명의 입찰은 무효 [회계 41301-1653. '98. 6. 23]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때에는 입찰참가등록일 당시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수행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될 것이므로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후에도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수행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서 무효에 해당될 것인 바,
-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법인인감증명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참고로 낙찰자로 선언된 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임.

③ 위임장상의 입찰건명 오기 [회계 125-2052, '85.7.27]

입찰자의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상의 입찰건명이 당해입찰건명과 다른 경우에는 동 대리인은 당해 입찰에 있어서의 정당한 대리인으로 볼 수 없는바 “대리권이 없는 입찰”에 해당되어 당해입찰은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

④ 낙찰선언후 위임장 제출[회계 1210-2286, '80.12.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인 바, 동 “대리권”이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리인의 입찰행위가 본인(입찰참가자)을 위한 대리행위임이 명백하고, 입찰집행관이 이를 인정하여 낙찰선언한 후 그 위임장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동 대리인의 입찰행위를 무효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⑤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회계 125-3982, '86.10.29]

-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무효이므로 2인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그중 1인이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당해 입찰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함.

⑥ 1원입찰의 유효여부 [회계 2210-3579, '86.9.23]

국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1원 입찰은 유효하다.

※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0원 입찰도 유효하다.(안건번호 07-0353, 회신일자 2007.11.28.)

⑦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금액기재 착오는 유효 [회계 41301-818, '98.4.28]

국가기관이 시행한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동 문서에 면제받은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의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로는 볼 수 없어 무효입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후 보완이 가능한 것임.

⑧ 자기가 속하는 법인과 개인업체 양 업체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회계 45107-167, '96.1.3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개인명의로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동일한 경쟁입찰에 법인과 개인업체 양자의 명의로 직접 참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제3자에게 대리케 하여 참가한 경우에도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로 하여야 함.

⑨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의 입찰은 무효 [회계 45107-252, '96.2.8]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 입찰에 동시입찰(대리인을 통한 입찰 포함)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로 처리되는 것임.

* A법인의 대표가 B법인의 임원인 경우로서 A, B 두 법인의 대표가 각자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도 보지 아니함 (회계 41301-2982. '97.10.30)

⑩ 입찰서상의 금액오기, 입찰건명오기, 대표자 성명상이, 주소상이 및 한글숫자와 숫자사이 공백에 대한 유효여부에 대하여 [회제 125-1233, '88.8.9]

-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부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서가 무효가 되는 것인바,
- 그 불분명 여부는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기재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서 및 첨부서류 등의 다른 기재사항, 당해공사의 입찰현황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예1) “팔척”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일련숫자의 화폐단위 및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팔천”임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유효한 입찰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회제 1210-2057, '83.7.2]

(예2) 입찰건명이 누락되거나 틀리게 기재되었더라도 입찰공고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공사에 관한 입찰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면 유효로 처리하여야 될 것이라 봄. [회제 125-1040, '83.4.16]

⑪ 입찰서 금액표시글자 누락 시 [회제 45107-375, '94.3.29]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부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서가 무효로 되는 것인 바,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한글표기금액과 아라비아숫자, 표기금액의 일치여부 및 글자간의 여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의 유효·무효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임.

(문의) 입찰금액을 일금사천삼백팔십육만사천백십원정(₩43,864,110)으로
()백()십원 글자누락

⑫ 위임장 인감상이 [회제 125-1745, 91.7.16]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그 위임장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한 인감과 다른 등기된 인감을 사용한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의 입찰은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함.

⑬ 입찰서와 첨부물과의 간인은 날인하였으나 표지에 날인 누락 시
[회제125-1772, '88.8.1]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은 무효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서에
날인이 누락되었다면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⑭ 상호·성명등을 누락한 입찰 [회제 125-2614, '85.11.15]

- 입찰자가 주소·상호 및 대표자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입찰서를 제출
(인감만 날인)하였다면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에 해당되어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⑮ 낙찰선언은 되었으나 입찰가격 기재착오였음을 구두로 통지한
경우 입찰의 유효여부 [회제 125-997, '82.3.19]

- 입찰무효여부 및 낙찰선언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입찰내용, 상황 및 착오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상황으로 보며,
- 당해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하는 경우
에는 당해 입찰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함.

⑯ 제한경쟁기준에 위반한 계약의 무효여부 [질의회신, 회제 1210- 1134, '81.6.3]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제한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유효문제는 당해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계약담당공무원의 동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만으로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수는 없다.

⑰ 낙찰예정자의 입찰무효 시 처리절차 [회제 45101-2466, '95.12.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선언 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낙찰선언을 하지 않고 단순히
낙찰예정자로 선언하였다면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입찰금액 불분명 관련 유권해석>

□ **입찰금액 불분명(한글 “삼팔공공오” 아라비아숫자 “38,005”) 해당여부(회계제도과-1961, 06.8.31)**

국가기관이 발주한 물품계약에 있어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은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제3호에 따라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찰금액을 한글로 “삼팔공공오”라고 표기한 것은 당해 입찰금액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찰금액을 한글로 표기하는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봄

□ 입찰의 취소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 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 전자입찰자는 위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찰 집행후 낙찰결정 전 입찰취소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09마1, 결정 2010.4.8)

-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입찰 실시(개찰) 후 적격심사과정에서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의 범위를 입찰공고(±3%)와 달리 전자조달시스템에 ±2%로 입력한 것을 알게 되어 아직 낙찰자 결정전 이므로 해당 입찰건을 취소(무효화)한 것에 대하여 최저가입찰자가 소송을 제기
 - 입찰절차에서 개찰이 실시되어 최저가격 입찰자가 가려 졌으나 아직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입찰절차에 관련 법령의 규정이나 입찰공고에 어긋나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입찰시행자는 당해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 *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상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개찰이 이루어져 최저가 입찰자가 가려진 상태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전이라면 입찰시행자인 채무자는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재입찰 〔 국가계약령 제20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5조 〕

- 경쟁입찰에 있어서 개찰한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 무효입찰서를 제출한 자 또는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도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규격·가격동시 입찰인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재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재공고 입찰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국가계약령 제20조제2항]
- 재공고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는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국가계약령 제35조제4항 및 제5항]
- 재공고시에도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재공고 입찰 대상>

- 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 경우는 당초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국가계약령 제28조]

- 신문공고 시 제1차 및 제2차 입찰을 구분하였더라도 동시에 공고한 경우는 재입찰공고까지 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질의회신, 회계 1210-1248, '77. 5.20]

- 계약담당공무원의 예정가격 잘못 작성을 사유로 입찰 취소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대상이 아니며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질의회신, 회계 45101-1478, '95.8.16]

나) 재공고내용[국가계약령 제20조제3항]

- 재공고 입찰(재입찰 포함)은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재공고 입찰할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는 품목(계약목적물) 수량과 입찰참가자격 등의 주요 공고내용은 최초의 공고내용과 동일하여야 할 것인 바, 이를 변경하였다면 새로운 입찰공고로 보아야 한다. [질의회신, 회계 125-2778, '86.7.2]

<재공고입찰 관련 유권해석>

□ 시각장애인용 음성신호기 제작계약에서 4개입찰자 중 1인이 낙찰된 후 낙찰자를 제외한 3개업체가 입찰담합 밝혀진 경우(회계제도과-1359, 06.6.26)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입찰에 있어 담합한 자의 입찰은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06.5.25 개정) 제12조제4호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바, 동 경쟁입찰에 참가한 자가 4인인 경우로서 낙찰자로 선언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이 담합으로 입찰무효가 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등에 부칠 수 있을 것임

3

일반용역 적격심사

| 담당교수 | 조 용 만

Public Procurement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공공조달역량개발원

INFORMATION

1. 적격심사 개요	87
2. 적격심사 절차	87
3. 일반용역 적격심사	98

1. 적격심사 개요

□ (개념) 입찰자의 입찰가격,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적격심사 기준(계약예규에서 정하거나 주관 부처와 협의하여 제정)

- (국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체(기관별) 적격심사 기준
- (지방) 행안부 학술연구용역/ 시·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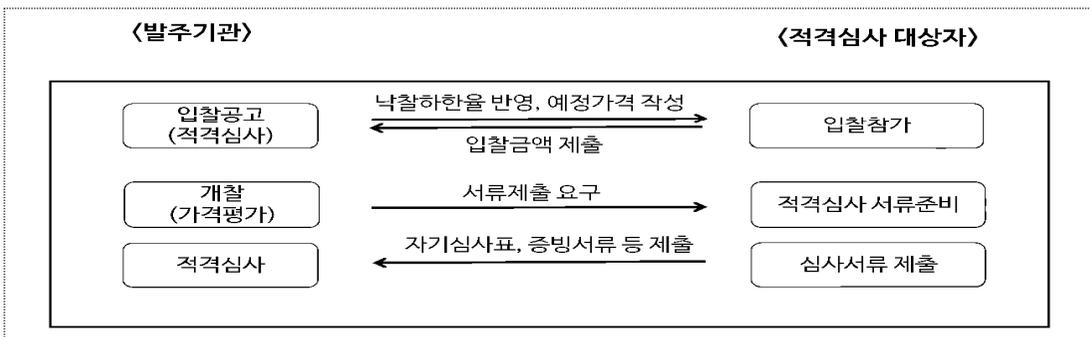
※ 특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환경부 '건설폐기물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

□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항목	평가기준
입찰가격	입찰가격	투찰율(입찰자의 입찰가격 / 예정가격)
이행능력	이행실적	납품실적(입찰자의 납품실적 / 해당입찰건의 추정가격)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 여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인증보유, 중소기업, 이행지연, 부정당제재 여부 등
결격사유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2. 적격심사 절차

□ 적격심사 절차



□ 다음의 예시)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적격심사 기준으로 적격심사 설명
[심사항목 및 배점 한도]

구분	입찰 가격(A)	이행능력					합계 (A+B)	통과 점수	낙찰하한율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소계 (B)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70	-	-	30	+3~-2	30	100	85	84.245%

1)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적격심사 기준 선택 시 낙찰하한율 자동 반영

[계약 및 입찰방식]

1. 계약방법	제한(총액) ▼	제한(총액) ▼	<input type="checkbox"/> 소액수의조합추천 적용
2. 입찰방식	전자입찰 ▼	3. 재입찰여부	허용 ▼ (허용: 재입찰 처리)
4. 낙찰방법	<input checked="" type="radio"/> 조달청기준 <input type="radio"/> 행정안전부기준 <input type="radio"/> 기타 203-5 적격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제조입찰,고시금액미만 구매입찰) ▼		
5. 낙찰하한율(%)	84.245%	6. 추첨번호	비공개

□ 입찰공고서에 적격심사 평가기준 안내

-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별표 3]
- 낙찰하한율(84.245%), 통과점수 : 85점

2) 예정가격 작성

□ 기초금액 공개

● 물품기초금액 상세조회

1. 입찰공고번호 20190614750-00 호 선장천지구 외 1개소 재난 예방보시설 교체 사업 입찰의 기초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공고번호	20190614750-00		
공고명	선장천지구 외 1개소 재난 예방보시설 교체 사업		
원조번호	양산시공고 제2019-1497호	개찰일시	2019/06/17 16:00
공고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입찰분류	기초금액		
1	174,117,000 (일역칠천사백일십일만칠천원) 원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예정가격 작성

- 복수예비가격 작성(기초금액 : 174,117,000원, ±3%)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추첨가격 1	174,305,100	추첨가격 2	175,866,500
추첨가격 3	170,878,500	추첨가격 4	174,940,600
추첨가격 5	172,013,700	추첨가격 6	172,765,900
추첨가격 7	176,457,200	추첨가격 8	178,793,800
추첨가격 9	173,297,000	추첨가격 10	170,700,900
추첨가격 11	177,883,200	추첨가격 12	169,560,400
추첨가격 13	169,053,700	추첨가격 14	173,930,700
추첨가격 15	177,110,100		

3) 입찰금액 제출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만을 확인하고 입찰서 제출

투찰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므로 협정서 제출 예정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이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투찰금액 : ₩ 146,697,240

기초금액 : ₩ 174,117,000

투찰금액/기초금액 : 84.252 %

투찰을 원치 않으시면 취소를 클릭해 주세요.

4) 예정가격 확정

입찰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추첨번호 4개 가격을 산술평균 : 174,046,550원

구분	금액	추첨횟수	구분	금액	추첨횟수
추첨가격 1	174,305,100	3	추첨가격 2	175,866,500	1
추첨가격 3	170,878,500	1	추첨가격 4	174,940,600	0
추첨가격 5	172,013,700	1	추첨가격 6	172,765,900	1
추첨가격 7	176,457,200	0	추첨가격 8	178,793,800	2
추첨가격 9	173,297,000	3	추첨가격 10	170,700,900	3
추첨가격 11	177,883,200	3	추첨가격 12	169,560,400	1
추첨가격 13	169,053,700	1	추첨가격 14	173,930,700	1
추첨가격 15	177,110,100	1			
예정가격	174,046,550		기초금액	174,117,000	

5) 개찰(가격평가 : 투찰율 84.2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1순위자)

* 거광이엔티 투찰율 = 146,697,240원 / 174,046,550원 ⇒ 84.286%

순위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투찰금액(원)	투찰율(%)	추첨번호	투찰일시	비고
1		거광이엔티		146,697,240	84.286	11 10	2019/06/13 15:28:30	
2		주아정보		146,910,000	84.408	14 13	2019/06/17 11:25:38	
3		명송테크 주식회사		147,015,650	84.469	01 11	2019/06/17 09:17:31	
4		주식회사 이지경보기술		147,230,000	84.592	10 01	2019/06/17 11:06:21	
5		광보통신 주식회사		147,693,940	84.858	02 06	2019/06/14 08:06:30	
6		주식회사 송우인포텍		147,895,750	84.974	08 05	2019/06/17 09:25:00	
		주식회사 우남아이치티		145,397,000	83.539	11 09	2019/06/16 20:13:00	낙찰하한선 미달
		우리원시스템 주식회사		145,527,000	83.613	03 08	2019/06/13 10:40:41	낙찰하한선 미달

6) 계약담당자 서류제출 요구

□ 개찰결과 1순위 입찰자 부터 이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 용역 : 5일 이내, 물품 : 고시금액 이상 5일 이내, 고시금액 미만 3일 이내 / 재난복구사업 3일 이내(지방)

직격심사대상종보서
온라인 매뉴얼

1. 수신자는 최대 30명 미만으로 선택하여 송신하십시오.

문서번호

문서기능

작성일자

2015/03/12

[송신자]

수요기관명: 조달청공지 담당자전화번호: 00-1588-0800

담당자성명: 수요기관

[수신자]

No.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담당부서	담당자성명
[직격심사대상자선택]				

[입찰정보]

입찰공고번호: 20150316209 입찰공고차수: 00

공고명: [SHR] 물품_직격심사태스트공고_조달청기준10억원이상

입찰분류: 1 재입찰번호: 0

적격심사구분: 물품적격

추경가격: 1,000,000,000 입찰수량: 2,000

입찰일시: 2015/03/12 16:55 심사서류제출 마감일시: 2015/03/17 00:00

7) 심사대상자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방법

적격심사 신청서 작성

적격심사 신청서 작성
온라인 메뉴얼

1. 업체정보 확정 시에만 자기심사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정비전을 클릭**하시어 심사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업체정보 확인 시 수기로 공동수급업장을 맺은 경우에는 기관에 연락하여 공동수급 협정 업체 정보를 입력받으시기 바랍니다.**
 3. 최종제출 전까지 저장 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하실 때에는 **조달업체업무 > 홈 > 적격심사 > 적격심사대상종보서** 메뉴에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제출 전에 적격심사 신청서 출력을 원하시면 **조달업체업무 > 홈 > 적격심사 > 적격심사신청서작성** 메뉴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최종제출 후에는 본년부터서할에서도 해당 적격심사 신청서를 조회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5. 최종제출 후에는 입력/수정 작업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최종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사항]	
공 고 명	[shr]적격심사 테스트광고(10억원 이상)
입찰공고번호	20141104187-00
국제입찰여부	국내
입찰금액	932,500,000원
품 명	복조기
실수요기관	조달청공저
낙찰방법	적격심사(추정가격 10억원이상 재조입찰)
관계법령	조달청 품목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 - 4223호(2014. 10. 20))
개찰일자	2015/01/03
공고개시일	2014/11/06
추정가격	535,454,545원
수 량	1
계약방법	일반(총액)
신청마감일시	2015/03/27 00:00

[담당자정보]	
담당자명	조달업체참
전화번호	042-462-4011

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신용평가등급 온라인 제출

[경영상태 정보] 입찰공고일 : 2020.1.1.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수선일자	등급평가일	유효기한	등급	신용평가사	신용정보
나라장터시연업체51조합	9992100104	2019.23	2019.2.1.	2020.2.1	BBB+	나이스디앤비	기업신용평가등급
나라장터시연업체52	-	-	-	-	-	-	-

- ①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과 등급평가일 확인)에 평가
- ② 유효기간 내(입찰공고일과 유효기간 확인)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경영상태 평가 기준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나라장터 전송)

[평가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	AAA	30
AA+, AA0, AA-	A1	AA+, AA0, AA-	30
A+	A2	A+	30
A0	A20	A0	30
A-	A2-	A-	30
BBB+	A3+	BBB+	29.8
BBB0	A30	BBB0	29.6
BBB-	A3-	BBB-	29.4
BB+, BB0	B+	BB+, BB0	29.2
BB-	B0	BB-	29
B+, B0, B-	B-	B+, B0, B-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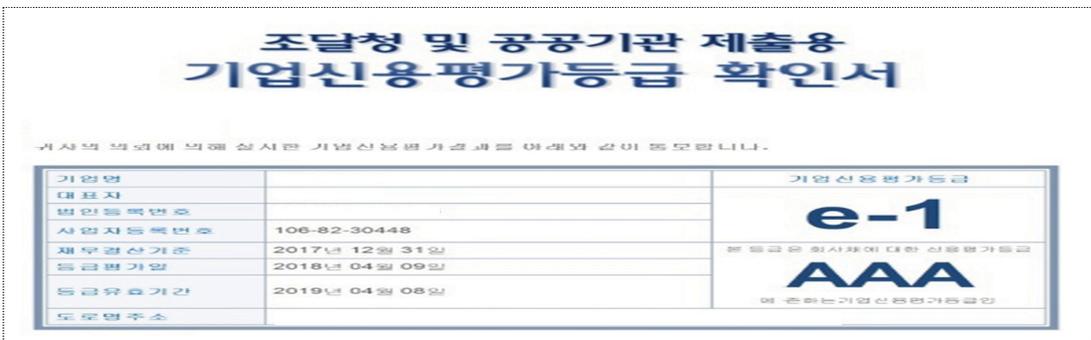
<신용평가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연계 신용평가(나라장터/e-고객센터/부가서비스/연계기관링크)
 -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SCI 평가 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으로 나라장터 전송되어야 함(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 * 민간 업체간 거래 용도로 발급 받은 신용평가등급은 평가 대상이 아님

<예시 : 신용평가등급>



□ 신인도 평가 점수 제출(혁신형 기업 2점)

[심사 업체: 9992100104 테스트51연합..1234567]		의견등록	인증조회	
마. 기타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지원 등	G. 신규채용 우수기업 상세입력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대기업		
		· 6% 이상인 기업	3	<input type="checkbox"/>
		· 5% 이상인 기업	2	<input type="checkbox"/>
		· 4% 이상인 기업	1	<input type="checkbox"/>
		· 중기업		
		· 7% 이상인 기업	3	<input type="checkbox"/>
		· 6% 이상인 기업	2	<input type="checkbox"/>
		· 4% 이상인 기업	1	<input type="checkbox"/>
		· 소기업 및 소상공인		
		· 10% 이상인 기업	3	<input type="checkbox"/>
		· 8% 이상인 기업	2	<input type="checkbox"/>
		· 4% 이상인 기업	1	<input type="checkbox"/>
		I.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협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제조 또는 공급업체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조회	2 <input type="checkbox"/>		
· 혁신형기업	조회	1.5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조회	1.5 <input type="checkbox"/>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조회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8) 계약담당자 적격심사 ⇒ 종합평점 계산 후 85점 이상이면 적격
[자가심사표]

구분	입찰 가격(A)	이행 실적	이행능력			소계 (B)	합계 (A+B)	적격여부 (85점 이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심사기준	70	-	-	30	+3~-2	30	100	
자가심사표(거광이엔티)	55.14			29.8	+0.2(+2)	30	85.14	적격

□ 입찰가격 평점(예시 : 55.14점) ←개찰조서에서 확인
[개찰조서]

순위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투찰금액(원)	투찰률(%)	추첨 번호	투찰일시	비고	가격평점
1		거광이엔티		146,697,240	84.286	11 10	2019/06/13 1 5:28:30		55.14
2		주아정보		146,910,000	84.408	14 13	2019/06/17 1 1:25:38		55.63
3		명송테크 주식회사		147,015,650	84.469	01 11	2019/06/17 0 9:17:31		55.88
4		주식회사 이지정보기술		147,230,000	84.592	10 01	2019/06/17 1 1:06:21		56.37
5		광보통신 주식회사		147,693,940	84.858	02 06	2019/06/14 0 8:06:30		57.43
6		주식회사 송우인포텍		147,695,750	84.974	08 05	2019/06/17 0 9:25:00		57.90
		주식회사 우남아이씨티		145,397,000	83.539	11 09	2019/06/16 2 0:13:00	낙찰하한선 미달	52.16
		우리원시스템 주식회사		145,527,000	83.613	03 08	2019/06/13 1 0:40:41	낙찰하한선 미달	52.45

[참고/입찰가격 평점산식 및 평점 계산]

입찰가격 평점 산식

$$\text{평점(점)} = 70 - 4 \times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평점(거광이엔티)

$$55.14 = 70 - 4 \times \left(\frac{88}{100} - \frac{84.286}{100} \right) \times 100$$

□ **경영상태 평가** ← (나라장터 전송등급 BBB+로 확인, 29.8점 평점 인정)

[평가표]

신용평가등급			
회사제	기업머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	AAA	30
AA+, AA0, AA-	A1	AA+, AA0, AA-	30
A+	A2	A+	30
A0	A20	A0	30
A-	A2-	A-	30
BBB+	A3+	BBB+	29,8
BBB0	A30	BBB0	29,6
BBB-	A3-	BBB-	29,4
BB+, BB0	B+	BB+, BB0	29,2
BB-	B0	BB-	29
B+, B0, B-	B-	B+, B0, B-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

□ **신인도 평가** ← (혁신형 제조기업은 +2점 가점 부여 가능)

[신인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점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 	2.0
	- 혁신형 중소기업 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제조기업이 아닌 경우)	
		1.5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활용 벤처기업 확인** ← (신인도 평점 +2점 가점 부여)

인종구분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일자	만료일자	유효기간
벤처기업	기술보증기금	013520094580	2009-04-08	2010-04-07	
	기술보증기금	20100201489	2010-04-08	2012-04-07	
	기술보증기금	20120201405	2012-04-08	2014-04-17	
	기술보증기금	제20140103448호	2014-04-08	2016-04-07	
	기술보증기금	제20160103979호	2016-04-08	2018-04-07	
	기술보증기금	제20180103671호	2018-04-08	2020-04-07	

□ 종합평점 계산/확인

[종합평점]

구분	입찰 가격(A)	이행능력					합계 (A+B)	적격여부 (85점 이상)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소계 (B)		
심사기준	70	-	-	30	+3~-2	30	100	
자기심사표(거광이엔티)	55.14			29.8	+0.2	30	85.14	적격

※ 신인도 평점은 이행능력 배점한도(30점)내에서 부족한 점수만 인정

* 30점 - 29.8점 = 0.2점, 신인도(혁신형 중소기업) +2점 ➡ +0.2점 인정

◇ [참고/1순위자 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하라면?]

[평가표]

신용평가등급			
회사제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	AAA	30
AA+, AA0, AA-	A1	AA+, AA0, AA-	30
A+	A2	A+	30
A0	A20	A0	30
A-	A2-	A-	30
BBB+	A3+	BBB+	29.8
BBB0	A30	BBB0	29.6
BBB-	A3-	BBB-	29.4
BB+, BB0	B+	BB+, BB0	29.2
BB-	B0	BB-	29
B+, B0, B-	B-	B+, B0, B-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

※ 신용평가등급(CCC+이하) 경영상태 평점 25점 : 종합평점 82.14점으로 부적격

[종합평점]

구분	입찰 가격(A)	이행능력					합계 (A+B)	적격여부 (85점 이상)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소계 (B)		
심사기준	70	-	-	30	+3~-2	30	100	
자기심사표(거광이엔티)	55.14			25	+2	27	82.14	부적격

□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시 조치방법

○ (국가) 적격심사 결과 통보 및 재심사 안내

- (서류보완)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지방) 1회에 한하여 심사서류 보완·추가 제출 가능

- (서류보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심사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게 1회에 한하여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함

* 보완·추가 서류 제출기한 : 7일 이내, 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

< 부적격 평가 처리절차 >



□ 적격심사 재심사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부적격통보일로 부터 3일 이내 재심사 요청 가능 (국가, 지방)

- 낙찰자(선순위)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자(후순위자) : 낙찰자결정일로 부터 3일 이내 재심사 요청 가능(지방)

*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국가, 지방)

** 재심사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국가) / 5일(지방) 이내 재심사 처리

□ 적격심사 결격사유 확인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제외(국가, 지방)
 - *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
- 공동수급을 허용한 경우
 - ①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 적격심사에서 제외(국가, 지방)
 - ②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평가
 - * (국가)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 ** (지방) 제외된 해당 구성원의 참여비율(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함

□ 부정·허위 서류 제출자 등의 처리

- (공통) 부정·허위서류 제출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구매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
 - ①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낙찰자 결정 통보를 한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 ② 계약체결 이후 : **계약 해제·해지 처리 가능**
- (지방)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지 않고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없음**(’19.9월 국가계약법 개정)

3. 일반용역 적격심사

□ 일반용역 구분 및 범위

구분	범위
학술연구	학문분야의 기초과학 등에 관한 연구용역(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자문 등)
시설분야용역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
소프트웨어용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에 따른 용역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
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기물 제외)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 등
육상운송용역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용역
보험용역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예지할 수 없는 사건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생명손해제3보험 등
수리·점검용역	장비, 기기 등을 수리, 교체 등을 실시하거나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 점검, 교정, 보강, 도장 등을 실시하는 행위
임대차	시설·기계설비장비 등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게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수요기관지정형	사업의 특성,목적 등에 맞게 평가항목 및 배점을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 또는 신설·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

* 학술연구용역, 정보통신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되는 경우 적격심사 적용 제외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번	구분	입찰 가격(A)	수행능력(B)					합계 (A+B)	통과 점수	낙찰 하한율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소계(B)				
①	학술연구	5억이상	60	30		10	+4.25~-5	40	100	85	80.495%
		5억미만	70	10		20	+4.25~-5	30	100		84.245%
②	시설분야	5억이상	60	20	10 (근로조건)	10	+4.25~-5	40	100	85	87.995%
		5억미만	70		10 (근로조건)	20	+4.25~-5	30	100		
③	소프트웨어 (비중기간)	5억이상	60	20	10	10	+4.25~-5	40	100	85	80.495% (고시금액 미만 : 84.245%)
		5억미만	70		10	20	+4.25~-5	30	100		
	소프트웨어 (중기간)	5억이상	60	20	10	10	+4.25~-5	40	100	88	87.995%
		5억미만	70		10	20	+4.25~-5	30	100		

순번	구분	입찰 가격(A)	수행능력(B)					합계 (A+B)	통과 점수	낙찰 하한율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소계(B)				
④	폐기물	5억이상	60	20	10	10	+4.25~-5	40	100	85	80.495% (5억 미만 : 84.245%)
		5억미만	70	10	10	10	+4.25~-5	30	100		
⑤	여객 육상운송 (중기간)	5억이상	60	20	10	10	+4.25~-5	40	100	88	87.995%
		5억미만	70	10	10	10	+4.25~-5	30	100		
⑤-1	화물 육상운송	5억이상	60	20	-	20	+4.25~-5	40	100	85	80.495% (5억 미만 : 84.245%)
		5억미만	70	10	-	20	+4.25~-5	30	100		
⑥	보험	5억이상	60	보험금지급능력 40		+4.25~-5	40	100	85	47.995%	
		5억미만	70	보험금지급능력 30		+4.25~-5	30	100			

순번	구분	입찰 가격(A)	수행능력(B)					합계 (A+B)	통과 점수	낙찰 하한율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소계(B)				
⑦	수리·점검 용역	5억이상	60	20	10	10	+4.25~-5	40	100	85	80.495%
		5억미만	70	10		20	+4.25~-5	30	100		84.245%
⑧	임대차 용역	70		10 (임대차 사후관리A/S)	20	+4.25~-5	30	100	85	80.495% (고시금액미만 84.245%)	
⑨	수요기관 지정형	60~ 70	30점 이하	10점 이하	10~ 30	+4.25~-5	30~ 40	100	85	80.495% (고시금액미만 84.245%) (70점 배점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통해 심사 진행

(1) 학술용역 평가기준

순번	구분	입찰 가격(A)	수행능력(B)					합계 (A+B)	통과 점수	낙찰 하한율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소계(B)			
①	고시금액 이상	40	30		30	+6.75~-5	60	100	85	80.495% (25점)
	고시금액 미만	70			30	+6.75~-5	3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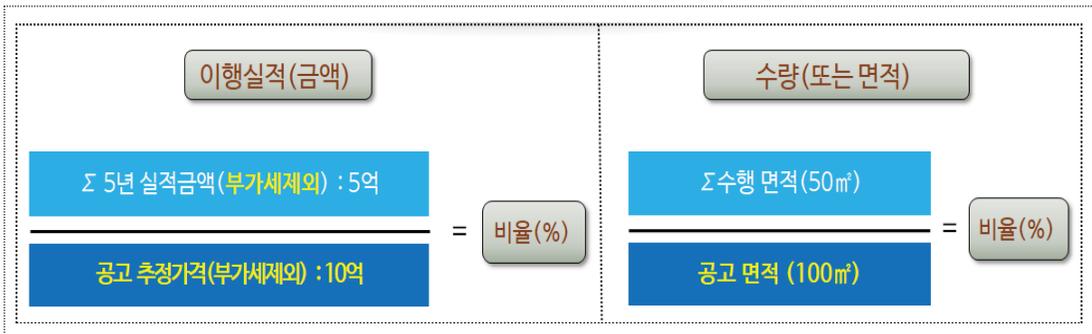
※ 결격사유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제외)

□ 입찰가격 평가

- ① 고시금액 이상 평점 = $40 - 2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 | | 는 절댓값 표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숫자가 있는 경우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에는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② 고시금액 미만 평점 = $70 - 4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 | | 는 절댓값 표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숫자가 있는 경우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75% 이상인 경우에는 97.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이행실적평가

-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
-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해 규모(면적 또는 수량)으로 평가 가능(시설분야 용역 등)



- 최근 5년 이내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역산하여 적용(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실적까지 인정)
- *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 :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는 제외(신인도 가점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

<이행실적 심사항목 및 평점 : 배점한도 30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점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창업기업은 최근 7년)용역 이행 실적 비율 (금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 100% 이상	30
		B. 70%이상 ~ 100%미만	27
		C. 40%이상 ~ 70%미만	24
		D. 10%이상 ~ 50%미만	21
	나. 유사물품 용역	A. 100% 이상	9
		B. 70%이상 ~ 100%미만	6
		C. 40%이상 ~ 70%미만	3
		D. 10%이상 ~ 50%미만	2

○ ‘동등 이상 용역’과 ‘유사용역’을 합산하여 평가

- * 동등이상 용역 : 해당 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이를 포함하는 용역으로 난이도가 더 높은 용역
- ** 유사용역 : 해당 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동등이상		유사용역		배점한도(3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 100%이상	30	A. 100%이상	9	= 평점 : 30점
B. 70%이상 ~ 100%미만	27	B. 70%이상 ~ 100%미만	6	
C. 40%이상 ~ 70%미만	24	C. 40%이상 ~ 70%미만	3	
D. 10%이상 ~ 40%미만	21	D. 10%이상 ~ 40%미만	2	
75% : 27점		50% : 3점		27+3 = 30점

-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의 범위, 금액 또는 수량(면적) 평가여부를 입찰공고서에 명시

<예시 : 동등이상, 유사용역 입찰공고서 명시 >

- ①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 낙찰하한율 : 80.495%(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
- ② 이행실적평가 : 금액
 - * 평가기준 : 최근 5년(창업기업 7년)간 용역이행실적 금액(부가세 제외) / 해당용역 추정가격
 - ** 추정가격 : 3,120,000,000원(* 부가세 별도)
 - *** 동등이상 용역 : 0000연구 용역, 유사용역 : △ △ △ 연구 용역

- 이행실적 제출서류 : 공공기관 이행 실적은 일반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 * 민간실적 : 실적증명서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별지 제3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 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사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조 달 청	
용역범위 및 기준 (연력, 금액 등)				
용역명		구 분		
용역개요		특수(), 정보통신() 청소(), 시설관리() 경비(), 폐기물처리(), 기타분야()		
이행실적내용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비고
			비율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		
	주소: (FAX:)		
발급부서:		담당자:	
(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연력,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경영상대평가**

-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30.0
BBB+	A3+	BBB+	29.8
BBB0	A30	BBB0	29.6
BBB-	A3-	BBB-	29.4
BB+, BBO	B+	BB+, BBO	29.2
BB-	B0	BB-	29.0
B+, B0, B-	B-	B+, B0, B-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0

* 신용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최저등급(CCC+이하)으로 평가(25점)

<신용평가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연계 신용평가(나라장터/e-고객센터/부가서비스/연계기관링크)
 -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SCI 평가 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으로 나라장터 전송되어야 함(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 * 민간 업체간 거래 용도로 발급 받은 신용평가등급은 평가 대상이 아님

<신용평가등급 예시>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귀사의 약력에 의해 실시한 기업신용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기업명		기업신용평가등급
대표자		e-1
법인등록번호		AAA
사업자등록번호	106-82-30448	본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채무결산기준	2017년 12월 31일	에 준하는기업신용평가등급임
등급평가일	2018년 04월 09일	
등급유효기간	2019년 04월 08일	
도도명주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송 신용평가 등급>

[경영상태 정보]							입찰공고일 : 2020.1.1.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수선일자	등급평가일	유효기한	등급	신용평가사	신용정보	
나라장터시연업체51조합	9992100104	201923	2019.2.1.	2020.2.1	BBB+	나이스디앤비	기업신용평가등급	
나라장터시연업체52	-	-	-	-	-	-	-	

- ① 입찰공고일 이전 : 입찰공고일과 등급평가일 확인
- ②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과 유효기간 확인
- ※ (참고)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용역) 경영상태 평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 :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
 - * 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 신인도평가(모든 용역 공통)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②장애인기업 지원	
다. 고용창출	①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라.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마. 불공정 계약행위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③부정당업자 제재	
	④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바. 부당노동행위	①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③부정당업자제재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 *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음
- * 부당노동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

◇ 중소기업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5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0

*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고용증가율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다. 고용창출	①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3.0
		(나) 6%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3.0
		(나) 7%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3.0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나) 9%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5
		(1) 6인 이상	1.0
		(2) 3~5인	1.0

[예시 : 고용증가율 계산(입찰공고일 2019년 7월)]

① 고용인원 계산

구분	기준연월 (공고 전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소계 (A) (6개월 합계)	평균 (A÷6개월)
최근 6개월	2019년 6월	109	109	109	109	109	109	654	109명
직전년도 6개월	2018년 6월	100	100	100	100	100	100	600	100명

② 고용비율 계산

$$109 \div 100 = 1.09$$



9% 증가

③ 고용증가율 평가

- ㉠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감점항목) 지체상금, 하도급상습위반, 하도급과징금부과, 부정당이력, 임금체불, 폐기물처리부적정,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나라장터 적격심사 시스템에서 자동 감점처리)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마. 불공정 계약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부정당 업자 제재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④폐기물부 적정 처리 (폐기물처리 용역에 한함)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바. 부당 노동행위	①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0 △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참고>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

The screenshot shows the '나라장터'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interfac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부정당업자조회' (Disqualified Contractor Search). Below the title, there are five numbered search criteria:

- 본 화면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사항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원인부정당경보가 같으면 같은 부정당 계재건입니다.
- 대표자나 기사 등으로 연관되어 부정당 계재 중인 업체도 조회됩니다.
- 부정당계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상세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를 클릭하여, 부정당계제시 연관계계 처리되는 업체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Below the criteria, there is a search form with the following fields:

- 사업자등록번호: [Input field]
- 대표자명: [Input field]
- 계약종류: [Dropdown menu]
- 동보일자: 2018/01/08 ~ 2020/01/09
- 계재기관: [Input field]
- 대표자 생년월일: [Input field] 예) 871213
- 계재사유: [Input field]
- 기간: 최근1년 최근2년 전체
- 테스트 데이터 제외

◇ <참고> 나라장터 하도급상습위반, 과징금부과 조회

The screenshot shows the '나라장터' (Nalajangteo) website interfac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하도급상습위반조회' (Subcontracting Habitual Violation Search). It contains a list of instructions: 1. Check the status of habitual violation cases and penalties within the search period. 2. Note that cases may be excluded, so verification is required. Below the instructions is a search form with fields for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조회일자' (Search Date) (2018/01/10 to 2020/01/09), and a '검색' (Search) button. Two tables are displayed, both showing '검색될 데이터가 없습니다.' (No data to be searched).

◇ <참고> 하도급법 위반 등 사항 조회(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의결서·재결서 선택]

The screenshot shows the '공정거래위원회' (Korea Fair Trade Commission) website.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사건신청/진행', '사건심사/의결', '사건처리정보', '사전심사제도', '신고에서 소송까지', and '사건처리안내'. The '사건처리정보' (Case Processing Information) section is active, with a sub-menu containing '의결서' (Decision Letter), '심사관련경고서', '법위반사실조회', '심의속기록', '정책동향', '관련법령', '서식관련', and '자주묻는질문'. The '의결서' link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the menu, there are search filters for '의결일' (Decision Date) and '대표조치유형' (Type of Representative Action).

◇ <참고> 임금체불 조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

The screenshot shows the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ebsite.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민원', '국민참여', '뉴스·소식', '정보공개', '정책자료', '기관소개', and '전체'. The '정보공개' (Information Disclosure) section is active, with a sub-menu containing '사전정보 공개목록', '행정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청렴정책공개', '공공데이터개방', and '채용사업주 명단공개'. The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link is highlighted.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and contains information about the disclosure of business owner lists for non-payment of wages.

(2) 시설분야 용역 적격심사

순번	구분	입찰 가격(A)	수행능력(B)				합계 (A+B)	통과 점수	낙찰 하한율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소계(B)	
②	시설분야	5억이상	60	10	5 (근로조건)	25	+4.25~-5	40	100	85	87.995%
		5억미만	70		5 (근로조건)	25	+4.25~-5	30	100		

※ (결격사유) ①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②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행실적평가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5년간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기준 (다만,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1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B. 70%이상 ~ 100%미만	9	
		C. 40%이상 ~ 70%미만	8	
		D. 10%이상 ~ 40%미만	7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3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B. 70%이상 ~ 100%미만	2		
	C. 40%이상 ~ 70%미만	1		
	D. 10%이상 ~ 40%미만	0.5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포함한 수준이상의 임금 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5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청소용역)		
계	5	0

(3)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순번	구분	입찰 가격(A)	수행능력(B)					합계 (A+B)	통과 점수	낙찰 하한율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소계(B)				
③	소프트 웨어용역 (비중기간)	5억이상	60	10	5	25	+6.75~-5	40	100	85	80.495% (2억 미만 : 84.245%)
		5억미만	70			30	+6.75~-5	30	100		
	소프트 웨어용역 (중기간)	5억이상	60	10	5	25	+6.75~-5	40	100	88	87.995%
		5억미만	70			30	+6.75~-5	30	100		

※ (결격사유)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제외)

□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점	
	자격증	보유인원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시행규 칩[별표2] 중직무분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 ·무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2인 이상	5	-
		1인	3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3인 이상	5	
		2인	4	
	C. 기능사	1인	2	
		3인 이상	3	
		2인	2	
	D. 미보유	1인	1	
			0	

[평가방법]

-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
- *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

-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 기술사 A 3점 + 기능사 B 1점 = 4점으로 평가
- 기술사 A 3점, 기능사 A 1점 (동시 보유) : 3점만 인정

(4)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순번	구분	입찰 가격(A)	수행능력(B)					합계 (A+B)	통과 점수	낙찰 하한율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소계(B)			
④	5억이상	60	20	10	10	+4.75~-8	40	100	85	80.495% (2억 미만 : 84.245%)
	5억미만	70	10	10	10	+4.75~-8	30	100		

※ (결격사유) ①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②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 법령이 정한 업종 또는 면허 등록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가.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9 0	9 0
나.기술보유 상황	A. 신기술(NET)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인정된 신기술 B. 품질인증(GR)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	1

[평가방법]

-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

- 다만,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

◇ (예시)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2.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

2) 기계적 처분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 (1) 처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 (3) 계량시설 1식 이상
-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 (예시)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6)

- ※ ①에 해당하는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이 “중간가공음식물류 폐기물”이어야함

<낙찰자결정방법>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폐기물 처리용역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적용)
 - * 낙찰하한율 : 80.495%(적격통과점수 85점 이상)
- 이행실적 평가 관련
 - 기준금액 : 3,710,540,182원(부가세 별도)
 - 동등이상 용역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음식물쓰레기 처리 용역, 수집·운반 포함), 유사용역 : 없음
- 기술능력 평가 관련
 - 폐기물 처리(재활용)업체만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각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용역금액을 기준으로 동등이상 용역을 평가하며, 유사용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기준금액 : 3,212,338,727원(부가세 별도)
 -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기준금액 : 498,201,455원(부가세 별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 1226)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할 경우 제출]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용량이 80톤/1일 이상인 업체이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합산함)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
-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으로 입찰 참여 시)

(5-1) 여객 육상용역 적격심사

순번	구분		입찰 가격 (A)	수행능력(B)					합계 (A+B)	통과 점수	낙찰 하한율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 도	소계 (B)			
⑤	여객 육상 운송	5억 이상	60	20	10	10	+6.7 5~-5	40	100	85	80.495% (2억 미만 : 84.245%)
		5억 미만	70	10	10	10	+6.7 5~-5	30	100	85	

※ (결격사유) ①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②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 소유 차량으로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에 한하여 인정)하는 '차량보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안전성 정도	A. 1등급	10	10
	B. 2등급	8	8
	C. 3등급	6	6
	D. 4등급	4	4
	E. 5등급 및 공시불응	2	2

①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해당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이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 **결격사유 평가기준**

- ① 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5-2)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순번	구분		입찰 가격 (A)	수행능력(B)					합계 (A+B)	통과 점수	낙찰 하한율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 도	소계 (B)			
⑥	화물 육상 운송	5억 이상	60	20		20	+6.7 5~-5	40	100	85	80.495% (2억 미만 : 84.245%)
		5억 미만	70	10		20	+6.7 5~-5	30	100	85	

- ※ (결격사유) ①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②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 소유 차량으로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에 한하여 인정)하는 '차량보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6) 보험용역 적격심사

순번	구분		입찰 가격(A)	수행능력(B)			합계 (A+B)	통과 점수	낙찰 하한율
				보험금지급능력	신인도	소계(B)			
⑥	보험	5억 이상	60	40	+4.25~-5	40	100	85	47.995%
		5억 미만	70	30	+4.25~-5	30	100		

※ 결격사유 : ①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②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등록요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 법령이 정한 업종 또는 면허등록 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

심사 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지급여력 비율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기준금액)	A. 150%이상	40	30
	B. 100%이상~150%미만	38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

☞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소관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

②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인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7) 수리·점검 용역 적격심사

순번	구분	입찰 가격(A)	수행능력(B)					합계 (A+B)	통과 점수	낙찰 하한율
			이행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소계(B)			
⑦	수리·점검	5억 이상	60	20	10	10	+4.25~5	40	100	85 80.495% (고시금액 미만: 84.245%)
		5억 미만	70	10	0	20	+4.25~5	30	100	

※ 결격사유: ①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②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기술능력 평가기준 >

기술신용평가등급	평점
T1, T2	10
T3+, T3, T4	9.7
T4+, T4, T4-	9.4
T5+, T5, T5-	9.1
T6+, T6, T6-, T7	8.8
T8, T9, T10	8.0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8) 임대차 적격심사

순번	구분	입찰 가격(A)	수행능력(B)				합계 (A+B)	통과 점수	낙찰 하한율
			경영상태	사후관리 (A/S)	신인도	소계(B)			
⑧	임대차	70	20	10	+4.25~5	30	100	85	80.495% (고시금액 미만 : 84.245%)

※ 결격사유: ①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②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등록요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 법령이 정한 업종 또는 면허등록 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사후관리(A/S)평가기준 >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점
임대물품 사후관리 (A/S)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교체,수리 등)를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한에 따라	
	A. 기한 내	10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8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6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4

- ① 입찰공고에서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
-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계약서에 따라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

(9)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순번	구분	입찰 가격(A)	수행능력(B)							합계 (A+B)	통과 점수	낙찰 하한율
			기본평가항목		선택평가항목				소계(B)			
			경영상태	신인도	이행 실적	기술 능력	사후 관리	기타				
⑨	수요기관 지정형	60점이상 70점 이하	10점이상 30점이하	+4.25~-5	30점 이하	10점 이하	10점 이하	5점 이하	30~40 점	100	85	80.495% (고시금액 미만: 84.245%)

※ 결격사유: ①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4

제안서 평가

| 담당교수 | 최도환

Public Procurement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INFORMATION

1. 제안서 평가 대상	127
2. 제안요청서 작성	129
3. 제안서 평가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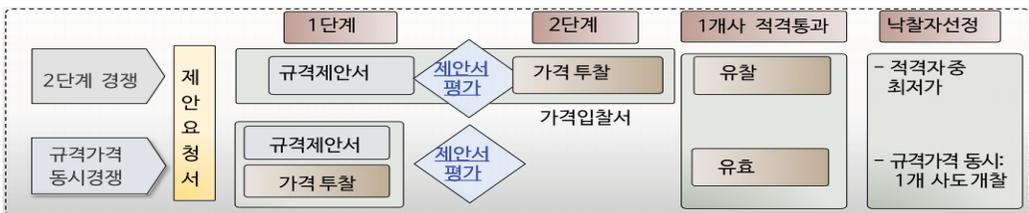
1. 제안서 평가 대상

□ 제안서 평가 대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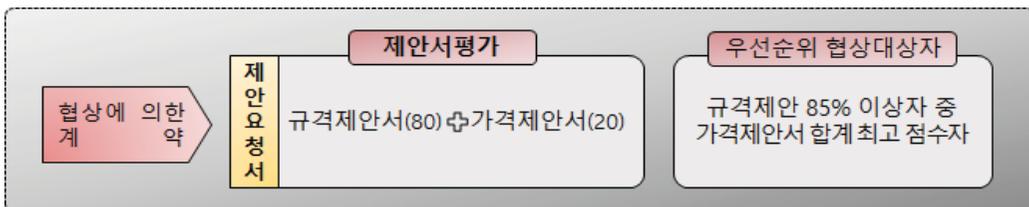
구 분	관 련 규 정
협상에 의한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약법시행령 43조, 43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재부)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 지방계약법시행령 43조, 4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약법시행령 18조 ○ 지방계약법시행령 18조

- * 청소, 검침용역 등 단순노무성격의 경우 2단계 입찰 제외(적격심사낙찰제 이용)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 3(2단계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용역)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 제안서 평가를 이용한 계약절차



- * 2단계, 규격가격동시: 2개사 적격⇒ 가격개찰결과 예가 초과⇒ 가격 재입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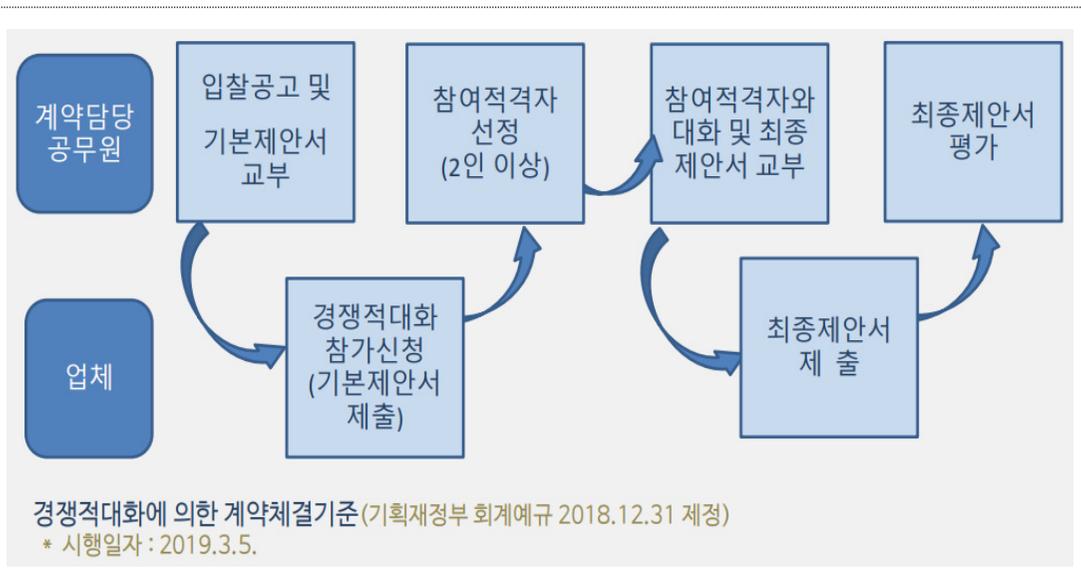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이하“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① 기술적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 ② 물품·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 ③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④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 2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프로세스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주요내용 〉

- (개요) 드론 등 혁신기술 제품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 마련
 - * 제안업체들과 협의를 통하여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으로 과업을 확정하고 동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계약제도
- (절차) ① 발주기관의 기본 제안요청서에 대해 기본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평가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업체 선정(2~5명 이내, 선정수, 평가방법 등은 미리 입찰공고서에 명시)
 - ② 발주기관이 2회 이상에 걸쳐 대화참여자와 개별적으로 기술적·재무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대화를 진행하면서 제안 요청서를 구체화
 - ③ 대화결과를 토대로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를 확정하고, 업체가 제출한 최종제안서를 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
- (평가방식)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 기술능력 평가는 문제해결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등을 평가(실적, 재무능력 등 정량평가는 배제)
- (낙찰탈락자 보상) 사업예산의 1.5% 범위 내에서 보상

39

2. 제안요청서 작성

□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제안요청서는 제안서를 작성하기 이전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 될 수 있고, 제안서 평가기준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강조된다.

제안사안 및 특성에 따라 항목은 다르게 구성하여 작성 될 수 있으며 정형화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안요청서에는 과제의 유형과 수행능력, 추진배경 및 필요성(목적), 세부내용, 요건과 범위, 수행 기간, 제안 금액, 제안 방법, 제출 서류, 요구사항, 제안서 목차, 평가 기준, 유의사항, 제안 이후 제안발표 일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제안요청서[提案要請書, request for proposal](비즈폼 서식사전, 비즈폼)

□ 제안요청서 작성 기준

- ① 수요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 ② 이를 뒷받침하는 규격(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③ 평가위원이 명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2단계, 규격가격동시, 협상,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 모두 해당

□ 제안요청서 구성



<공고 사례>	목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방법 5. 제안서 규격 6. 기타 필요사항 	I. 추진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1 2. 추진목표 1
	II. 입찰개요 및 과업 세부내용 1. 입찰개요 2 2. 과업 세부내용 3
	III. 용역 추진방법 1. 과업 추진방법 4 2. 보안관리 5 3. 성과물 제출 6 4. 기타사항 6
	IV. 입찰자격 및 선정방법 1. 입찰 참가자격 7 2. 입찰 및 낙찰방식 7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 7
	V. 제안서 작성 및 문의처 1. 제안서 작성요령 8 2.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유지 9 3. 제안서 규격 10 4. 제안서 제출 10 5. 제안 설명회 11 6. 문의처 11
	VI. 붙임.서식 붙임1. 제안서 표지서식 12 붙임2.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13 붙임3. 제안서 작성지침 14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15

① 과업내용

- (사례) 가상현실 활용 핵 테러 대비 훈련시스템 구축



- 사업(과업) 내용

사업명 : 이동 체험형 가상현실 기반 FTX운영시스템 장비 구축

추진목적 : 핵비확산·핵안보 교육효과 극대화에 필수적인 실습용 가상현실 장비 구축 마련

② 요구사항

<요구사항이란>

- 수요목적에 뒷받침 해주는 구체 사항(규격 등) 들이다
 - 민간 상품학에서는 유형적요수(품질 등)에 해당된다.
- ☞ 품질 : 정밀도/ 성능, 신뢰성, 적합성, 내구성, 편의성
 - * 신뢰성 - 반복적인 측정결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정도(성능의 지속성)

<요구사항의 원칙>

- 결과의 명확성: 요구사항에 대해 장비구축 후 그 결과가 확실할 것
- 실현 가능성: 현재의 기술로 실현 가능할 것
- 검증가능성: 검수 등으로 기술적 검증이 가능할 것
- 의미의 명확성: 불명확한 용어나 표현은 삼가할 것
 - * 필요시 용어 정의 별도로 명시할 것
 - 규격의 개방성: 특정 규격이나 상세 규격(사양)을 명시하지 않을 것

③ 계약조건

계약조건 별	내 용
계약대상 물품	계약대상 물품명, 수량, 규격, 납품기한 등
계약변경	필요 시 수정계약 등에 대한 내용
검사 및 검수	검사 및 검수의 주체 및 방법
대금지급	선금, 기성금 및 잔금 등의 지급방법
하자 치유 관련	계약물품에 대한 하자 치유 방법 명시

* 그 외 : 납품지체상금, 천재지변, 채권양도 등 조건 명시

④ 평가요소와 방법

<공고예시>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의 비중이 크므로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함
- 제안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발주기관에서 기술평가 실시
- 평가방법
 - 기술평가는 기술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 하여 산정하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로 산출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기술평가 배점한도 80점)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환산점수68점)
 - 가격평가는 조달청 평가방법에 의함
 - 종합평가점수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⑤ 제안서 규격

<제안서 규격 예시>

- 제안서, 제안 요약서는 파워포인트를 사용, A4 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
- 제안서의 전문용어는 가급적 한글 표기, 불가피한 경우 한글 표기 및 괄호 안에 원어 표기
 - * 영문 약어의 경우 Full-Name 표기
- 제안서는 흑백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5쪽 내외 컬러 사용 권장
- 제안 내용은 필요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되 모호한 표현은 피할 것
 - *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작성,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 하거나 늘릴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권장사항 예시>

- 제안서 내용 중 만약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어야 한다.

III. 제안서 작성지침

1. 공통사항

- 1) 제안내용 이외에는 제안서 내에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금하며, 특히 사업수행 계획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회사명, 참여인력 설명 및 과거 수행실적(사례) 등을 명기할 수 없음
- 2)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을 기본으로 하고 단면 좌철무선제본함(스프링제본 불가)
- 3)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각 페이지 별로 중앙 하단에 -1-와 같이 페이지 번호를 명기하고, 간지를 사용할 수 있음
- 4)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미터법을 쓰며 외래어는 괄호로 명기함
- 5) 제안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

※ 인식명칭란은 제안서 총 10부중 1부에만 제안회사명을 기재하여 제출

※ 제안서의 공란, 앞뒷면 등 여백 어느 곳이든 제안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 발견 시, 접수는 무효처리 함

※ 본 예시는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의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을 함께 언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제안서에 업체추정 가능한 명기를 금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아님

⑥ 기타 필요사항

○ 입찰자에 대한 안내 사항, 유의사항 등이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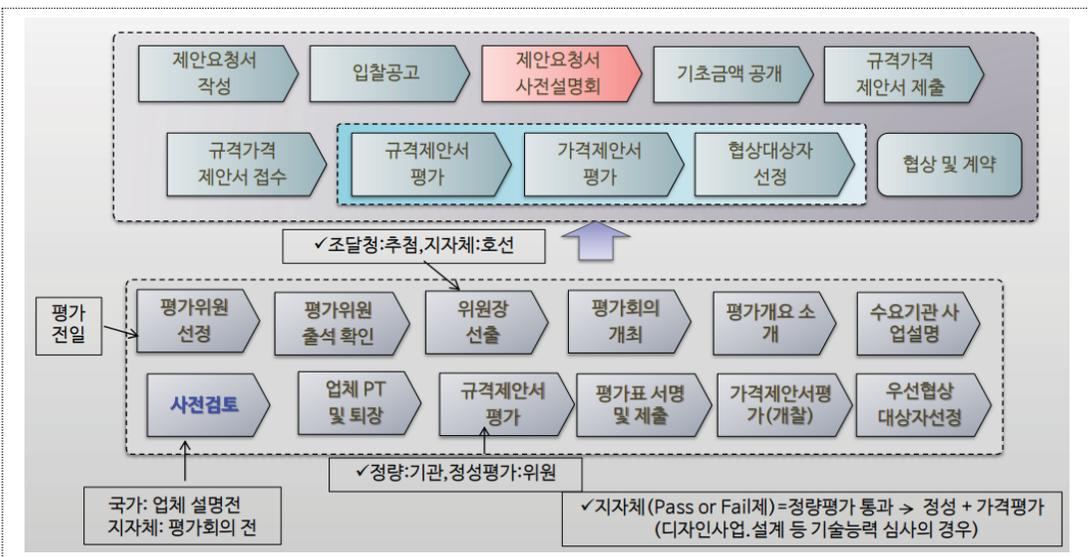
* 앞 부분 명시사항 외

< 예시 >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된다.
-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서 1부
 - 보안서약서(투입인력 전체) 각 1부(붙임 1양식)

3.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절차(협상계약 기준, 2단계 등 준용)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국가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와규격가격동시입찰에 준용		
내역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기술능력 평가	기술· 지식능력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평가항목 배점한도는 30점 초과불가 ○ 평가항목 추가.제외 가능 ○ 비 기술부분 평가 - 기술은 좋은데, 자본력이나 관리 능력 부족으로 도산 하는 사례 때문 	
	인력· 조직· 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 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중소s/w업자 참여비율 중기간경쟁X 단순노무 포함 용역 최저임금 조건		입찰가격 평가	30	
* 정보화사업: 기술 90 가격 10 - 기술력 우수한 사업자 선정위해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별표1]				* 2단계와규격가격동시입찰에 준용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가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 평점산식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가능					

□ 신용평가(정량평가)

[조달청 세부기준] (평점 최고 최저 차이 30% 초과X)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 (조달청)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자체) 자체적으로 정함

□ 실적평가(정량평가)

[조달청 세부기준] (평점 최고 최저 차이 30% 초과X)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등은 수행실적 평가 제외

- 실적 인정범위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대로 한다.
-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정함(자체 평가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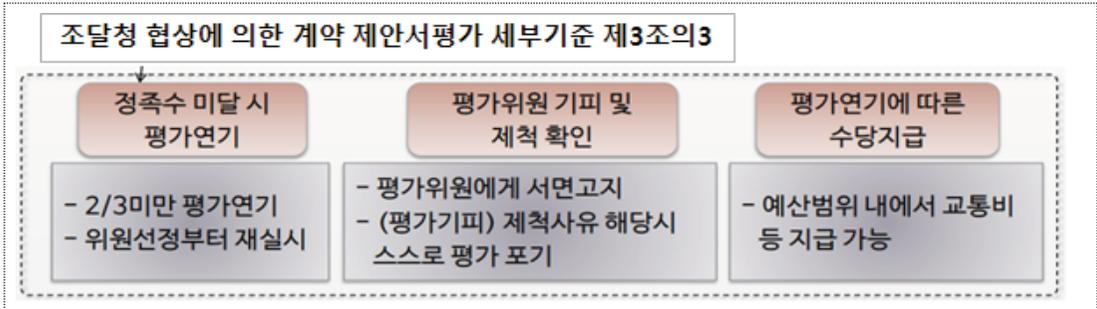
□ 정성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선정·구성

	추정가격	평가위원 수	정족수	위원장
기재부 기준	1억 원 미만	5인 이상	-	외부위원 중 호선 (외부위원 과반지지)
	1억 원 이상	7인 이상		
	외부 위원	과반수		
행안부 기준	금액 구분 없음	7 ~ 10 인 (내용에 따라 조정)	-	호선
조달청 기준	1억 원 미만	8 명	2/3 이상	추첨
	1억 ~ 50억 미만	8명 이상		
	50억 원 이상	9명 이상		

□ 평가위원 선정방법



□ 평가위원 미달, 제척 등(조달청)



- [기피 및 제척 대상]⇒ 서면 안내⇒ 해당이 되면 위원장에 말씀하여 줄 것을 요청
 - 평가 대상사업과 관련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
 - 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후원금이 심사 대상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안서 사전검토(평가위원)



- 조달청 협상세부기준 11조 3항: 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
- 지자체(행안부) 협상계약체결 기준(5장): 3절4번 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 가능(시간은 정하지 않음)

□ 입찰자 수 별 사전평가 방법

입찰자 수	평가방법
3개사 이하	평가위원은 시스템을 통해 입찰자별, 평가항목별 해당등급 부여 평가위원이 제출한 평가부문별 평가점수가 해당 평가부문별 평균점수보다 배점한도의 10%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평가점수 조정의무 순위자별 평가점수 차이가 큰 경우 조정계수 반영
4개사 이상	2단계 평가 실시 -1단계 : 입찰자별 등급(상,중,하)결정 -2단계: 해당 등급별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부여 *배점비율 상(배점의 94%이상), 중(배점의 94%미만~88%이상),하(배점의 88%미만)

□ 제안서 설명(업체)



계약담당공무원	필요한 경우 PM이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 입찰공고에 규정
입찰참가업체	제안서에 PM 명시,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
PM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 제안서 청취 및 발표(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10조)

- ① 제안서 제출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 답변이 가능
- ② 제안 설명회 일자·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함.
- 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 참여업체는 다른 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 ④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안 설명회 개최를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정성평가 평점방식 사례

○ 조달청 세부기준의 경우는 입찰자 수에 따라 평점을 부여한다.

☞ 예) 조달청 세부기준 별표 17 3개사 이하 인 경우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평가위원 별 기술평가점수집계

평가집계

평가위원 최고,최저점수 제외여부, 소수점 이하 계산 등 **자체기준 적용**

○ 평가점수 산출

세부기준 제12조
지방기준 제3절

- 평가위원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최저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 소수점 이하의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집행자 확인사항) 위원별 평가표 서명여부, 평가점수 정정 시 해당 항목에 서명여부 확인

기술평가점수표 (예제)

평가위원	업체1	업체2	업체3
김○○	64	46	49
이○○	69	70	53
박○○	46	44	48
정○○	50	76	78
최○○	68	55	65
조○○	50	66	83
오○○	56	62	66
평균	57.60	59.8	62.2

□ 가격제안서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현상대상에서 제외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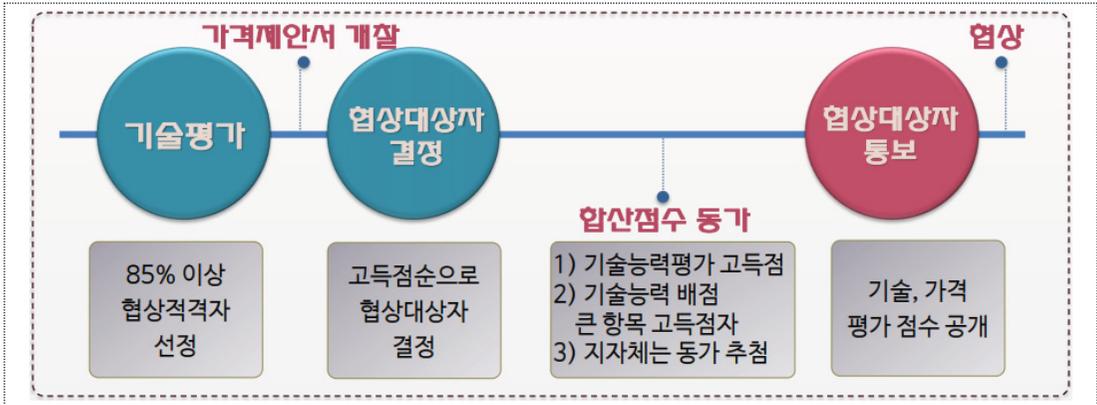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의 80% 상당가격)
 + { 2 × ($\frac{\text{예정가의 80\%상당가격} - \text{해당입찰가격}}{\text{예정가의 80\%상당가격} - \text{예정가의 70\%상당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지방)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 사업은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 하는 평점률 부여

□ 종합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구 분	협상적격자	우선협상 대상자
기재부	기술평가 85%이상	가격평점 합산 후 고득점 순
행안부	기술.가격점수 합산 70점 이상	고득점 순

* 행안부 S/W사업 평가 : 기술평가 85%이상을 협상적격자로 함

□ 협상 순위



- ☞ 조달청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세부기준 10조 ⑧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된 경우에는 제안서 적합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적합 여부 판단은 수요기관이 한다.

□ 협상(Negotiation)



□ 규격 및 가격협상(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 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제안서 제출 전까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당한 특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계약체결 후라도 예정가격 또는 원가산정의 착오를 이유로 감액 또는 환수
⇒ 적용불가

□ 협상 종료 및 계약체결



5

용역원가계산

| 담당교수 | 박수천

Public Procurement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INFORMATION

- 1. 원가계산 개요 149
- 2. 일반용역 원가계산 154
- 3. 정산실무 168

1. 원가계산 개요

- (원가계산)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약목적물(물품, 용역 등) 완성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각각의 비용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산한 것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계약목적물의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된 가격
 - * 국가계약법 제8조 2(예정가격의 작성) / 지방계약법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 예정가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계약목적물 구매가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으로 계약체결의 상한금액



- (예정가격 결정기준) 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② 적정한 거래실례 가격이 없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신규개발품 등), ③ 1~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유사물품·용역 등의 거래실례 가격 또는 견적가격
-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기타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야 함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장

< 예정가격 결정 절차 >



□ (거래실레가격)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실레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나라장터 / 가격정보) (조사가격 / 생산자 공표가격 예의) (직접조사)

□ (예정가격 결정절차) 거래실레, 원가계산, 견적가격 등의 방식으로 조사한 가격을 기초금액으로 작성

* 작성된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

○ 복수예비가격 작성 : 기초금액의 ±2%(국가) / ±3%(지방)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을 작성(비공개)

○ 예정가격 확정 : 입찰에 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에서 추첨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

< 예시: 예비가격 산정결과(조달청 나라장터) >

예비가격 산정결과					
입찰공고번호		참조번호			
입찰분류	1	제입찰번호	0		
공고명					
낙찰자선정격용기준	행정안전부 기준	실제 개찰일시	2019/06/17 17:20		
예가범위	-3% ~ +3%	기초금액기준 상위갯수	7		
경렬기준	Random 저장	복수예비가격 작성시각	2019/06/17 17:17:30		
구분	금액	추첨횟수	구분	금액	추첨횟수
추첨가격 1	174,305,100	3	추첨가격 2	175,856,500	1
추첨가격 3	170,878,500	1	추첨가격 4	174,940,600	0
추첨가격 5	172,013,700	1	추첨가격 6	172,785,900	1
추첨가격 7	176,457,200	0	추첨가격 8	178,793,800	2
추첨가격 9	173,297,000	3	추첨가격 10	170,700,900	3
추첨가격 11	177,883,200	3	추첨가격 12	169,560,400	1
추첨가격 13	169,053,700	1	추첨가격 14	173,930,700	1
추첨가격 15	177,110,100	1			
예정가격	174,046,550		기초금액	174,117,000	

- (원가계산 구분) 제조원가계산, 공사원가계산,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
 -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 등은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음
- 국가, 지자체 등의 출자·출연기관, 연구소, 산학협력단,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 회계법인
- (원가계산 비목)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작성
-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 가격 /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 가격 / 경비 : 소요량 × 단위당 가격
 - 일반관리비 및 이윤 : 일정률로 계상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세 비목 및 그 물량
 -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표준 품셈 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

□ 단위당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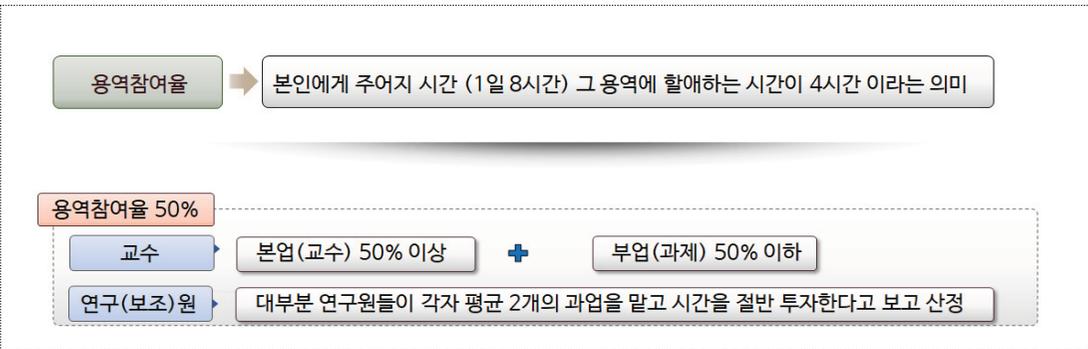
- 1) 거래실례가격(①,②,③)
- 2)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또는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정한 단위당 가격
- 3) 유사거래실례, 견적가격

□ 기획재정부에서 별도로 정한 단위당 가격(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622,585원
연구원	월 2,777,750원
연구보조원	월 1,856,832원
보조원	월 1,392,67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4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3년 3.6%)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주요 지정기관 및 단위당 조사·공표 가격 【「통계법」 제15조】

- 중소기업중앙회(연 2회) ‘제조업 노임단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연 1회)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연 2회) ‘건설업 노임단가’ 등

□ 원가계산 유형과 원가 비목 비교

	물품제조	학술연구용역	단순용역	시설공사
재료비	직접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 및 부산물			작업설 및 부산물
노무비	직접노무비	책임연구원	단순노무종사원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연구원	작업반장	간접노무비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전력비	여비	산재보험	전력비
	수도광열비	유인물비	국민연금	수도광열비
	운반비	전산처리비	건강보험	운반비
	감가상각비	시약연구용재료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계경비
	수리수선비	회의비	고용보험	연구개발비
	기술료	임차료	임금채권보장보험	품질관리비
	연구개발비	교통통신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가설비
경비	시험검사료	감가상각비	식비지원금	지급일차료
	지급일차료		교통비	보험료
	보험료		세력단련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교육비	안전관리비
	보관비		지방소득세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장애인고용분담금	환경보전비
	소모품비		기계장비감가상각비	보상비
	여비교통통신비		보증보험수수료	안전점검비
	세금과공과		재료비성 경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일반관리비	6 ~ 14%	6%	9%	5 ~ 6%
이윤	25%	10%	10%	15%
공사손해보험료				요율
제세액	제세액			

2. 일반용역 원가계산

□ (용역 원가계산)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과 기타용역의 원가계산으로 구분

① **학술연구용역**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작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② **기타용역** : 다른 법령 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의할 수 있음

□ 일반용역 원가계산 기준

구분	주요 기준
학술연구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기준
시설분야용역	공공부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관계부처 합동)」
소프트웨어용역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
폐기물처리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하 규정(환경부 고시)
기타용역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등 준용

(1)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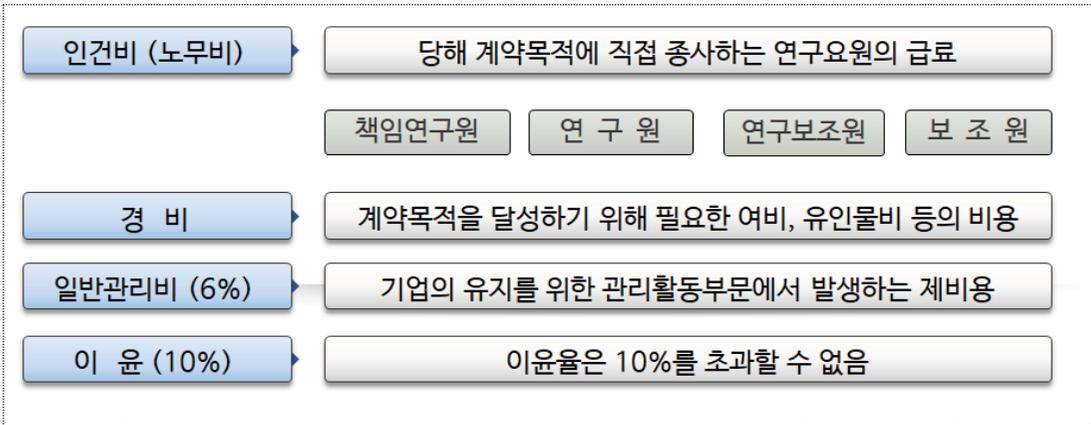
□ (학술연구용역)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자문형 용역으로 구분

① **위탁형 용역** :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고 용역결과보고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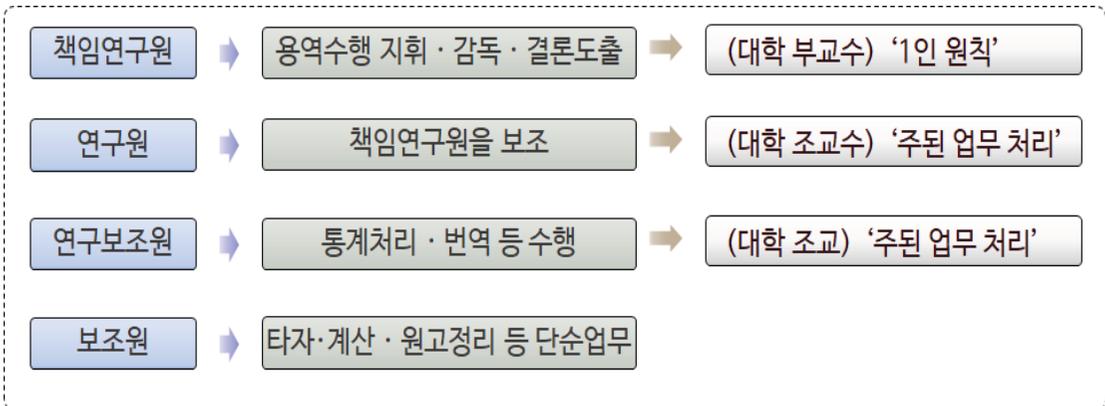
②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 수행

③ **자문형 용역** :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비목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등급)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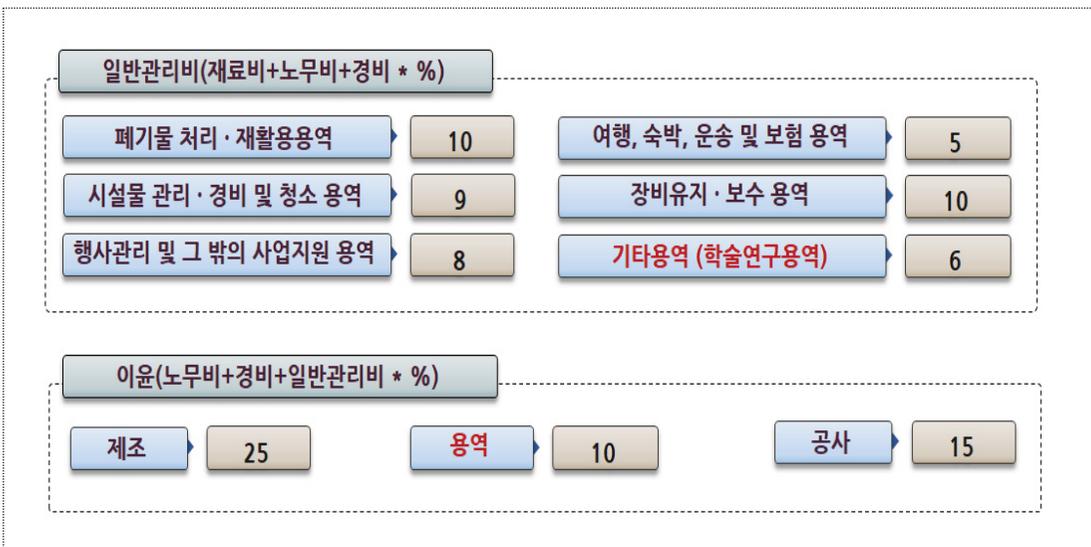


○ 경비 비목

항목	세 부 항 목	기타
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국내여비, 국외여비)	직접경비
유인물비	프린트, 인쇄, 복사비 (지대 포함)	
전산처리비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등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회의비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소요경비 (위원회 참석비 기준)	
임차료	특수실험실습기구, 공청회등 회의장 사용	
교통통신비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등	
감가상각비	당해 연구와 직접 관련된 유형고정자산	

○ 일반관리비 : 6%, 이윤 : 10%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6)%				
이윤 (10)%				
총원가				

*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한 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함

(2) 단순노무용역 원가계산(청소,검침,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인력지원용역)

□ (단순노무용역)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관계부처 합동)」의 예정가격 산출내역서 참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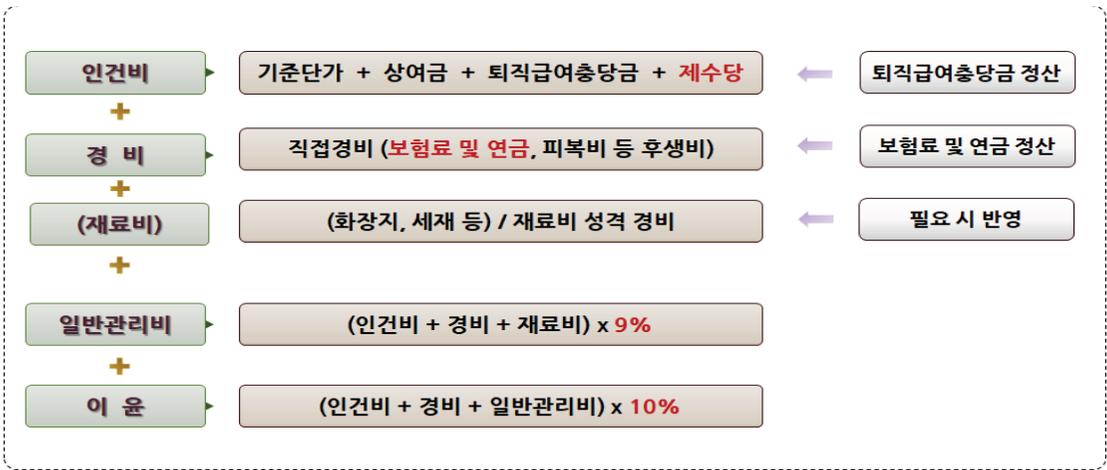
㉠ 인건비 단가 적용 기준 :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업 노인단가 적용

㉡ 2024년 노임단가(日) : 단순노무종사원 86,008원, 작업반장 128,038원

* 평균 조사노임(일급) : 1일 8시간 근무 기준 기본급 + 통상적수당 (위험, 생산장려, 자격, 가족, 근속 수당)(기타수당 제외 :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

㉢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반영

○ 단순노무용역 원가계산서



○ 단순노무용역 제수당 기준

구분	기준	비고
연차수당	15일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최대 26일 까지 가능)
야간근무 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8시간 초과 시 100% 가산)

○ (STEP1) 단순노무용역 제수당 산출(예시)

직급	일 평균임금(A)	연간 연차수당(B)	(연차수당)		사급(C)	(야간근로)		(휴일근로)	
			월 평균 연차수당	사급(C)		야간근로(월 4시간)	휴일근로(월 6시간)		
단순노무	81,196	2,111,096	175,925	10,150	60,900	91,350			
작업반장	119,345	3,102,970	258,581	14,918	89,508	134,262			
		A * 26일(최대)	B / 12	A / 8	C * 150% * 4시간	C * 150% * 6시간			

○ (STEP2) 단순노무용역 제수당 합계(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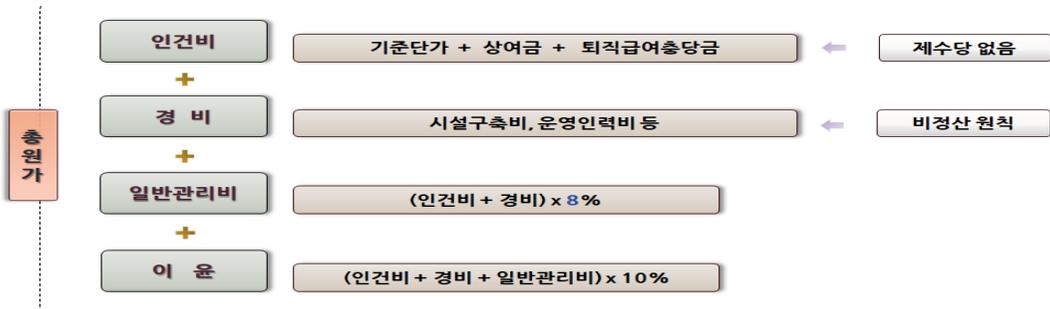
직급	월 연차수당	+	월 야간수당	+	월 휴일수당	=	제수당 합계(월)
단순노무	175,925		60,900		91,350		328,175
작업반장	258,581		89,508		134,262		482,351

○ (STEP3) 단순노무용역 인건비 합계(예시)

	기준단가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제조 노임 단가	+	400%까지 인정	+	1년 이상 근무자 연30일 인정		
직급	월 평균임금(A)	제수당(B)	상여금(C)	퇴직급여충당금	인건비 합계(월)	비고	
단순노무	2,111,096	328,175	703,699	261,914	3,404,884	월 26일 기준	
작업반장	3,102,970	482,351	1,034,323	384,970	5,004,614		
	월 노임단가 * 26일		A*400% / 12		(A+B+C) / 12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3) 전시 및 행사대행용역 원가계산(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기준 준용)



□ 전시 및 행사대행용역 주요경비

경비항목	세부 항목
시설구축비	대관료(임대료), 전기시설, 행사장조성, 사무국조성, 의전용품, 프로그램운영 등
운영인력비(외주인건비)	전문통역, 의전요원, 진행요원, 사회자 등
장비비	기계, 영상, 음향장비, 영상장비 등 (기사 포함)
홍보비	인쇄물, 싸인물, 광고비 등
보험비	행사 보험료
재료비	기념품, 상금 등
기타 등	개소식 행사 물품구입비,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등

(4) 소프트웨어사업 원가계산

- (소프트웨어사업 원가계산기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참조하여 작성
 - * 홈페이지(www.sw.or.kr/사업지원/사업대가)에서 대가산정 엑셀 템플릿 등 제공
- ㉠ (사업유형) 정보전략계획 수립, 소프트웨어개발, 소프트웨어유지관리 및 운영, 데이터베이스구축
- ㉡ (인건비 단가 적용 기준)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임금(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
 - ** 월평균임금은 일평균*근무일수(20.9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

(4-2)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추진 절차 및 검토 내용

절차	주요 내용	비고
1. 업무범위의 설정 ↓	○ 정보전략계획 수립 대상 업무를 정의 ○ 사업목적 및 범위를 고려하여 업무항목별 수행여부 식별	
2. 업무별 가중치 계산 ↓	○ 정보전략계획 업무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수행대상 업무에 대응하는 가중치를 합산하여 총업무 가중치를 계산	
3. 업무별 난이도 계산 ↓	○ 정보전략계획 수립업무에 포함된 대상업무 수행활동별 난이도 평가	
4. 컨설팅 업무량 계산 ↓	○ 업무별 가중치 및 난이도 결과를 이용하여 컨설팅 업무량 계산 * 컨설팅 업무량 = 정보전략계획 업무별 가중치 X 정보전략계획 수립 난이도	
5. 직접경비 ↓	○ 정보전략계획 수립사업과 관련된 직접경비 계산	
6.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계산	○ 계산된 컨설팅업무량을 이용하여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산출 *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 (컨설팅 업무량 X 단가)+직접경비	

□ 컨설팅 업무량 계산

○ 업무별 가중치 산출

업무		업무별 가중치	해당여부
환경분석	경영환경분석	3.5	
	정보기술 환경분석	3.7	○
	제도/규정 분석	2.0	○
현황분석	경영전략 분석	2.8	
	업무분석	6.1	○
	정보시스템 분석	6.1	○
	벤치마킹	2.5	○
목표모델 수립	차이분석	2.0	○
	정보화 전략 수립	3.3	○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5.0	○
	정보관리체계 수립	3.8	○
이행계획 수립	제도/규정 개선안 수립	2.5	○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3.8	○
세부계획 작성	소요예산 산출	3.5	○
	기대효과 산정	2.5	○
	제안요청서 작성	4.0	○
총 정보전략계획 수립 업무가중치 (각 업무별 가중치의 합)		57.1	50.8

○ 업무 난이도 내역

요 소	판 단 척 도						해당 프로젝트 난이도
	단 순		보 통		복 잡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업무규모	2개 이하 정부업무 대기능, 연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	0.7	3개~10개 이하의 정부업무 대기능 또는 연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	1.0	11개를 초과하는 정부업무 대기능 또는 연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	1.3	0.7
업무의 특성	참고 가능한 사례가 많거나 선행연구 실시	0.6	참고 가능한 사례가 있거나 유사 연구 있음	1.0	참고 가능한 사례나 연구 없음	1.4	1.0
기존 시스템	기존 시스템이 없음	0.7	기존 시스템 50% 활용 요구	1.0	기존 시스템 100% 활용 요구	1.3	1.0
ISP 유형 (ISP범위)	-	-	특정 개발 시스템 단위	1.0	전사 단위	1.4	1.0
정보자원 규모	ISP 분석 대상 시스템 1개~5개	0.6	ISP 분석 대상 시스템 6개~10개	1.0	ISP 분석 대상 시스템 11개이상	1.4	0.6

업무 난이도 계산
 = 업무규모(0.7) × 업무의 특성(1.0) × 기존시스템(1.0) × ISP 유형(1.0) × 정보자원 규모(0.6)
 = 0.42

컨설팅업무량 = 정보전략계획 수립 업무 가중치 × 정보전략계획 수립 난이도
 = 50.8 × 0.42
 = 21,336

☞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산출

업 무		업무별 가중치	해당 여부	총업무 가중치	업무 난이도	난이도 결정	난이도 계산
환경 분석	경영환경 분석	3.5		50.8	업무규모	0.7	0.42
	정보기술 환경분석	3.7	○			1.0	
	제도/규정 분석	2.0	○			1.3	
현황 분석	경영전략 분석	2.8			업무의 특성	0.6	
	업무 분석	6.1	○			1.0	
	정보시스템 분석	6.1	○			1.4	
	벤치마킹	2.5	○			1.4	
목표모 델수립	차이 분석	2.0	○		기존시스템	0.7	
	정보화 전략 수립	3.3	○			1.0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5.0	○			1.3	
	정보관리체계 수립	3.8	○	1.0			
이행계 획수립	제도/규정 개선안 수립	2.5	○	ISP유형 (ISP범위)	1.4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3.8	○		0.6		
	소요예산 산출	3.5	○		1.0		
세부계 획작성	기대효과 산정	2.5	○	정보자원규모	1.4		
	제안요청서 작성	4.0	○		1.4		
컨설팅업무량 계산				50.8 × 0.42 = 21,336			
ISP단가				9,363,897원			
직접경비				2,000,000원			
ISP 수립비 (부가세 별도)				21,336 × 9,363,897원 + 2,000,000원 = 201,788,106원			

* (ISP단가) 5개 직무(IT기술자, IT컨설턴트, SW아키텍트, Infrastructure아키텍트, 데이터 아키텍트)의 SW기술자 평균임금을 활용하여 도출(이후 평균인상률 누적 적용)

(4-3) 소프트웨어 개발비 대가 산정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방법	특징	산정 방법
기능점수(FP) 방식	소프트웨어 개발 규모와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소프트웨어개발비를 산정함	(기능점수×기능점수 단가×보정계수) +직접경비+이윤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과거의 유사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투입인력 정도를 기초로 한 경험적 판단에 의해 사업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기능점수방식의 적용이 곤란한 특정 사업 유형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투입공수 방법 적용가능 소프트웨어 유형에 대해서는 2.1.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참고	(투입인력수×투입기간 ×기술자직무별단가)+ 제경비+기술료+ 직접경비

※ 기능점수(FP) 방식에 의한 SW개발비 산정 시 기능점수 단가에 제경비 및 기술료 예상응하는 항목이 반영되어있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 기능점수(Function Point) 방식

○ 기능점수의 유형 식별

데이터기능	트랜잭션 기능
<p>내부논리파일(Internal Logical File(ILF)) 사용자 관점에서 식별 가능하고 논리적으로 연관된 하나의 데이터그룹 또는 제어정보로서 측정 대상 애플리케이션 내부유지파일</p> <p>*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유지되는 직원정보</p>	<p>외부입력(External Input(EI)) 애플리케이션 경계밖에서 들어오는 제어정보 처리 (등록·수정·삭제 등)</p> <p>* 급여지급일을 매월 17일에서 25일로 변경</p>
<p>외부연계파일(External Interface File(EIF)) 사용자 관점에서 식별 가능하고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는 오직 참조만 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유지되는 파일</p> <p>* 다른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유지되는 다른 부처(부서) 직원정보</p>	<p>외부출력(External Output(EO)) 수학적 계산, 공식 또는 파생 데이터를 포함, 내부논리파일을 유지하거나 시스템의 동작 변경을 수행</p> <p>* 사용자가 요구하는 계약방법에 따른 기관 및 기간별 구매실적</p>
	<p>외부조회(External Inquiry(EQ)) 데이터나 정보를 단순히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제공</p> <p>* 계약목록 조회, 기관별 조회</p>

○ 유형별 평균복잡도

유형	내부논리 파일(ILF)	외부연계 파일(EIF)	외부입력 (EI)	외부출력 (EO)	외부조회 (EQ)
평균복잡도 가중치	7.5	5.4	4.0	5.2	3.9

○ (보정전) 기능점수 산출

유형	기능점수		
	식별점수	평균가중치	최종점수
내부논리 파일(ILF)	2.0	7.5	15.0
외부연계 파일(EIF)	1.0	5.4	5.4
외부입력(EI)	16.0	4.0	64.0
외부출력(EO)	12.0	5.2	62.4
외부조회(EQ)	7.0	3.9	27.3
합계	38.0		175.0

○ 기능점수 보정

구분	산정방법
규모 보정계수	$= 0.4057 \times (\log_{10}(\text{기능점수})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시 1,2800, 3,000FP 초과시 1,1530을 적용한다.)

보정요인	난이도 수준	계수
연계복잡성 수준	1. 타기관 연계 없음	0.88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0.94
	3. 3~5개의 타 기관 연계	1.00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1.06
	5. 10개를 초과하는 타 기관 연계	1.12
성능 요구수준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	0.91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0.95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peak) 타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1.00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 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1.05
	5. 응답성능 요구사항이 엄격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성능 분석이 요구되거나, 설계 및 구현단계에서 성능분석도구가 사용된다	1.09
운영환경 호환성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0.94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0
	3. 유사한 운영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6
	4. 상이한 운영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13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여러 장소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1.19
보안성 수준	1. 암호화, 폼웨어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등 1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0.97
	2. 2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0
	3. 3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3
	4. 4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6
	5. 5가지이상의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8

○ 최종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총기능점수	기능점수당 단가	보정계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175	553,114	1.28	0.94	1.00	0.94	1.00	109,475,860
		이윤		25%			27,368,960
직접경비(보고서 인쇄, 여비 등)							1,000,000
합계							137,844,820
		부가세		10%			13,784,480
총계							151,629,300

□ 투입공수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비목	세비목 (참여인력)	계약기간 (a)(月)	인원 (b)	투입률 (c)	노임(日)	노임(月)(d) (20.6日)	금액 (e=a×b×c×d)	구성비	비고
직접인건비 [SW기술]	IT기획자	3	1	100%	419,656	8,644,914	25,934,741	4.4%	
	IT컨설턴트	3	1	25%	476,007	9,805,744	7,354,308	1.3%	
	업무분석자	3	1	50%	544,971	11,226,403	16,839,604	2.9%	
	데이터분석자	3	1	50%	347,476	7,158,006	10,737,008	1.8%	
	IT PM	3	1	100%	463,265	9,543,259	28,629,777	4.9%	
	IT 아키텍트	3	1	50%	518,084	10,672,530	16,008,796	2.7%	
	응용SW개발자	3	2	75%	311,962	6,426,417	28,918,877	4.9%	
	시스템SW개발자	3	2	75%	247,530	5,100,354	22,951,593	3.9%	
	IT 지원기술자	3	2	75%	190,219	3,918,511	17,633,301	3.0%	
	IT 테스터	3	3	75%	208,959	4,304,555	29,055,749	4.9%	
	소계			15				204,063,755	34.7%
직접경비							-	0.0%	
재경비 (140%)							285,689,256	48.6%	(직접인건비)×(140%-100%)
기술료 (20%)							97,950,602	16.7%	(직접인건비+재경비)×(20%-40%)
총원가							587,703,613	100.0%	
부가세 (10%)							58,770,361		
합계							646,473,974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㉞ 응용 소프트웨어(요율제 유지관리)

개발비	×	유지관리요율 (10~15%)	+	직접경비
* 개발비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계약시점 기준으로 재 산정된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방식 등 적용)				
* 유지관리요율 : $10 + [5 \times (TMP / 100)]$ / TMP : 유지관리 난이도 (0~100), 유지관리 횟수, 사용자수 등 고려				

㉟ 상용 소프트웨어

최초 Licence 구매금액	×	유지관리요율 (12~20%)
* 유지관리요율 : 유지관리범위 및 난이도에 따라 적용		

※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최초제품 구매금액×서비스요율(발주기관 계약자가 상호 협의)

㊱ 소프트웨어 운영비(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40%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

㉞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 혼합

고정비 (투입공수)	+	변동비 (기능점수)	+	직접경비
* 고정비 : 적용 및 수리 유지관리, 일상운영 및 지원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변동비 : 완전유지관리 (기능점수 × 기능점수당 단가 × 보정계수) × 이윤(25% 이내)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직접인건비

+

제경비

+

이윤

+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 '가'급(학술연구용역 연구원), '나'급(연구보조원), '다'급(보조원) 임금 적용 / 상여금 등 반영 필요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76% 이내

* 이윤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10% 이하

* 직접경비 : 장비사용료, 소프트웨어사용료, 여비, 특수자료비, 자료조사비, 인쇄비 등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기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따라 특별시 등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원가계산

㉡ 직접노무비 :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 기본급 및 상여금 : 기본급은 대한건설협회 발표 보통인부 노임단가,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400% 범위 내에서 적용

** 제수당 :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 청소차량 상차원 및 운전원에게 환경미화수당 월 150,000원 적용, 1종대형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수당 월 200,000원)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간접노무비 :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차량 정비공 등 직접노무비(미화원, 운전원) 이외의 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조달청 시설공무원가계산간접공사비(제비율)적용기준」 적용 (직접계산도 가능)

(예시 : 토목공사 / 50억원 미만 / 12개월 이상 기준 : 13% 적용)

㉣ 경비 : 전력비,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유류비, 세금과 공과여비·교통비·통신비, 기타 법정경비 등

㉞ 일반관리비 : 10% 이내

* 현장직원이 아닌 행정적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 등 관리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용

㉟ 이윤 : 10% 이내

3. 정산실무

□ (정산)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정밀하게 계산한 금액으로 확정

○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 결정(확정)

* 국가계약법 제8조의 2(예정가격의 작성) / 지방계약법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 (대상) 확정계약이 원칙으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개산계약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개산계약

□ (종류) ① 개발시제품 제조계약, ②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③ 공공기관과의 위탁 또는 대행 계약, ④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 계약

※ ① ~ 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

□ (절차) 미리 개산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정산

* 국가계약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70조 / 지방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86조

※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 기간 등으로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절차) 입찰 전에 사후원가 비목(대상 및 범위)을 확정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정산

※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 기간 등으로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예시) 행사대행용역은 총액확정계약이므로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에 사후정산을 요구하거나, 사후정산을 위하여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요청할 수 없음

*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 다만, 사후정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비항목이 있는 경우(별표 2) 입찰공고 등에 사후정산 사실을 명시하고 정산항목 및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별표 2]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경비세항목	정산여부	사유
대관비, 행사장 전시 및 무대설치비, 시스템 및 기자재 대여비, 회의비, 출장비, 현장사무국 운영비, 인쇄(제작)비, 홍보비, 수송비, 보험비, 초청연사사례비, 상금, 식·음료비, 행사기념품, 공연비, 현장인력인건비	불가	사전확정 가능
항공료, 숙박료	가능	· 가격변동은 정산으로 처리 · 항공권, 객실 수는 수정계약

(3)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① 물품 제조 계약 및 용역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② 단순노무용역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 (절차) ①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 ② 입찰공고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명시, ③ 입찰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 ④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

※ 입찰공고 시 보험료 계상, 사후정산 관련 사항 등을 안내

□ (예시) 보험료 계상 및 입찰공고 명시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포함) 산정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303,822원	409,341원	25,855원	758,040원

*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적용예외) 단순노무용역 :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반영 가능(조정하여 반영)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 제3호 단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다. 3)

- (공고예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 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출내역서) 원가 분야에 드는 비용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각 비목별로 나누어 작성한 문서

㉠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 (용역입찰유의서)

- ㉔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
- ㉕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대가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

□ 정산절차

- ① 입찰공고 등의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
- ② 사업자 부담 분의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건강 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
- ㉗ 일용직근로자 :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금액
- ㉘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 :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
- ③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산출내역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

□ 정산 관련 유의·협조 사항(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164호, 2018.8.8.)

(사후정산 대상) 국가계약에 있어 사후정산은 ① 개산계약, ②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사후정산특수조건부 계약 포함), ③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만 가능함

(사전공개) 입찰 전(예 :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등) 사후정산 여부, 정산대상 및 정산기준, 절차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적용 대상) 입찰 전에 금액을 결정하지 못하는 비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사전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비목은 사후원가검토 대상 비목에서 제외하여야 함

□ 부당한 사후정산 사례

- ① 입찰 후 정산조건 적용 요구
- ㉗ 입찰 전 입찰공고 등에서 정산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기술협상과정에서 사후정산을 특수조건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 계약자로서의 지위가 불확실한 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를 거절하기 곤란하여 요구 수용

㉞ 확정된 과업의 이행과정에서 사용한 물품을 검사·검수하고 대금지급까지 완료한 후 인터넷 최저가금액 또는 실제 구매금액으로 정산할 것을 요구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사후정산 특수조건부 계약 포함)은 **입찰 전에 적용대상, 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함

② 부당한 이윤 및 일반관리비율

㉟ 사전에 확정 가능한 과업내용을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설명회 또는 낙찰자 선정 시점에서 과업을 추가반영**하면서 해당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비용만큼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 감액하여 산출내역서 수정 요구

▶ 발주기관이 추가과업 요구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용역 전체비목에 대한 사후원가 검토

㊱ 입찰공고서에서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임을 명시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체 용역예산에 대하여 사후원가검토 및 정산을 실시하여 **사실상 개산계약으로 운영**

▶ 개산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3조제1항 각호*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그 외의 경우 적용 금지

*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의 위탁 또는 대행계약,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

④ 대가 없는 과업수행(협찬) 요구

㊲ 과업수행을 위해 실제 집행한 식음료 비용을 계약업체가 협찬하는 것으로 대체 하고 식음료 금액을 0원으로 정산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식음료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계약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⑤ 과업수행업체는 행사 종료 후 행사비용 증빙을 (발주처)에 제출하고, 그 사후 정산 결과에 따라 정산금액을 지급받고, 정산 후 미사용 금액은 발주처에 반환하며 정산범위는 계약금액으로 함
- ⑥ 행사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과업수행자는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에 의거하여 용역계약금액을 실비 정산하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⑦ 용역사업의 대가 지급은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며, 최종 용역금액은 사후정산 후 확정된 금액으로 집행 사업비는 ... 사업종료 후 2주 이내 실비정산(완료보고 포함)하여 잔금 지급
- ⑧ 모든 경비는 사후정산 대상이며 공인된 회계 법인을 통해 적법하게 정산하여야 함
- ⑨ 계약업체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원가계산 업체에 모든 서류를 제공하고 원가계산을 받은 후 최종 정산서를 용역수행 완료일 이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⑩ 용역사업자는 최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시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 ⑪ 회계감사기관은 발주처에서 선정하고 회계감사비용은 행사 용역비에서 지출
- ⑫ 최종용역금액은 사후정산 후 확정 된 금액으로 집행한다.
- ⑬ 과업수행자는 행사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을 받은 후 최종 정산서를 제출
- ⑭ 과업수행자가 행사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최종 정산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최종 정산액의 2/100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 지연일수마다 일정금액을 과징금으로 계산하여 동 과징금을 과업수행자에 대한 최종 정산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⑮ 계약체결업체는 계약 종료일 이내에 회계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은 후 최종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⑩ 계약체결업체가 계약 종료일까지 최종 정산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 기간 중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발주처)는 지체상금으로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최종 정산액에서 공제 함
- ⑪ 정산내역서 제출에 따른 용역대가의 정산은 발주자가 지정한 회계기관의 사후 검증 절차를 거쳐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회계기관의 사후 검증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⑫ 사업비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 ⑬ 사후원가정산 시 사후원가 검토 용역비는 '을'이 지급한다.



이론에서 실무까지 알기 쉽게 풀이한

대한민국 조달제도 기본서

협상계약



- 해당 교재(대한민국 조달제도 기본서)는 조달전문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재배포, 2차 변형, 상업적 이용 등)하는 것을 금지 합니다.
- 또한, 이 책자를 저작권자[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허가 없이 불법복제·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교육 등의 이용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위반 시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아울러, 해당 책자는 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조달청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상기 책자가 민원 및 소송 등의 자료로는 활용될 수 없고, 교육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NFORMATION

- 1. 협상계약일반 179
- 2. 협상계약 공고서 작성 205

1

협상계약일반

| 담당교수 | 김 공 진

Public Procurement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공공조달역량개발원

INFORMATION

제1절 개 요

1. 의의 183
2. 근거 법령 184
3. 협상계약 적용대상 판단기준 185
4. 협상계약 절차 186

제2절 입찰공고 및 제안서

1. 입찰공고 187
2.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 접수 188
3.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189

제3절 기술(제안서) 평가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준 191
2. 행정안전부 예규 기준 194

제4절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통지 198
2. 협상 199
3. 협상종료 203
4. 계약체결 203

제 1 절 개 요

1] 의의

- 협상에 의한 계약(이하 ‘협상계약제’라 한다.)은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Contracting by Negotiation) 방식과 유사한 제도로써 기존의 낙찰자 결정방식으로는 첨단 과학기술이나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사업에 대한 구매시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낙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 협상에 의한 계약(Contracting by Negotiation)

미국 등 선진조달국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는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최고 가치(Best Value)²⁾’ 구매 실현에 적합한 제도이다. 하나, 우리나라의 협상계약제는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이들 국가들의 협상계약제와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

- 협상계약제는 통상의 계약방법(낙찰자선정방식)과 달리 제안 제품이나 용역의 기술·품질의 차이나 변별력을 전제로 기술·품질의 변별력에 있는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여러 면에서 통상의 방식과 차이가 있다. 즉, 통상의 낙찰자 결정방식은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낙찰자선정 또는 적격심사 등을 통하여 낙찰자 선정을 하는 것이라면 협상계약제에서는 입찰가격의 저가 순위는 낙찰자결정과 무관하다 할 수 있다.
 - 특히 협상계약제는 확정가계약(fixed price)으로 계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기술제안서 평가점수 비율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기술제안 평가점수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술 우위에 있는 업체를 변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따라서,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제안서 평가 절차(특히, 시간적 제약), 사후 계약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연구를 통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2) Best Value 구매란 기술이나 품질의 수준에 맞는 적정비용(reasonable price)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정 수준이상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금액(예정가격 이하)을 확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기술)에 대하여는 고비용을, 저품질에 대하여는 저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다.

2] 근거 법령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

- 물품·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에는 적용사유에 “창의성”이 추가됨

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우선적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의2,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4조]

-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업 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①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③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 ④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 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 ⑥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 콘텐츠산업
- ⑦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 ⑧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방계약법시행령에는 적용대상에 “예술성·창작성등이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설치하는 사업”이 추가되고, ‘해당 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다. 예규 및 조달청 훈령(지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이하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이라 함)

③ 협상계약 적용대상 판단기준

가. 협상계약 적용 대상

- 1)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하고 **규격이 비확정된 물품 제조 계약**
- 2) 적격심사가 가능한 **학술연구용역 및 소프트웨어용역** 협상계약 적용 가능
-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의 협상계약 요소가 강함
- 3) 적격심사 대상이 아닌 ‘보험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용역 적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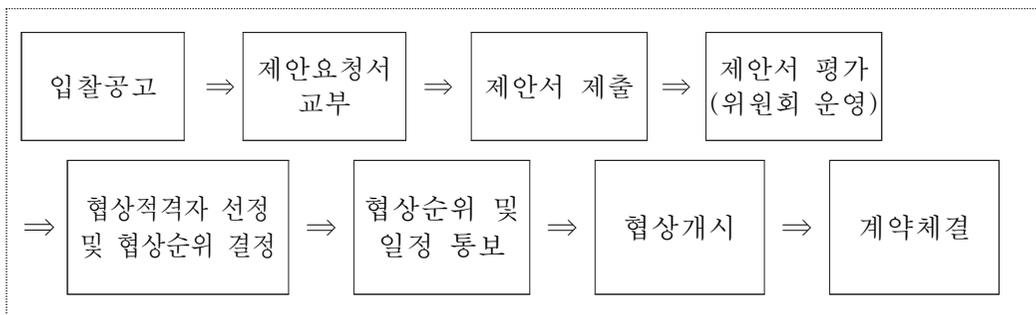
나. 협상계약 적용 제외 대상

- 1)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은 협상계약 제외
- 소액으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협상 여지가 적음
→ 수요기관이 협상계약을 원할 경우 **수요기관 자체 평가 실시**
- 2)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하는 **물품 구매입찰**
-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요소 및 협상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어 협상계약 적용 배제
- 3)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하나 **규격이 확정된 물품 제조입찰**
- 협상계약의 실익이 없는 규격이 확정된 발전기, 엘리베이터 등
- 4) 적격심사가 가능한 용역 중에서 **시설분야용역**(청소·경비·관리), **폐기물 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 단순 인력 투입 등으로 전문성·창의성 등 요소 미약하여 협상계약 적용 배제
- 5) 적격심사를 하지 않는 기타 용역 중에서 ‘**보험서비스**’ 용역
- ‘일반경쟁에 의한 최저가 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다. 협상계약의 우선 적용 대상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 소프트웨어사업 등 소프트웨어용역 같은 지식기반사업에 대하여는 협상계약제를 우선 적용하여 동 방식으로 체결
 -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협상계약 절차



제 2 절 입찰공고 및 제안서

1 입찰공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공고기간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10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 입찰공고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고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 ①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 ② 당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 ③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 ④ 제안서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 및 일시
- 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 ⑥ 제안서의 제출기간
- ⑦ 제안서의 내용
- ⑧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 그 사유 포함)
- ⑨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입찰공고하여야 한다. [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7조의2] (이하 “구매업무처리규정”이라 함)

※ 입찰공고 전 규격검토 및 공개[구매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21조]

- 조달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구매규격을 검토한 후 규격공개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 협상계약 우선적용 대상 여부
 -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기타 협상계약절차에 관한 사항
 - 기타 구매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정한 사항
- 규격검토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구매규격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 접수

가. 제안요청서 교부 및 설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상기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입찰공고에 사업내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할 수 있다.

나. 제안요청서 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 제5항]

- 제안요청서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 ① 과업내용
- ② 요구사항
- ③ 계약조건
- ④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 ⑤ 제안서의 규격
- ⑥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제안서 등의 제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7조]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류 일체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제출여부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한다.
- 제안서 접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와 일시에 평가집행자가 한다.
- 평가집행자는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도달하지 못한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 조달청에서 제안서 기술평가를 대행할 경우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는 평가를 종료한 후 수요기관에 인계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입찰가격 개봉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평가서류 보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상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5항 및 6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의한 제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상기 위원회는 소속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운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7항 내지 9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위원회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 다만,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한서 평가결과에 개인의 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 3 절 기술(제안서) 평가

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가.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다.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분 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식능력 • 인력·조직·관리기술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수행실적 • 재무구조·경영상태 • 상호협력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7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평가		30	

※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 가능

주4) 계약의 유형별 배점한도 <신설 2024.9.13>

구분	전문성·기술성 정도	배점범위(기술:가격)
기술강조형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경우	기술평가점수 최대 90점 (90:10)
기술·가격균형형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경우	(80:20~60:40)
가격중시형	전문성·기술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기술평가점수 최대 50점 (50:50)

나. 평가 항목 및 배점 조정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입찰가격 평점 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 당해 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right)$$

$$+ \left[2 \times \left(\frac{\text{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text{당해 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text{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right)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 해당 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경찰·해양경찰·

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제조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에서 반올림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라. 기술능력 평가방법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 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행정안전부 예규 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신인도 ▪ 용역근로자보호지침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가 분야	용역 ·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 평점산식 : 아래

주1)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 등과 창의성·기술성·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주3) 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주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주5)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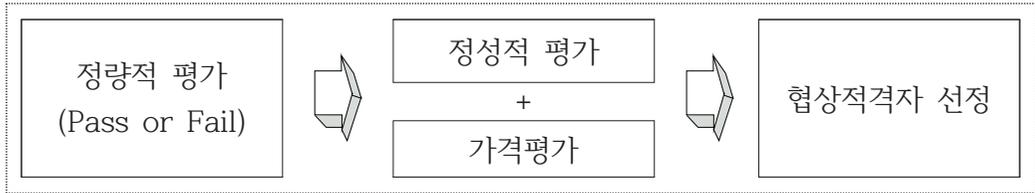
나. 평가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1>, <별표 2>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 보완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 평가요령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2)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 3)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 (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 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6)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동시에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발표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7) 계약담당자는 디자인사업·설계, 행사기획·운영 등 해당사업의 특성상 기술능력 위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정량적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 8) 기본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1)”부터 “5)”까지를 준용한다.

<별표 2> 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배점
1차 평가	정량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경험(실적) ▪ 기술인력 보유 ▪ 경영상태 ▪ 신인도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 그밖에 필요한 사항 	Pass or Fail
2차 평가	정성적 평가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80
	입찰가격 평가			20
	계			100

- 주) 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정량적 평가는 적절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을 정해야 한다.
3.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별표 1>의 “주2)”를 적용한다.
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5.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 4 절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통지

가. 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의2]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협상적격자 선정[행안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협상순위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

-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15항>

[시행 2023. 5. 15.] [조달청지침 제134호, 2023. 5. 4., 일부개정]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라.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

-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② 협 상**가. 협상순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협상기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의 경우 10일 범위내에서 조정)
- 다만, 상기 협상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 협상범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1. 협상의 내용과 범위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3조의2]

- ① 수요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안서평가 결과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될 경우에는 <서식 A>, 불성립될 경우에는 <서식 B>에 따라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수요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장 이유와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수요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상을 실시한 결과「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1조에 따라 제안서의 내용이 조정된 경우에는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협상이 불성립될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단, 협상이 불성립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속 업무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서식 A]

제안서 협상 결과 통보서(성립)

- 구매관리번호 : _____
- 수요 기관 : _____
- 사업 명 : _____
- 협상 일시 : 20
- 예정 가격 : _____ 원
- 입찰 금액 : _____ 원
- 가감 조정액 : _____ 원
- 협상 결과

당초 제안 내용	제안요청서 해당 내용	협상내용		협상대상사 검토의견	가감 조정액
		발의자	내용		
합계					원

※ 협상결과 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조달청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협상하였음을 확인하고 협상결과를 계약의 일부로 하는데 동의함.

상 호 :

대표자 : (인)

붙임 : 제안서 가감 조정액 산출 근거 1부.

[서식 B]

제안서 협상 결과 통보서(불성립)

- 구매관리번호 : _____
- 수 요 기 관 : _____
- 사 업 명 : _____
- 협 상 일 시 : 20
- 예 정 가 격 : _____ 원
- 입찰 금액 : _____ 원
- 가감 조정액 : _____ 원
- 협상 불성립 사유 : _____

당초 제안 내용	제안요청서 해당 내용	협상 내용 (발의자)	협상대상자 검토의견		비고
			검토 의견	조정 요구액	
합계				원	

상 호 :

대표자 : (인)

붙임 :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제안서 가감 조정액 산출 근거 1부.

라. 가격협상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
-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전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3 협상종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 및 제15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지자체의 경우 협상대상자에게만 통보)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제3항]

4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5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대상자에게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계약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2

협상계약 공고서 작성

| 담당교수 | 조 용 만

Public Procurement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공공조달역량개발원

INFORMATION

1. 입찰공고 개요	209
2. 입찰집행	218

1. 입찰공고 개요

〔국가계약법 제8조, 지방계약법 제10조
국가계약령 및 지방계약령 제33조, 제35조, 제36조
구매업무처리규정 제32조 제1항, 지방계약규칙 제36조〕

□ 의의

- 구매(계약)대상 목적물에 대한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입찰예정자들에게 알리는 행위. 이를 통해 자격이 있는 다수의 입찰자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경쟁성을 제고하고 경제적인 구매 실현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1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있어 입찰공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계약 법규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계약법규들은 대부분이 강행법규가 아닌 내부 절차법적인 임의규정으로서 그 규정들 자체로 입찰자나 계약자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공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비로써 입찰자(낙찰후에는 계약자)들을 규율하고 효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관계 계약법규정과 조항들을 모두 반영하여 입찰공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법규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낙찰자선정방법 및 기준, 계약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필요시) 등 중요사항을 입찰공고서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입찰자나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들은 모두 입찰공고서에 첨부하여 이를 숙지하고 동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입찰 공고 방법

[국가계약령 제33조, 지방계약령 제33조]

-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지방계약령 제33조 제1항 단서]
- 국가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입찰공고하지 않고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입찰공고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국가계약령 제34조]

□ 입찰 공고 시기

[국가계약령 제35조, 지방계약령 제35조]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공고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단축 공고³⁾할 수 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령 제35조제5항]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① 긴급을 요하는 경우
 - ②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지방계약령 제35조제5항 및 6항

- 2단계 경쟁입찰(규격 또는 기술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령 제35조 제5항]
 - ①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10일
 - ②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20일
 - ③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40일
- 위 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지방계약령 제35조 제6항]

3) 단축공고 사유(국가계약령 제35조제4항) : 재공고 입찰의 경우,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입찰공고시기 계산 예시>

-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5월 30일인 경우, 동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공휴일 여부와 무관)인 5월 29일을 기산일로 역으로 계산하여 7일째가 되는 날인 5월 23일이 말일이 되고 그날의 오전 0시를 기하여 기간이 만료되므로 늦어도 5월 22일 24:00까지는 공고되어야 한다.
- ② 긴급 또는 재공고의 경우는 5월 24일 24:00까지는 공고되어야 한다.

○ 입찰공고시에는 다음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고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시기 결정시 고려사항>

- ① 상기 입찰공고 기간
- ② 나라장터 게재에 소요되는 기간
- ③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금액 조사에 필요한 기간
- ④ 규격입찰서 작성에 필요한 기간(2단계, 규격.가격분리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시)
- ⑤ 적격심사기준 열람기간(적격심사입찰시)
- ⑥ 기타 납기 등 입찰공고시기 결정에 관련되는 사항

○ 정정(변경)공고의 경우

-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령 제33조제2항]

-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령 제33조제2항]

○ 위 공고 시기는 국가보안유지를 위하여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입찰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국가계약령 및 지방계약령 제34조]

□ 입찰공고

[국가계약령 및 지방계약령 제36조]

-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별로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일부분이 다르게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입찰공고 시에 공통 사항에 대하여는 다 명시하되, 낙찰자 결정방식이나 계약대상 목적물의 특성이나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의 규정들을 참고하여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 [구매업무처리규정 제32조제3항]>

-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②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③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④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⑤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
- ⑥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⑦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⑧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⑨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이행방식
- ⑩ 청렴계약제 시행에 관한 사항
- ⑪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⑫ 중소기업자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련된 사항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 [국가계약령 제36조]>

-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②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③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 ④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⑤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 ⑥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⑦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
- ⑧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⑨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⑩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⑪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⑫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⑬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⑭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전자입찰)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 ⑮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⑯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⑰ 적절한 거래실례가격이 없이 원가계산 예정가격 결정시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 ⑱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 [지방계약령 제36조]>

-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②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③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④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 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⑥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
- ⑦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 ⑧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⑨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⑩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⑪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⑫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⑬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전자입찰)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⑭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⑮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 ⑯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⑰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 ⑱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⑲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 ⑳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입찰공고문과 첨부문서의 내용 상이 시 해석기준>

입찰공고 내용과 첨부된 당해 물품시방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기준한다. [질의회신, 회계 125-3685, '83.12.20]

- 상기 사항이외에도 각 낙찰자 결정방법의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에 추가 반영(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2조]

- ① 낙찰자 결정방법
- ②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사항(열람장소 및 안내 전화번호 등)
- ③ 심사에 필요한 서류(적격심사세부심사기준 참조)
- ④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2) 2단계 경쟁(규격·가격동시) 입찰시

- ① 낙찰자 결정방법
- ② 규격(기술)입찰서 적격자 선정방법 및 기준
- ③ 규격(기술)입찰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종합낙찰제 입찰시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5조]

- ① 해당제품의 구매 또는 제조계약을 종합낙찰제에 따라 집행한다는 내용
- ②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제품의 경우
 - 가) 해당제품의 에너지 소모비 산정에 필요한 이자율 및 내용연수
 - 나) 상기 “마. 조달요청서 검토”항에서 물품별 에너지 소모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동 운용기준 [별표 1])
- ③ 환경우월성기준 적용제품의 경우
 - 가) 종합평가 점수 산정방법
 - 나) 동 운용기준 [별표 2]의 사항
- ④ 환경우월성기준 확대적용제품의 경우
 - 가) 종합평가 점수 산정방법
 - 나) 동 운용기준 [별표 3]의 사항
-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희망수량경쟁 입찰시 [국가계약규칙 제20조]

- ①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이라는 사항
- ②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입찰수량 및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시 [국가계약령 제43조제2항, 협상계약체결기준 제4조]

- ① 제안요청서를 첨부
- ②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 ③ 해당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
- ④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 ⑤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화상 방식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일시에 관한 사항
- 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 ⑦ 제안서의 제출기간
- ⑧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
- ⑨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평가점수 부여기준
- ⑩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적정성 평가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
- ⑪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의 경우 해당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일시에 관한 사항
- ⑫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입찰 변경 공고

[국가계약령 및 지방계약령 제33조]

-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정정(변경) 공고할 수 있다.
[국가계약령 및 지방 계약령 제33조제2항]
-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입찰 연기 공고(또는 입찰참가 연기통지) 할 수 있다. [물품입찰유의서 제14조]
 -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설명을 요구하고 그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입찰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 입찰변경(정정) 공고나 연기공고시에는 그 사유와 함께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입찰 관련 서류작성·비치·열람**

[국가계약령 제16조제1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 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입찰에 관한 서류 예시 [물품(제조)입찰유의서 제4조]>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입찰에 관한 서류 예시 [국가계약규칙 제41조]>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입찰서(소정서식) 및 계약서(소정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5.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 기준을 포함한다)
6.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7.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 지시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적격심사 낙찰제인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를 비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기 관련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3조]
 - ① 세부심사기준
 - ②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③ 기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
-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입찰에 관한 서류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2. 입찰집행

□ 의의

- 정부계약도 정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민법상의 계약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법상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의 합치로 이루어 진다.
- 따라서, 입찰은 계약성립의 요건 중 '청약(Offer)', 즉 계약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을 희망하는 자가 입찰공고 조건에 동의하고 그 내용대로 계약이행하는 경우 입찰금액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있다.(계약의 성립요건인 승낙의 의사표시는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 다만, 정부계약은 통상의 사인간의 계약과는 달리 계약당사자 일방이 국가(정부)이고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집행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입찰 공고서에 규정(명시)된 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입찰참가 신청 (국가계약규칙 제40조 물품입찰유의서 제3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까지 다음 각호의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하여 다음 각호의 입찰참가신청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 다만, 사전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서 경쟁 입찰참가신청에 갈음한다.
- 입찰참가 신청기한
 -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국가계약규칙 제40조제4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국가계약규칙 제40조제2항]

□ 입찰보증금 납부 (국가계약령 제37조 국가계약규칙 제43조 물품입찰유의서 제6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조달청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 각서로 대체하고 있다.

□ 입찰 절차 }

 국가계약령 제37조
 국가계약규칙 제43조
 물품입찰유의서 제6조

가. 입찰참가 [물품입찰유의서 제7조]

-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나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대리인의 자격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하여 임직원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 직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계약법규에 특별한 제한이나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시나 입찰참가신청시에 대리인으로 등록하였으면 그 대리인이 입찰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민법상 대리권의 법리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입찰에 대리 참가가 가능하다.
 - 위임장(또는 입찰참가등록증이나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대리인이 참석하였는지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 ※ 위임장에는 위임범위(해당 입찰공고명이나 공고번호 등)가 명시되어야 하고 날인한 인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을 확인한다.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나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물품입찰유의서 제7조제4항,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물품입찰유의서 제3조의2]

- 국가계약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4항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한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실적제한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과 같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적을 인정(지방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는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 작성 [물품입찰유의서 제8조]

(1) 작성서식

-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찰금액표시

-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사용언어 및 통화

-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4) 기명날인

-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 포함)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사용인감 변경은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사용인감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회계통첩, 회계 45101-1303, '95.8.9.]
-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5)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물품입찰유의서 제10조]

라. 입찰서 제출 } 국가계약령 제39조 제1항부터 3항
물품입찰유의서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35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4조

(1) 일반입찰(직접 입찰 및 우편 입찰)

- 입찰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이 원칙이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① 국제입찰 대상 계약인 경우
 - ②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입찰서는 봉합하여 입찰자 1인이 1통만 제출토록 한다.
 - 입찰집행 시 규격설명이 필요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규격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공고서에서 지정한 우편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 있다.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 우편으로 접수된 입찰서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입찰집행관은 입찰집행에 앞서 운영지원과(서무)에 우편입찰서 접수(입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여부를 확인하고
 - 우편입찰서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응찰자에게 발표하고 입찰함에 먼저 투합한 후 응찰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입찰함에 투합하게 한다.
 - 이 경우 규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은 규격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전자입찰이 원칙). [국가계약령 제39조제1항]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외에 각종양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전자입찰 참가방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 전자입찰자는 지문보안토크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전자입찰자는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지문인증 후에는 일정시간 동안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입찰은 제외한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증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폐지될 예정으로 2024년 1월 1일 부터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전자입찰을 허용하고 있음.

* 입찰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전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면 예외적용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전자입찰에 참가 가능
(예외적용 신청 후 사업자용인증서 + 개인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마. 입찰서 취소 등 {

 국가계약령 제39조 제3항
 물품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

-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능하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로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 취소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입찰자의 전자입찰을 취소하고, 해당 전자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개찰 {

 국가계약령 제40조
 국가계약규칙 제48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

-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입찰집행관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우편입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접수현황도 함께 발표한다)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가할 수 있다.
 -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사. 경쟁입찰의 성립

[국가계약령 제11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1조]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 따라서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하였을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자 또는 무효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있어 유효입찰이 1인인 경우에는 경쟁은 성립되지 않는다.

□ 입찰 무효 } 국가계약령 제39조 제4항
국가계약규칙 제44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

가. 입찰 무효 사유 [국가계약규칙 제44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의 무효사유>

-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①의2 . 영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 ②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③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④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1인이 수개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
- 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 ⑥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⑦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제안요청서 설명”이라 함)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입찰
- ⑧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⑨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⑩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⑪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 담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및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행위

- ⑫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
- ⑬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⑭ 종합낙찰제로 집행하는 입찰인 경우에 품질 등의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 ⑮ 입찰유 의서 제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리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 ⑯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 입찰자가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것은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회신, 회제 45107-870, '93.8.17]

나. 입찰무효 이유 표시 [국가계약규칙 제45조]

-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 입찰서의 유·무효에 대한 회계질의 회신(발췌)

- 입찰무효사유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 질의하여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물품구매와 관련되거나 공사일지라도 물품구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를 요약하였음.

① 낙찰자가 부정당업자인 경우 [회계 45101 417, '96.3.7]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중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이 되어 무효가 되는 것임.

② 대표자가 변경된 후에 종전 대표자명의 입찰은 무효 [회제 41301-1653. '98. 6. 23]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때에는 입찰참가등록일 당시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수행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될 것이므로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후에도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수행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서 무효에 해당될 것인 바,
-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법인인감증명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참고로 낙찰자로 선언된 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임.

③ 위임장상의 입찰건명 오기 [회제 125-2052, '85.7.27]

입찰자의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상의 입찰건명이 당해입찰건명과 다른 경우에는 동 대리인은 당해 입찰에 있어서의 정당한 대리인으로 볼 수 없는바 “대리권이 없는 입찰”에 해당되어 당해입찰은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

④ 낙찰선언후 위임장 제출[회제 1210-2286, '80.12.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인 바, 동 “대리권”이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리인의 입찰행위가 본인(입찰참가자)을 위한 대리행위임이 명백하고, 입찰집행관이 이를 인정하여 낙찰선언한 후 그 위임장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동 대리인의 입찰행위를 무효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⑤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회제 125-3982, '86.10.29]

-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무효이므로 2인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그중 1인이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당해 입찰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함.

⑥ 1원입찰의 유효여부 [회계 2210-3579, '86.9.23]

국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1원 입찰은 유효하다.

※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0원 입찰도 유효하다.(안건번호 07-0353, 회신일자 2007.11.28.)

⑦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금액기재 착오는 유효 [회계 41301-818, '98.4.28]

국가기관이 시행한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동 문서에 면제받은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의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로는 볼 수 없어 무효입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후 보완이 가능한 것임.

⑧ 자기가 속하는 법인과 개인업체 양 업체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회계 45107-167, '96.1.3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개인명의로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동일한 경쟁입찰에 법인과 개인업체 양자의 명의로 직접 참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제3자에게 대리케 하여 참가한 경우에도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로 하여야 함.

⑨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의 입찰은 무효 [회계 45107-252, '96.2.8]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 입찰에 동시입찰(대리인을 통한 입찰 포함)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로 처리되는 것임.

* A법인의 대표가 B법인의 임원인 경우로서 A, B 두 법인의 대표가 각자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도 보지 아니함 (회계 41301-2982, '97.10.30)

⑩ 입찰서상의 금액오기, 입찰건명오기, 대표자 성명상이, 주소상이 및 한글숫자와 숫자사이 공백에 대한 유효여부에 대하여 [회계 125-1233, '88.8.9]

-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부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서가 무효가 되는 것인바,
- 그 불분명 여부는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기재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서 및 첨부서류 등의 다른 기재사항, 당해공사의 입찰현황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예1) “괄척”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일련숫자의 화폐단위 및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등을 종합하여 “괄천”임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유효한 입찰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회계 1210-2057, '83.7.2]

(예2) 입찰건명이 누락되거나 틀리게 기재되었더라도 입찰공고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공사에 관한 입찰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면 유효로 처리하여야 될 것이라 봄. [회계 125-1040, '83.4.16]

⑪ 입찰서 금액표시글자 누락 시 [회계 45107-375, '94.3.29]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부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서가 무효로 되는 것인 바,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한글표기금액과 아라비아숫자, 표기금액의 일치여부 및 글자간의 여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의 유효·무효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임.

(문의) 입찰금액을 일금사천삼백팔십육만사천백십원정(₩43,864,110)으로
()백()십원 글자누락

⑫ 위임장 인감상이 [회계 125-1745, 91.7.16]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그 위임장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한 인감과 다른 등기된 인감을 사용한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의 입찰은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함.

⑬ 입찰서와 첨부물과의 간인은 날인하였으나 표지에 날인 누락 시
[회제125-1772, '88.8.1]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은 무효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서에
날인이 누락되었다면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⑭ 상호·성명등을 누락한 입찰 [회제 125-2614, '85.11.15]

- 입찰자가 주소·상호 및 대표자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입찰서를 제출
(인감만 날인)하였다면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에 해당되어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⑮ 낙찰선언은 되었으나 입찰가격 기재착오였음을 구두로 통지한
경우 입찰의 유효여부 [회제 125-997, '82.3.19]

- 입찰무효여부 및 낙찰선언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입찰내용, 상황 및 착오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며,
- 당해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함.

⑯ 제한경쟁기준에 위반한 계약의 무효여부 [질의회신, 회제 1210- 1134, '81.6.3]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제한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유효문제는 당해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계약담당공무원의 동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만으로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수는 없다.

⑰ 낙찰예정자의 입찰무효 시 처리절차 [회제 45101-2466, '95.12.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선언 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낙찰선언을 하지 않고 단순히
낙찰예정자로 선언하였다면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치순위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입찰금액 불분명 관련 유권해석>

□ 입찰금액 불분명(한글 "삼팔공공오" 아라비아숫자 "38,005") 해당여부(회계 제도과-1961, 06.8.31)

국가기관이 발주한 물품계약에 있어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 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은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제3호에 따라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찰금액을 한글로 "삼팔공공오"라고 표기한 것은 당해 입찰금액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찰금액을 한글로 표기하는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봄

□ 입찰의 취소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 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 전자입찰자는 위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찰 집행후 낙찰결정 전 입찰취소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09마1, 결정 2010.4.8)

-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입찰 실시(개찰) 후 적격심사과정에서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의 범위를 입찰공고(±3%)와 달리 전자조달시스템에 ±2%로 입력한 것을 알게 되어 아직 낙찰자 결정전 이므로 해당 입찰건을 취소(무효화)한 것에 대하여 최저가입찰자가 소송을 제기
 - 입찰절차에서 개찰이 실시되어 최저가격 입찰자가 가려 졌으나 아직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입찰절차에 관련 법령의 규정이나 입찰공고에 어긋나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입찰시행자는 당해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 *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상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개찰이 이루어져 최저가 입찰자가 가려진 상태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전이라면 입찰시행자인 채무자는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재입찰 〔 국가계약령 제20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5조 〕

- 경쟁입찰에 있어서 개찰한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 무효입찰서를 제출한 자 또는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도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규격·가격동시 입찰인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재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재공고 입찰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국가계약령 제20조제2항]
- 재공고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는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국가계약령 제35조제4항 및 제5항]
- 재공고시에도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재공고 입찰 대상>

- 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 경우는 당초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국가계약령 제28조]

- 신문공고 시 제1차 및 제2차 입찰을 구분하였더라도 동시에 공고한 경우는 재입찰공고까지 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질의회신, 회계 1210-1248, '77. 5.20]

- 계약담당공무원의 예정가격 잘못 작성을 사유로 입찰 취소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대상이 아니며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질의회신, 회계 45101-1478, '95.8.16]

나) 재공고내용[국가계약령 제20조제3항]

- 재공고 입찰(재입찰 포함)은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재공고 입찰할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는 품목(계약목적물) 수량과 입찰참가자격 등의 주요 공고내용은 최초의 공고내용과 동일하여야 할 것인 바, 이를 변경하였다면 새로운 입찰공고로 보아야 한다. [질의회신, 회계 125-2778, '86.7.2]

<재공고입찰 관련 유권해석>

□ 시각장애인용 음성신호기 제작계약에서 4개입찰자 중 1인이 낙찰된 후 낙찰자를 제외한 3개업체가 입찰담합 밝혀진 경우(회계제도과-1359, 06.6.26)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입찰에 있어 담합한 자의 입찰은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06.5.25 개정) 제12조제4호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바, 동 경쟁입찰에 참가한 자가 4인인 경우로서 낙찰자로 선언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이 담합으로 입찰무효가 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등에 부칠 수 있을 것임



이론에서 실무까지 알기 쉽게 풀이한

대한민국 조달제도 기본서

다수공급자계약(MAS)



- 해당 교재(대한민국 조달제도 기본서)는 조달전문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재배포, 2차 변형, 상업적 이용 등)하는 것을 금지 합니다.
- 또한, 이 책자를 저작권자[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허가 없이 불법복제·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교육 등의 이용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위반 시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아울러, 해당 책자는 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조달청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상기 책자가 민원 및 소송 등의 자료로는 활용될 수 없고, 교육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NFORMATION

[공공기관편]

1. MAS 제도 및 종합쇼핑몰 활용 241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도 259

1

MAS 제도 및 종합쇼핑몰 활용

| 담당교수 | 김 연 일

Public Procurement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INFORMATION

1. 다수공급자계약(MAS) 개요	245
2. 다수공급자계약(MAS) 특징	245
3. 다수공급자계약(MAS) 법령 및 규정	247
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활용방법	248
5. 다수공급자계약 운영현황	258

1. 다수공급자계약(MAS) 개요

□ (개념)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 ①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
- ②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
- ④ 최소 2인 이상(원칙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단가계약 체결
- 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직접 구매)

□ 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 계약

- ① 상용화 및 경쟁성
 -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 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신기술제품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
- ② 규격 및 시험기준
 - 업체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 존재



2. 다수공급자계약(MAS) 특징

(1) 특징

□ 수요기관 중심 조달제도

- ① 공급자 중심의 단일 업체 조달 ⇒ 수요자 중심의 다수업체 조달
- ② 조달물자의 다양화로 수요기관 선택권 확대
 - 일정금액 미만 : 수요기관이 바로 납품요구
 - 일정금액 이상 : 수요기관이 대상업체·평가방법 선택 ⇒ 경쟁 ⇒ 납품요구

□ 업체 : 先 진입, 後 경쟁

- ① 일정한 요건을 통과한 자는 누구나 계약 가능
 - 신용등급(B- 이상)으로 적격성 판단
 - * 신규 물품 규격당 납품실적(3건) 요건 전면폐지(단, 필요시 구매입찰공고에 명시, 별도 요구)
 - 다수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 ② 진입 후 다양한 경쟁요소 도입으로 정부조달시장의 경쟁체계 구축
 - 계약단가 인하, 다량납품 시 할인을 설정, 할인행사를 통한 가격 경쟁
 - 2단계 경쟁을 통한 가격 및 품질 경쟁

□ 다수공급자계약 도입 이후의 변화



□ 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의 차이

구분	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계약방법	경쟁 or 수의 (우수조달물품, SW 등)	경쟁
2단계경쟁	없음	<p>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일정금액 이상</p> <p>* 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 구매희망규격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 가능한 범위로 물품 분할 구매 가능</p> <p>** 기준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p> <p>*** 중기간물품 1억원, 일반물품 5천만원</p>

3. 다수공급자계약(MAS) 법령 및 규정

(1) 법령 및 규정

□ 법률 및 시행령

- 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②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훈령·공고·고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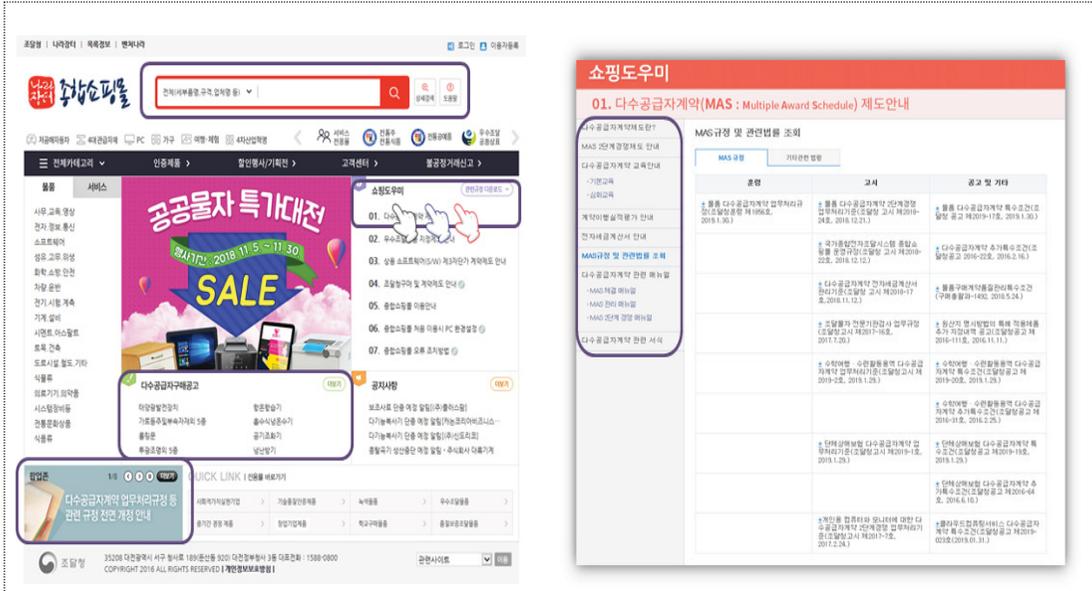
- 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훈령)
- ②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통폐합(2023.7.1. 개정)
-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공고)
- ④ (물품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공고)
-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고시)
- ⑥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고시)
- ⑥ 기타 관련 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공고) 등

□ 위치 (<http://shopping.g2b.go.kr/>)

MAS 규명	관련법령	종류	고시	공고 및 기타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안내	MAS 2단계경쟁제도 안내	다수공급자계약 고시안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훈령) 제2019-13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공고) 제2019-17호, 2019.3.30)
계약이행 불확실성 가 내려	계약이행 불확실성 가 내려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공고) 제2019-17호, 2019.3.30)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훈령) 제2019-13호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공고) 제2019-17호, 2019.3.30)
MAS 규정 및 관련법령 조회	MAS 규정 및 관련법령 조회	MAS 규정 및 관련법령 조회	MAS 규정 및 관련법령 조회	MAS 규정 및 관련법령 조회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세부규정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고시) 제2019-17호, 2019.11.12)	MAS 규정 및 관련법령 조회	MAS 규정 및 관련법령 조회	MAS 규정 및 관련법령 조회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세칙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고시) 제2019-17호, 2019.11.12)	MAS 규정 및 관련법령 조회	MAS 규정 및 관련법령 조회	MAS 규정 및 관련법령 조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고시) 제2019-17호, 2019.11.12)	MAS 규정 및 관련법령 조회	MAS 규정 및 관련법령 조회	MAS 규정 및 관련법령 조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고시) 제2019-17호, 2019.11.12)	MAS 규정 및 관련법령 조회	MAS 규정 및 관련법령 조회	MAS 규정 및 관련법령 조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고시) 제2019-17호, 2019.11.12)	MAS 규정 및 관련법령 조회	MAS 규정 및 관련법령 조회	MAS 규정 및 관련법령 조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고시) 제2019-17호, 2019.11.12)	MAS 규정 및 관련법령 조회	MAS 규정 및 관련법령 조회	MAS 규정 및 관련법령 조회

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활용방법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http://shopping.g2b.go.kr/>)



① 종합쇼핑몰 검색기능

② **쇼핑도우미** [관련규정 다운로드 >](#)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관련규정 및 매뉴얼 링크)
- 다수공급자계약 교육안내(사이버강의, 심화교육 안내)
- 종합쇼핑몰 이용가이드

③ 다수공급자 구매공고

④ 팝업존(최근 필수공지)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FAQ Q&A
- e-고객센터(1588-0800)

(2) MAS 상품정보 활용
(알아야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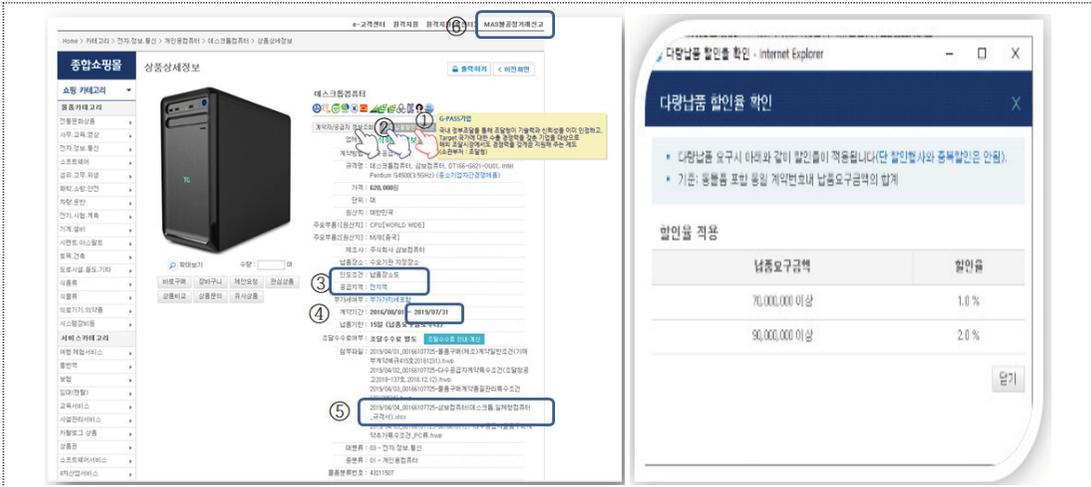
No.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실수요기준	계약일
3347	20190126345	장벽의 5종	각 수요기관	2019/12/18
3346	20190126325	기동벽의 1종	각 수요기관	2019/12/18
3345	20170629764	책장의 15종	각 수요기관	2019/12/17
3344	20191223572	크레덴차의 1종	각 수요기관	2019/12/17
3343	20191229415	책장의 15종	각 수요기관	2019/12/17
3342	20171215977	커피의 4종	각 수요기관	2019/12/10
3341	20191113373	출건장차	각 수요기관	2019/11/27
3340	20191130894	하리드보능일방의 6종	각 수요기관	2019/11/21
3339	20191130880	남성용구두의 7종	각 수요기관	2019/11/21
3338	20191130858	양말의 22종	각 수요기관	2019/11/21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가격제한을 설정

적용 기한	대상품명	기준금액	가격 제한율
'17.4.1.부터 (제한요청일 기준)	4321150701 (데스크컴퓨터)	5천만원 이상	대상 아님
		1억원 3억원	90% 이상
	4321159301 (일체형컴퓨터)	3억원 5억원	85% 이상
		5억원 이상	80% 이상
4321190201 (개인용컴퓨터와 모니터)	개인용컴퓨터와 2단계 경쟁 실시	제한 없음	5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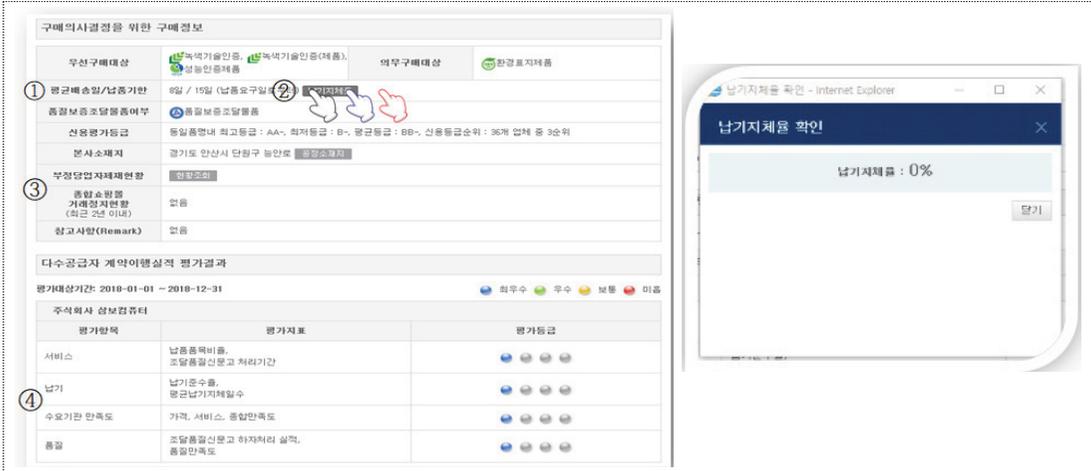
- ① 가격(부가세 포함/조달수수료 별도)
- ② 중기간 경쟁제품 여부
- ③ MAS 여부
- ④ 품목 인증 정보
- ⑤ 클릭 시 상품 구매안내 팝업

(3) MAS 상품상세정보 활용(기본정보)



- ① 인증정보 설명
- ② 클릭 시 다량 납품 할인을 팝업
- ③ 인도조건, 공급지역
- ④ 계약종료시점
- ☞ (참고) 최종납품기한, MAS 2단계 제안요청일 : 최소 5일전
 - 납품기한 설정 최대기한은 계약종료일 + 납품기한일수를 초과할수 없음(납기연장 포함)
- ⑤ 규격서
- ⑥ MAS 불공정거래신고

(4) MAS 상품상세정보 활용(구매정보)



- ① 평균배송일
- ② 클릭 시 납기 지체율 팝업
- ③ 부정당, 거래정지
- ④ 계약이행실적

☞ 구매정보와 계약이행실적 평가결과는 MAS 2단계 경쟁 시 평가 자료이므로 타 MAS 업체에게는 정보를 공개하지 마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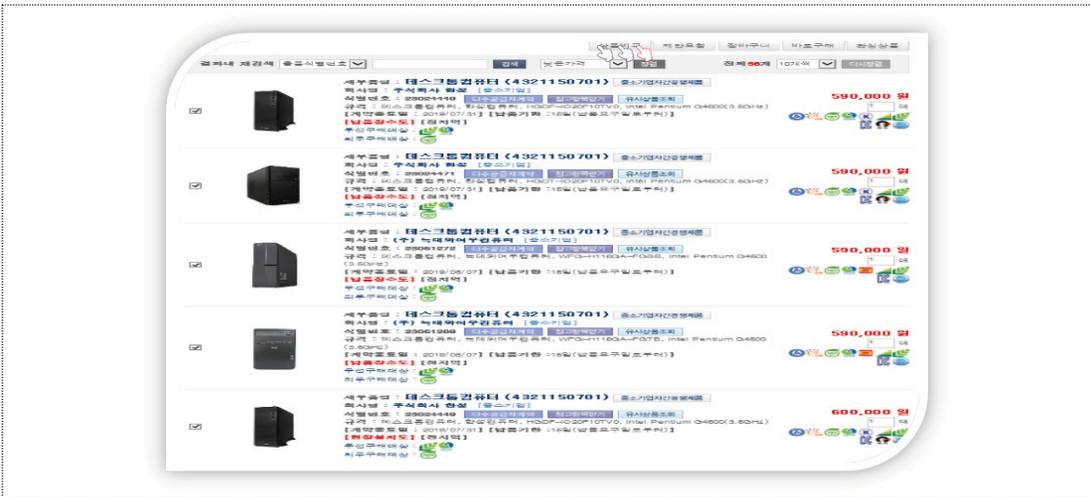
(5) MAS 상품상세정보 활용(계약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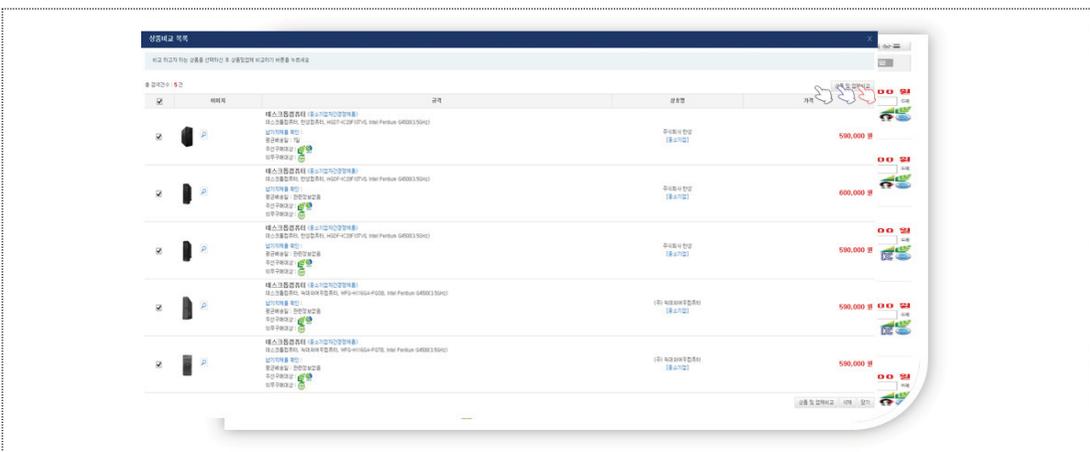
- ① 계약부서, 연락처, 계약담당자
- ② 하자기간
- ③ 검사기준

(6) 종합쇼핑몰 다양한 기능(상품비교/최대 5개사)

- ① 비교 상품 5개 선정 후 상품비교 버튼 클릭



- ② 상품비교 목록화면에서 상품 및 업체비교 버튼 클릭



☆ [참고] 종합쇼핑몰 상품비교 기능 활용방법(물품구매보고)

I. 개요

□ ○ ○ ○ 지원사업을 위한 “○ ○ ○ ”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종합쇼핑몰 구매건과 관련하여 납품가능한 대상업체(0개사)의 상품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물품 선정/구매코자 함

* 다수공급자계약물품 : 일반물품 5천만 원, 중기간경쟁제품 1억 원까지 직접구매 가능

<사업현황>

- ◇ 사업목적 : ○○○ 주민 지원사업
- ◇ 예산액 : 000 백만원
- ◇ 필요수량 : 000 (개)
- ◇ 예산항목 : 000-00-00-000
- ◇ 집행시기 : '00.00.00

II. 상품비교

상품비교 상세화면				
기본정보	업체명 본사소재지 세부용명 계약정보 품군배출일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부가서비스부 조달수수료여부	주식회사 한일(홍소기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디지털로9길 대스크롬컴퓨터 제조자인가계약(다수 공급자 계약) 6일 15일(납품요구일로부터) 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장소 부가서비스포함 조달수수료 별도	(주) 녹대이우컴퓨터(홍소기업) 경기도 파주시 송탄3길 대스크롬컴퓨터 제조자인가계약(다수 공급자 계약) 관련정보없음 15일(납품요구일로부터) 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장소 부가서비스포함 조달수수료 별도	주식회사 리워드(홍소기업)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북복동3가 대스크롬컴퓨터 제조자인가계약(다수 공급자 계약) 관련정보없음 15일(납품요구일로부터) 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장소 부가서비스포함 조달수수료 별도
(식별번호)규격명	(23024449) 데스크톱컴퓨터, 한성컴퓨터, HGDPC-IC20P10TVO, Intel Pentium G4500(3.5GHz)	(23051269) 데스크톱컴퓨터, 녹대이우컴퓨터, VFG-H116GA-FGTB, Intel Pentium G4500(3.5GHz)	(23123765) 데스크톱컴퓨터, 리워드, H400P52NE, Intel Pentium G4500(3.5GHz)	
상용정보	이미지정보 			
가격 (가동금액 대비 증감)	590,000 원	590,000 원	610,000 원 (+20,000 원)	
품질보증정보 본 구매대상 인종과 준격될 수 없음 구매구매팀 리워드대상	품질보증조달물품, 에너지절약, 환경표지제품, 성능인증제품, K마크, 공공포털 최소녹색기준제품,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인증(인증), GS인증(1등급), 삼성인원표지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에너지절약, 환경표지제품, 성능인증제품, K마크, 공공포털 최소녹색기준제품,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인증(인증), KC인증, GFAS인증,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인증(인증), 성능인증제품, 원상체리장치(CPU)가격 : Intel Pentium G4500 클럭속도 : 3.5 GHz 운영체제 : Windows 10 Home 메모리(RAM)용량 : 4 GB	에너지절약, 여성기업제품, 공공포털 최소녹색기준제품, 녹색기술인증, KC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 에너지절약, 환경표지제품, 성능인증제품, 원상체리장치(CPU)가격 : Intel Pentium G4500 클럭속도 : 3.5 GHz 운영체제 : Windows 10 Home 메모리(RAM)용량 : 4 GB	
예산구매수량	50 대	50 대	50 대	
금액(단기수당)	29,500,000 원	29,500,000 원	30,500,000 원	
관계금액	다량납품할인 적용금액 29,500,000 원	다량납품할인 적용금액 29,500,000 원	다량납품할인 적용금액 30,500,000 원	
합계	금액(단기수당) 다량납품할인 적용금액 29,500,000 원 29,500,000 원	금액(단기수당) 다량납품할인 적용금액 29,500,000 원 29,500,000 원	금액(단기수당) 다량납품할인 적용금액 30,500,000 원 30,500,000 원	

(7) 종합쇼핑몰 다양한 기능(유사상품)

① 상품에서 유사상품조회 버튼 클릭

The screenshot shows a product page for a desktop PC. The product name is '데스크톱컴퓨터 (4321150701)'. Below the product name, there are several buttons: '다수공급계약', '링크의뢰하기', and '유사상품조회'. A red arrow points to the '유사상품조회' button. The price is listed as 620,000 원. The page also shows various filters and search options at the top and bottom.

② 민간쇼핑몰 유사상품 확인 가능

The screenshot shows a product page for a desktop PC in a private shopping mall. The product name is '데스크톱컴퓨터 주식회사 상보컴퓨터 [중소기업] [납품장소도] [전]' with a price of 620,000 원. Below the product details, there is a section titled '민간쇼핑몰 유사상품' (Private Shopping Mall Similar Products) which lists two similar products:

- 1위 DT166-6621-0001**: CPU: 인텔 / CPU:플러게수: 듀얼코어 / CPU:플러게수: 듀얼코어-04500 / 가격: 661,970원
- 2위 DT166-6631-0001**: CPU: 인텔 / CPU:플러게수: 플러게수-04500 / CPU:플러게수: 플러게수-04500 / 가격: 742,410원

③ 종합쇼핑몰 가격대 유사상품 비교 가능(±1%,±3%,±5%,±10%)

선택	이미지	규격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상품명	가격
<input type="checkbox"/>		데스크톱컴퓨터, 티칭엘에스, DGS-A24SHNH, AMD RYZEN3 2200G(3.5GHz)	1068648117	주식회사 티칭엘에스 [홍소가입]	605,000
<input type="checkbox"/>		데스크톱컴퓨터, 라안디지털, LD-H110, Intel Pentium G4560(3.5GHz)	3148158754	(주)라안디지털 [홍소가입]	606,000
<input type="checkbox"/>		데스크톱컴퓨터, 티칭엘에스, DGS-A24S2NH, AMD RYZEN3 2200G(3.5GHz)	1068648117	주식회사 티칭엘에스 [홍소가입]	610,000
<input type="checkbox"/>		데스크톱컴퓨터, 티칭엘에스, DGS-A24T2NH, AMD RYZEN3 2200G(3.5GHz)	1068648117	주식회사 티칭엘에스 [홍소가입]	610,000
<input type="checkbox"/>		데스크톱컴퓨터, 티칭엘에스, DGS-A24SNP, AMD RYZEN3 2200G(3.5GHz)	1068648117	주식회사 티칭엘에스 [홍소가입]	610,000
<input type="checkbox"/>		데스크톱컴퓨터, 티칭엘에스, SGS-14HNHT, Intel Core i3 7100(3.9GHz)	1068648117	주식회사 티칭엘에스 [홍소가입]	610,000

(8) 종합쇼핑몰 다양한 기능(할인행사/기획전)

① 다수공급자계약 할인행사는 그림과 같이 명기

다수공급자계약 할인행사

새부종명: 스테인리스가보통수(3911152602) | 특가: 424.38%
 원시명: 주석화시 계량아이어 (홍소가입) | 현재가격: 605,000원
 식량번호: 99494949 | [재정용도명: 2023/06/23] [납품기간: 30일 (납품도움료부대)]
 규격: 1.0L가용용기용 | [재정용도명: 2023/06/23] [납품기간: 30일 (납품도움료부대)]

(9) 종합쇼핑몰 활용법 정리(알아야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다.)

① **쇼핑도우미** [관련규정 다운로드 >](#) **활용!**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및 2단계 경쟁 매뉴얼
- 종합쇼핑몰 이용가이드

② MAS 상품(기본, 구매, 계약) 정보 적극 활용 !

- 계약기간 내 납품기한 연장은 조달업체 협의 시 자율
-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240일 이내에서 납품기한 연장 가능
- 최종 MAS 2단계 가능 시점 = 계약종료 최소 5일전
- MAS 상품 구매정보와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는 MAS 2단계 평가자료임. 타 MAS 업체 관련자료 공개하지 마세요!!(부정당제재, 거래정지 이력 등 포함)
- 물품 납품이행(납기지체 등) 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정보 상 계약담당자에게 문의(MAS 물품은 조달청 계약 물품으로 납기지체 등에 따른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계약보증금 환수는 조달청에서 조치/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시 국가계약법 적용)

③ 종합쇼핑몰 기능(상품비교, 유사상품조회, 할인행사) 적극 활용!

- 좋은 물건 싸게 사기 위해 **상품비교, 유사상품조회, 할인행사** 등 최대한 활용!
- 할인행사 : 계약기간 1년마다 최대 3회(계약기간 연장 시에도 같음, 1회당 7~15일), 할인기획전은 할인행사 횟수에서 제외

④ MAS 물품 하자 시 적극 조치!

- MAS 물품 하자 발생 불이행시 수요기관에서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민원서비스⇒ 조달품질신문고를 통해 하자처리 신청 가능



5. 다수공급자계약 운영현황

□ 운영실적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약품목 수	444,479	557,499	649,416	722,817	751,873
계약업체 수	8,289	9,348	10,352	11,042	11,467
공급실적(억원)	106,836	147,240	157,183	177,314	183,622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도

| 담당교수 | 김 연 일

Public Procurement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공공조달역량개발원

INFORMATION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개념 263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안요청 263
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안공고 286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개념

(1) 개념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요청

- ① 1억 원 이상 구매시 제안요청(일반물품 5천만 원)
 - 수요기관의 구매희망 규격을 충족하는 업체 5개사 이상을 제안요청 대상으로 선정하고, 가격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 선정
 - 수요기관 제안서 평가방법 : 종합평가, 표준평가
 - * 최저가평가는 '17.8.1부터 최종 폐지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 ① 5억 원 이상 구매시 의무적으로 공고를 통해 납품대상업체 선정(5억 원 미만도 선택 가능)
 - 수요기관의 구매희망 규격 및 수량을 공고하고, 조건 충족 모든 계약업체의 물품 및 가격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 선정
 - 수요기관 제안서 평가방법 : 종합평가, 표준평가
 - * 단, 평가절차 및 기준은 달리 적용(별첨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안요청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절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

□ 2단계 경쟁 적용 대상 : 수요기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 기준

①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중소기업 제조 물품 : 1억 원 이상

- 일반물품 중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물품**(공급물품 제외)은 5천~1억 원에 대하여 2단계경쟁 선택 가능

② 대기업·중견기업 물품, 중소기업 공급 물품 : 5천만 원 이상

* 1회 납품요구 구매예산 : 한 번에 장바구니에 담아 구매하는 물품(다수물품 포함)의 구매금액 의미(다수물품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희망 규격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물품을 분할하여 구매 가능. 단, '설치비' 옵션 금액은 1회 납품요구 금액에서 제외)

③ 기준금액 상이한 물품 **통합구매** : **물품별 기준금액이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설정**

□ 제안요청 대상자 선정방식

① 5개사 이상 선정 + 2개사 시스템에서 추가 자동선정(업체추천)

☞ 수요기관 요구 규격을 만족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업체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도 경쟁 가능 ⇒ 수요기관은 2단계경쟁을 5인 미만 진행 시 사유 등록(의무화)

② 시스템을 통해서 제안업체를 추천하는 방식(계약업체 15개사 이상인 세부품명)

☞ 자동 추천 10개사 중 수요기관 예산·규격 등을 감안하여 5개사 이상 선정
* 동일 제조사 품목에 대한 계약상대자(제조 또는 공급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안 요청할 수 없음

□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①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표준평가방식**

□ 2단계 경쟁 예외(제50조)

① 2단계경쟁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조달청에 예외 요청

-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을 위해 긴급하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 이미 설치된 물품의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

- ② 2단계경쟁 예외 원칙(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별도 요청 시 2단계경쟁 허용)
 - 일반차량구매(소방차 제외), 백신 구매

☞ 수요기관의 희망규격 및 예산을 충족하는 업체가 1곳 뿐 인 경우에는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 2단계경쟁이 가능(2인 이상)하도록 희망규격을 완화하거나, 규격완화가 불가능한 경우 **총액입찰**로 전환

□ 2단계 경쟁 회피금지(제51조)

- 2단계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 금액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 금지
- 2단계경쟁 회피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납품요구 차단기준 설정

☞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세부품명에 대한 납품요구금액 합계가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다만, 해당 납품요구건과 이전 납품요구건의 예산비목이 상이하거나 예산회계 연도가 달라 한 번에 지출 할 수 없는 경우(수요기관 소명자료 첨부 후 자동승인)

<< 기관별 예산 비목 >>
1. (국가.교육.준정부)기관 . (공.지방)공기업 : '세목' 이상이 과목이 상이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 : '통계목' 이상이 상이한 경우
3. 그 밖의 기관 : 과목이 상이하야 한번에 예산지출이 어려운 경우

(3) 평가방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별표])

□ 종합평가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4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20점 이상 60점 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0점 이상 20점 이하
	품질관리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10점 이상 20점 이하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선택 평가항목 (60점 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7.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7.5점 이하
	납품기일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7.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7.5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7.5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7.5점 이하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7.5점 이하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7.5점 이하

1. 수요기관의 장은 종합평가방식의 경우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2.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신인도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기준 구성 시 기본 평가항목은 신인도를 포함하여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선택 평가항목은 항목별로 평가 반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4. 신인도 평가 결과 총 평점은 각 지표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총 평점이 양인 경우에는 신인도를 포함한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취득점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5. 각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기본 평가항목 중 '가격'의 평가방식은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한다.
 - 가. A형
 - 1) 제안요청 대상 업체 간 계약물품의 규격, 성능, 가격에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 2) 일정한 규격, 성능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경우
 - 나. B형
 - 1) 제안요청 대상 업체간 계약물품의 규격, 성능, 가격에 차이가 큰 경우
 - 2)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성능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7.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가격

1) A형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	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	$\text{가격평점(점)} = \text{배점} \times \left\{ 1 - 2 \times \left(\frac{\text{제안가격}}{\text{제안평균가격}} - \frac{95}{100} \right) \right\}$

- 가) 제안 평균가격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제안자 수)
 * 제안 요청대상 계약상대자 중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가격 합계 및 제안평균가격 산출 시 제안자 수에 포함시킨다.
- 나) 제안가격이 제안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2) B형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	평균제안을 대비 제안을 비율	가격평점(점)=배점×{1-2×($\frac{\text{제안율}}{\text{평균제안율}} - \frac{95}{100}$)}

- 가) 평균제안을 : (각 제안자의 제안을 합계)/(제안자 수)
 * 제안 요청대상 계약상대자 중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안율이 100분의 100(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된 비율)인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을 합계 및 평균 제안을 산출 시 제안자 수에 포함시킨다.
- 나) 제안율이 평균제안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나. 적기납품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납기지체 여부	납기지체율	평점(점)=배점×(1- $\frac{\text{납기지체율}(\%)}{4}$)

- 1)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요구를 받아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 대비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때 '납품이행 완료'라 함은 '물품납품및영수증'이 접수, 처리되어 종결된 상태를 의미한다.

$$\text{납기지체율(\%)} = \frac{\text{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text{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times 100$$

- 2) 평가 대상 납품요구 건은 납품이행 완료시점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인 것으로 한다.
- 3)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별로 계산되어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 4) 납기지체율이 2(%)을 초과한 경우의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5) 평가 대상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가 없는 경우 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품질관리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 사실이 없거나 경결함 1회	배점 × 1
	경결함 2회 또는 중결함 1회	배점 × 0.8
	경결함 3회 또는 중결함 2회 또는 치명결함 1회	배점 × 0.6
	경결함 4회 또는 중결함 3회 또는 치명결함 2회	배점 × 0.4
	경결함 5회 이상 또는 중결함 4회 이상 또는 치명결함 3회 이상	배점 × 0.2

- 1) 품질관리 항목은 세부품명에 대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에 따른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2) 평가 대상 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는 검사 또는 품질점검 완료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인 것으로 하며, 2종류 이상의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점을 적용한다.
- 3) 제안요청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가중평균 평점} = \sum \left(\frac{\text{세부품명별 제안금액}}{\text{제안 총금액}} \times \text{세부품명별 평점} \right)$$

라. 신인도

1)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누적점수 10점이상~20점미만	-0.1
	누적점수 20점이상	-0.25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한 결과 누적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을 적용한다.

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수
뇌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10
	가. 2억원 이상의 뇌물	5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	3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	2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	2
담합	가. 담합하여 낙찰을 받은 자	10
	나. 담합에 참여한 자	5
허위서류	가. 위조, 변조, 허위서류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5
	나. 위조, 변조, 허위서류를 제출한자	3
	다. 다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관련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 작성 또는 부정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자	3
안전사고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5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3
	다. 안전,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8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5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3	

※ [주]

상기 불공정행위로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경우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 또는 조치 종료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2) 최저임금 위반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 0.5점을 적용한다.

3) 임금체불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 0.5점을 적용한다.

4)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 0.5점을 적용한다.(단,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5) 고용우수기업

기업구분	평가기준		가점
	전체고용증가율	청년고용증가율	
대기업	3% 이상	3% 이상	+1점
중기업	4% 이상	3% 이상	+1점
소기업	5% 이상	3% 이상	+1점

- 가)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 (1)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규모 정보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대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2)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중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비영리법인 등 기타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3)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나) 전체고용증가율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 다) 청년고용증가율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인원 평균값과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청년 고용인원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청년 고용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청년 고용인원 평균값이 0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전체 고용인원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증가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 라) 전체고용증가율 또는 청년고용증가율에 대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점을 적용하되, 중복하여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마)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에 매달 말일 기준으로 제공하는 기업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실시하며,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가입자 명부 등)로 평가한다.

- 바)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비교하는 각 증명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하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수가 포함되는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사) 신설, 합병, 분할 등에 의한 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기업(분할과 관련된 기업 모두 포함)으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에 해당월 말일 기준 1개월치 자료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1개월치 자료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 아)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고용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고용사실 증빙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 가입관련 증빙서류(가입자 명부, 납부 확인서 등)로 한하며,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은 바)의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 자) 전체고용증가율 및 청년고용증가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일자리의 질

- 가) 각 인증별 내용 및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가 각 인증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인도 가점 +0.5점을 적용한다.
-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인증구분	인증내용	인증 유효기간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 (HRD)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또는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종합쇼핑몰에 해당 인증을 등록한 기업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부문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결정 통지서'에 발급받아 쇼핑몰에 해당 사실을 등록한 기업 (단, 1건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 승인 통지서'에 1건의 '고용안정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인정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계획 승인통지서에 따른 신규 '고용안정장려금 결정 통지서'는 허용)	고용안정장려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1년간

7) 기술 인증

구분	인증 종류	가점
고도기술	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제품 , 우수조달물품	+1점
일반·녹색기술	GS*, 특허제품** , KS, 단체표준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 품질보증조달물품 * GS인증은 소프트웨어 또는 GS인증 발급시 시험평가에 사용된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인정 **특허제품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의 등록이 확인되고(통상실시권은 불인정), 특허기술과 제품의 연관성을 검토하되 필요 시 제품에 특허가 반영되었다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특허기술 적용확인서 또는 변리사의 감정서가 있을 경우 인정	+0.5점

- 가) 기술 인증 평가는 품목을 기준으로 하며, 품목별로 인증 구분에 관계없이 점수가 높은 1개의 인증에 대해서만 가점을 적용한다.
-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 다)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가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가중평균 가점} = \sum \left(\frac{\text{품목별 제안금액}}{\text{제안 총금액}} \times \text{품목별 가점} \right)$$

마. 선호도

- 1) 선호도는 관련 법령·규정 및 조례 등에 따라 수요기관의 자체적인 선정·평가위원회, 품평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한다.
- 2) 수요기관의 장은 선호도 평가기준을 제안요청서에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호도 평가를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4) 계약상대자별 선호도 평가의 최저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바. 지역업체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지역업체여부	지역업체 여부	본사가 해당지역에 있음 : 배점 × 1 본사가 해당지역에 없음 : 배점 × 0.4

- 1) 지역업체 여부는 그 본점 내지 본사가 납품지 소재지(광역자치단체)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본사 소재지로 판단한다.

- 2)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 본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가중평균 평점} = \sum \left(\frac{\text{품목별 제안금액}}{\text{제안 총금액}} \times \text{품목별 평점} \right)$$

- 3) 지역업체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제출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4) 지역업체 평가항목은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제1호 가목의 '물품 및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국제입찰에 의하는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호 가목의 '물품·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한 금액

사. 납품기일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평점(점)=배점×{1- $\frac{(\text{업체제시납품기한} - \text{수요기관요구 납품기한})}{\text{계약납품기한}}$ }

- 1) 납품기일은 수요기관의 사업목적 상 납품기한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만 한하여 평가할 수 있다.
- 2) 수요기관에서 요구 가능한 납품기한은 해당 제안요청 품목의 당초 계약 납품기한의 2/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의3에 따른

제안공고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요구 가능한 납품기한은 해당 세부품명의 전체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 계약품목의 당초 계약 납품기한 중 가장 긴 납품기한의 2/3 이상으로 한다.

- 3)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사전에 요구하는 납품기한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가능한 납품기한을 입력하여야 한다.
- 4)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 납품기한보다 연장된 납품기한을 제시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의 요구납품기한보다 단축하여 기한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배점의 만점으로 한다.
- 5)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가중평균 평점} = \sum \left(\frac{\text{품목별 제안금액}}{\text{제안 총금액}} \times \text{품목별 평점} \right)$$

아. 사후관리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최우수 : 배점 × 1 우수 : 배점 × 0.8 보통 : 배점 × 0.6 미흡 : 배점 × 0.4

- 1) 사후관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계약상대자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자. 납품실적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해당제품 납품실적	납품금액	평점(점)=배점×($\frac{\text{납품금액}}{\text{구매예정금액}}$)
	납품수량	평점(점)=배점×($\frac{\text{납품수량}}{\text{구매예정수량}}$)

- 1) 납품실적은 수요기관의 구매 목적과 용도에 따라 납품 수량 또는 납품 금액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 2) 납품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관급 및 사급 실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3) 납품금액이 구매예정금액보다 크거나, 납품수량이 구매예정수량보다 클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 4)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된 조합원사의 납품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 5) 제안요청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가중평균 평점} = \sum \left(\frac{\text{세부품명별 제안금액}}{\text{제안 총금액}} \times \text{세부품명별 평점} \right)$$

차. 경영상태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배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배율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9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0.99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8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0.98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97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0.9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85

-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2)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3) 계약상대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카. 약자지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배점 × 0.7
	여성기업	배점 × 0.6
	해당없음	배점 × 0.4

- 1) 약자지원 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여성기업에 대한 평가는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2) 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정보망에서 기업 확인이 되지 않을 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3) 약자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 4)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가중평균 평점} = \sum \left(\frac{\text{품목별 제안금액}}{\text{제안 총금액}} \times \text{품목별 평점} \right)$$

타. 수출기업 지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수출 중소기업, G-PASS기업(C등급 제외)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해당없음	배점 × 0.4

- 1) 수출 중소기업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10만 USD 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하되, 계약상대자가 수출 증빙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원에 한함), 중소기업 확인서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2) G-PASS 기업은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C등급 기업은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3) 수출기업 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 4)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가중평균 평점} = \sum \frac{\text{품목별 제안금액}}{\text{제안 총금액}} \times \text{품목별 평점}$$

□ 표준평가방식

1. 수요기관은 구매목적에 적합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매예산 기준에 따른 표준평가방식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배점을 변경할 수 없다.

가.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표준평가방식 I >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I)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5점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 II >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II)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5점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나.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

<표준평가방식 I>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I)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5점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 II>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II)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4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20점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 2.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종합평가방식의 각 항목별 평가방법과 동일하다.

(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요청

□ 조달업체의 제안서 제출

- 제안가격은 제안요청 시점의 종합쇼핑몰 계약단가 이하로 가능

▶ 제안가격은 종합쇼핑몰 계약가격 이하

- 할인행사, 다량납품 할인 → 할인된 최저가격 이하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계약가격의 90%까지만 허용
- * 다량납품 및 할인행사 할인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가격평가시 제안율을 90%로 평가 (단, 제안가격(납품가격)은 할인을 적용 가격)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종합쇼핑몰 계약가격(할인을 적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
- 업체는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
- 제안 마감 전에는 전자적으로 제안취소 가능, 마감일 경과 후는 취소 불가
- ☞ 취소 시 종합쇼핑몰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간주(다시 제안 불가)

□ 납품업체 선정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 ☞ 동일점수 발생시 품질관리 점수 높은 자를 우선 선정
- ☞ 그래도 동점인 자가 복수인 경우, 제안가격(A형) 및 제안율(B형)이 낮은 자를 우선 납품대상자로 선정
- ☞ 가격(A형) 및 제안율(B형)이 동일할 경우 추첨(자동추첨 시스템 이용 가능)
- ※ 수요기관은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 3일 이내로 보완 요구
- 계약조건 이외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 반영 불가
- 거래정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종합쇼핑몰에 없는 품목 등은 평가에서 제외 가능

□ **납품요구**

- 제안서의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해야 함
- 제안요청 후 계약이 수정된 경우

☞ 계약의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쇼핑몰에 등재 되지 않은 경우 납품요구 불가

☞ 위 경우 새로운 제안요청절차를 거쳐 납품대상업체 재선정

* 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서는 차순위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가능

-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수량)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 업체의 동의하에 반영, 수량 증가 시 제안가격과 다량납품할인된 금액 중 낮은 가격 적용

※ 설치비 등 옵션 이외에 품목의 추가 및 계약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으로 변경 불가. 단, '설치비' 등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 옵션 품목은 납품요구 시 추가 가능

- 업체 동의 시 최초 납기를 희망 납품기한으로 설정 가능(단, 계약기간 종료일 +240일 이내)

☞ 계약기간 내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납기연장 가능, 계약종료 후 240일까지도 가능, 계약상대자가 희망할 경우 납품요구 취소 후 신규 납품요구 유도

(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영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52조의2, [별첨 1])

□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성을 위해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토록 운영 가능(세부품명 기준 대분류 2자리 동일 물품, 동일 예산 사업에 한함)

- **광고내용** : 수요기관명, 2단계 경쟁 건명, 대상 세부품명, 예산액,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 등
- **광고기간** : 만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상 종합쇼핑몰 등재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사 이상 구성

□ 단, 가구류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2개 이상의 가구류 세부품명을 2단계 경쟁을 거쳐 구매하려면 공동수급 공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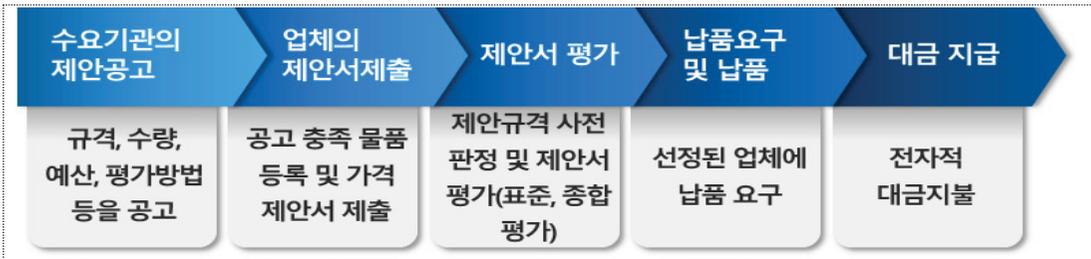
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안공고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52조의3, [별첨 2])

- 수요기관의 제안공고(규격 및 평가방법 선정)
 - 5억 원 이상 구매시 제안공고 운용요령에 따라 제안공고 실시
 - ※ 단, 5억 원 미만도 수요기관이 선택 가능
- 업체의 물품등록 및 가격제안
- 수요기관의 제안서 평가(표준평가, 종합평가)
 - 기본평가 항목(신인도 제외) 점수 상위 5인을 대상으로 종합심사

<< MAS 2단계 경쟁 제안공고 절차 >>



- 제안공고 적용 대상 :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금액 기준 5억원 이상 (의무)
 - 제안공고 적용 제외(물품 MAS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52조의3 제1항 단서)
 - ㉠ 가구류 등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구매, 구매희망규격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
 - ㉡ 운반비 미포함 물품, 별도 원가산출프로그램 활용 물품(배전반, 엘리베이터 등)
 - ㉢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제안공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안공고 등록

- 세부품명, 희망규격, 수량, 예산, 평가방법을 포함한 공고를 종합쇼핑몰에 등록(만 5일 이상, **토요일·공휴일 제외**)

- ☞ 공고일 전일기준 종합쇼핑몰 등록된 업체 중 최소 3인 이상의 공통규격으로 희망 규격 작성
- ☞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 제안공고 등록 메뉴에서 입력하고, 계약업체는 제안공고 목록을 조회하여 확인 가능

□ 납품대상업체 평가방법

- **종합평가방식** : 제안서 제출자 중 가격, 적기납품, 품질관리 평가항목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 5인을 대상으로 전체항목(선택항목 및 신인도) 평가
- **표준평가방식** : 제안서 제출자 중 가격, 적기납품, 사후관리, 품질관리 평가항목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 5인을 대상으로 전체항목(나머지 평가항목 및 신인도) 평가

□ 조달업체의 물품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대상 물품은 제안공고 게시 전일까지 쇼핑몰에 등록된 물품 대상
- ☞ 제안자는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여부 확인서 필수 제출
- 제안가격은 제안공고 게시 전일기준 등록된 종합쇼핑몰 계약단가 이하로 가능

» 제안가격은 종합쇼핑몰 계약가격 이하

- 할인행사, 다량납품 할인 → 할인된 최저가격 이하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계약가격의 90%까지만 허용

* 다량납품 및 할인행사 할인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가격평가시 제안율을 90%로 평가
(단, 제안가격(납품가격)은 할인을 적용 가격)

- ☞ 최종 제안한 가격이 공고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안공고 참여 불가
- 제안 마감 전에는 전자적으로 제안취소 가능, 마감일 경과 후는 취소 불가 (재 제안 불가)
-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 제안가격은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 **납품업체 선정기준**

- 제안공고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사전판정에서 제외 가능**
 - 단, 제안공고에서 명시한 구매희망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판정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경우
 - ☞ 제안평균가격 또는 평균제안을 산출에 반영
- 제안서 평가시 MAS계약 조건 이외의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평가 불가
- 선호도 평가는 제안요청(평가 이전 실시)과 달리 평가과정에서 실시
 - 사전 판정 이후, 기본평가 항목 상위 5인에 대한 제품 및 업체정보를 확인하여 선호도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는 경우에 다음 단계 진행가능
- ‘제안공고’ 납품대상업체 선정 시 차순위자 승계 허용
 - ☞ 기타 부분은 MAS 2단계경쟁 제안요청 평가 방법에 따름

이론에서 실무까지 알기 쉽게 풀이한
대한민국 조달제도 기본서

집필진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교수팀

[교수]

김공진, 김연일, 김영민, 문수호, 박수천,
윤경수, 이인호, 정진성, 조용만, 최도환, 최찬모

[직원]

강소연, 강승호, 김병기, 김용현, 곽동호, 성혁,
송병태, 황상원

편 집 윤경수, 권유민

초 판 2020년 8월

개정판 2025년 3월